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897
----------	------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27
2.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4. 5.30
4. 상정일자 :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4. 6.20)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24. 6.24)
 - 승인

Ⅱ.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국장 김진만)

- 일반회계와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51조 4,900억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6%인 50조 7,5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조 8,131억원(△8.7%)이 감소하였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2%인 47조 4,6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8,161억원(△5.6%)이 감소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3조 2,981억원임
-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조 5,347억원과(자금 없는 이월액 1,558억원은 미포함) 보조금 실제반납금 1,174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조 6,460억원으로,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보다 2조 4,919억원(△60.2%)이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6조 5,074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2%인 36조 2,15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2%인 34조 9,285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조 2,868억원임
 - 이 중 2024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2,562억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79억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327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총 36조 2,153억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중 시세수입은 23조 8,628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24조 1,122억원 대비 1.0%인 2,494억원이 부족 징수되었음
 - 소비 및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소비세 △1,080억원 부족 징수와 부동산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747억원 부족 징수가 주요 원인임

- 세외수입의 경우 1조 3,885억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3,351억원 대비 4.0%인 535억원이 초과 징수 되었으며, 주요 사례로 DMC부지 매각지연으로 매각사업수입이 825억원 부족징수된 반면 시비보조금 반환수입(525억원)과 위탁비 반환수입 (218억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187억원)은 초과징수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6조 4,781억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6조 5,653억원의 1.3%인 871억원이 부족하게 교부되었는데, 주요 원인은 기초연금 지급(△687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126억원) 등이 당초 국비 내 시액보다 감액 교부되었기 때문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조 2,846억원으로 예산현액 4조 2,957억원의 0.3%인 111억원이 부족 수납 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2,012억원이 수납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36조 5,074억원의 95.7%인 34조 9,285억원임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34.9%)는 기초연금(2조 9,666억원), 생계급여(1조 1,009억원) 등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12조 4,089억원(97.4%)을 지출하였고,
 - 두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26.1%)는 자치구 조정교부금(4조 7,365억원), 재산세 특별시분 자치구 전출(1조 7,273억원) 등 9조 1,588억원(96.3%)이 지출되었으며,
 - 세 번째 교육 분야(12.8%)는 교육청 법정전출금(4조 733억원) 등 4조 4,297억원(94.8%)이 지출되었음

- 교통 및 물류 분야(2조 1,143억원) 등 나머지 11개 분야에서 총 8조 9,311억원이 지출되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2,562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48건, 423억원이며, 사고이월은 306건, 2,139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43억원 이월), 서울둘레길 2.0 거점형 산림휴양시설 조성(36억원 이월) 등이 사전절차 지연 또는 착공지연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 주요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468억원 이월),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 통합수장고) 건립(99억원 이월) 등의 사업이 납품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4%인 1조 2,419억원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유보(1,126억원 미집행), 지방교육세 교육청 전출금 유보(1,027억원 미집행) 등에 따른 것임
- 특별회계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조 9,827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14조 5,43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6%인 12조 5,32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총 2조 113억원임
 - 이 중 2023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 1조 2,785억원과(자금 없는 이월액 1,558억원은 미포함), 보조금 실제반납금 195억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7,133억원임
- 특별회계 세입 결산의 경우, 12개 특별회계(공기업2, 기타10)의 예산현액은 14조 9,82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9% 부족한 14조 5,433억원으로 4,394억원이 부족 징수 되었음

- 이는 수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2억원 초과 징수와 소방특별회계 30억원 초과 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특별회계에서 4,846억원이 부족 징수 되었기 때문임

- 임대주택 매입사업 기금보조금 미수령(△1,906억원),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미수령(△637억원) 등이 주된 이유임

※ 주택(△1,854억원), 의료급여(△1,281억원), 교통(△755억원), 학교용지(△254억원) 도시개발(△477억원), 광역교통(△90억원), 균형발전(△86억원), 한강수질(△30억원), 도시철도(△18억원)

○ 특별회계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결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14조 9,827억원의 83.6%인 12조 5,320억원으로

-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 27억원의 82.2%인 1조 6,464억원이 지출되었고,

※ 수도사업(8,386억원, 84.3%), 하수도(8,078억원, 80.2%)

-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조 9,799억원의 83.9%인 10조 8,856억원이 지출되었음

※ 도시철도(1조 9,793억원, 96.2%), 교통사업(1조 9,971억원, 89.5%), 광역교통(2,563억원, 77.0%), 주택사업(2조 2,650억원, 74.5%), 도시개발(1조 6,493억원, 77.8%), 균형발전(1,459억원, 68.9%), 학교용지(104억원, 28.3%), 의료급여(1조 5,950억원, 82.7%), 한강수질(327억원, 87.6%), 소방(9,545억원, 97.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9.6%인 1조 4,343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89건, 7,876억원이며, 사고이월은 400건, 6,467억원임

-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등 각 유형별 매입 임대주택 사업(5,669억원 이월), 동북선 경전철 건설(268억원 이월) 등이 목표대비 실적부진 또는 보상협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693억원 이월),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527억원 이월) 등이 보상협의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이유로 이월되었음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인 9,970억원임
-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의료급여사업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잔액(3,340억원),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체(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감소(1,067억원 미집행) 등에 따른 것임
- 재무회계 결산은 2023년도말 기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총액은 152조 5,148억원이고, 부채총액은 18조 892억원이며, 비용은 37조 2,318억원, 수익은 37조 3,301억원임
-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983억원으로 흑자 운영 되었음
- 재정운영결과가 전년도(1조 218억원, 흑자) 대비 9,235억원(90.4%)이 감소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량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수익(△8,099억원), 취득세수익(△7,020억원) 등 지방세수익이 감소했기 때문임
- 성과보고서의 경우, 2023회계연도에는 227개 정책 사업에 대하여 433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 433개 성과지표 중 목표를 달성(100~129%)한 지표는 262개로 전체의 60.5%입니다. 목표의 130% 이상을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17.1%인 74개이며,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성과지표는 전체의 22.4%인 97개임

- 성과지표 미달성의 주요원인은 당초 사업여건의 변동이나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내용을 재구조화 하고, 목표를 재정립하여 향후 사업계획수립,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엄지운)

1.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

가. 세입·세출 결산 개요¹⁾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1조 4,900억 4,8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 보다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50조 3,759억 8,100만원은 당초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 간주처리분(1,482억 3,300만원), 추경 증액 조정분(3조 372억 3,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 1조 1,140억 6,600만원을 합한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53조 4,687억 9,900만원)보다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한 51조 4,900억 4,800만원임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8.6%, △4조 8,131억 2,800만원 감소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6조 2,152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5,432억 8,5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50조 2,765억 8,700만원)보다 △5.6%, △2조 8,161억 3,200만원 감소한 47조 4,604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조 9,284억 7,200만원과 특별회계 12조 5,319억 8,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조 2,950억 9,500만원) 보다 △1조 9,969억 9,700만원 감소한 3조 2,980억 9,800만원임

〈표 3-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 입 결 산 액 (가)	세 출 결 산 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3	총 계	51,490,048	50,758,554	47,460,455	3,298,098	명 시 이 월 ^{주1)} 641,198
			(98.6%)	(92.2%)	(6.4%)	사 고 이 월 860,581
		<2023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32,902
		50,375,981				계 속 비 이 월 -
		<2022→2023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117,424
		1,114,066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1,645,991
2023	일 반 회 계	38,319,642	36,215,268	34,928,472	1,286,796	명 시 이 월 ^{주1)} 42,345
			(99.2%)	(95.7%)	(3.5%)	사 고 이 월 213,859
		<2023최종>				계 속 비 이 월 -
		36,232,230				보조금실 제반납금 97,913
		<2022→2023이월>				채 무 상 환 -
		275,161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932,676
2023	특 별 회 계	14,982,655	14,543,285	12,531,982	2,011,302	명 시 이 월 ^{주1)} 598,853
			(97.1%)	(83.6%)	(13.4%)	사 고 이 월 646,721
		<2022최종>				건 설 개 량 이 월 ^{주1)} 32,902
		14,256,679				계 속 비 이 월 -
		<2021→2022이월>				보조금실 제반납금 19,510
		892,477				채 무 상 환 -
						물 납 등 -
						순 세 계 잉 여 금 713,314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나. 예비비 결산 개요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1,488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582억 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551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3-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 결정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지 출 잔 액 (가)-(나)-(다)
합	계	148,871	58,209	55,111	173	2,924
일	반 회 계	125,001	51,792	48,694	173	2,924
특	별 회 계 ^{주1)}	23,870	6,416	6,416	-	0 ^{주2)}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잔액은 34,000원임

다.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6,622억 7,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조성액(7조 2,080억 8,100만원)보다 4,541억 9,800만원 증가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조 2,389억 5,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7,847억 5,800만원임
- 17개 기금, 26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5,317억 8,200만원, 지출은 6조 4,906억 8,3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3.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36조 2,152억 6,800만원)와 특별회계(14조 5,432억 8,500만원)를 합한 50조 7,585억 5,4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55조 5,716억 8,200만원)보다 △8.7%, △4조 8,131억 2,8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3〉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합	계	51,490,048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일 반 회 계	36,507,392	37,461,876	36,215,268	288,978	957,629
	특 별 회 계 주1)	14,982,655	14,783,418	14,543,285	4,191	235,941

※ 주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52조 2,452억 9,400만원)중 1조 1,935억 7,100만원이 미수납되고, 2,931억 6,900만원이 정리보류되어 50조 7,585억 5,4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직전회계연도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3%포인트 증가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도 △0.6%포인트 감소한 바, 미수납액이 1조 1,935억 7,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3	52,245,294	50,758,554	293,169	1,193,571	97.2	2.3
2022	56,822,399	55,571,682	114,645	1,136,071	97.8	2.0
2021	53,887,515	52,859,112	82,124	946,278	98.1	1.8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시세 세입관련

-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26조 1,637억 9,700만원)보다 △8.7%, △2조 3,009억 9,800만원 감소한 23조 8,627억 9,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5조 5억 100만원)대비 95.4%가 수납된 것이나, 지방세 실제징수율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3-5〉 시세 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환 금 액
2023	24,112,184	25,000,501	23,862,799	95.4	1,634,773
2022	23,095,574	27,089,200	26,163,797	96.6	1,121,818
2021	20,023,706	26,777,061	26,001,188	97.1	1,184,178

- 시세 세입예산액(24조 1,121억 8,400만원)과 세입결산액(23조 8,627억 9,900만원)을 비교하면, 당초보다 △1.0%, △2,493억 8,500만원이 부족수납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부족하면 세출재원 확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 시세 세입예산·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2 0 2 3	24,112,184	23,862,799	△249,385	△1.0
2 0 2 2	23,095,574	26,163,797	3,068,223	13.3
2 0 2 1	20,023,706	26,001,188	5,977,482	29.9

- 징수결정액(25조 5억 100만원)의 경우, 직전회계연도(27조 892억원)와 비교하면, △7.7%, △2조 886억 9,800만원 감소하였고, 환급액은 1조 6,347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1,218억 1,800만원)보다 45.7%, 5,129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바,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환급액 규모가 1조원 이상 발생되어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7〉 지방세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환 급 액	행정기관 착 오	납 세 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 오	차 량 미등기	국 경 세 정	법 개 령 정	법 정 인 산	기 타
지 방 세	1,634,773	4,614	294,887	39,108	13,737	230,222	20,329	1,020,430	11,442
취 득 세	224,496	278	183,792	20,779	70	-	18,195	131	1,248
주 민 세	2,958	16	1,519	1,139	-	0.1	155	-	127
재 산 세	13,573	3,220	1,932	6,375	0.2	-	168	-	1,875
자동차세	11,154	6	8	333	10,407	-	19	-	380
레 저 세	0	-	-	0	-	-	-	-	-
담배소비세	14	-	-	8	-	-	-	-	6
자방소비세	-	-	-	-	-	-	-	-	-
자방소득세	1,347,396	52	82,752	7,991	0	229,595	6	1,020,298	6,699
지역자원 시 설 세	992	354	121	165	-	-	63	-	288
자방교육세	29,827	641	21,446	2,225	3,249	0	1,525	-	738
지난년도 수 입	4,358	43	3,314	89	10	626	194	-	78

○ '23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3조 6,371억 7,4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3조 8,984억 8,400만원보다 △ 2,613억 1,000만원 감소된 바,

- 주민세(987억 9,600만원), 지방소득세(492억 2,100만원)는 증가되었으나, 취득세(△746억 8,100만원), 재산세(△471억 4,500만원), 자동차세(△577억 8,800만원), 레저세(△10억 500만원), 담배소비세(△55억 9,400만원), 지방소비세(△1,080억 2,0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180억 1,500만원), 지방교육세(△970억 7,600만원) 등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3-8〉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주1)	23,898,484	23,637,174	△261,310	△1.1
	취 득 세	5,221,862	5,147,180	△74,681	△1.4
①	주 민 세	672,385	771,181	98,796	14.7
④	재 산 세	3,522,079	3,474,933	△47,145	△1.3
⑥	자 동 차 세	1,052,439	994,650	△57,788	△5.5
⑤	레 저 세	106,133	105,127	△1,005	△0.9
	담 배 소 비 세	582,205	576,610	△5,594	△1.0
③	지 방 소 비 세	2,786,892	2,678,871	△108,020	△3.9
②	지 방 소 득 세	7,933,937	7,983,158	49,221	0.6
	지역자원시설세	313,104	295,088	△18,015	△5.8
	지 방 교 육 세	1,707,448	1,610,371	△97,076	△5.7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주민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와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2회계연도 408만원에서 '23회계연도 426만원으로 4.4% 증가하여 고용이 증진됨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가 초과 징수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6,723억 8,500만원)보다 987억 9,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임
- ②지방소득세 수입은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및 임금상승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이 증가하는 등 종합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예산액(7조 9,339억 3,700만원)보다 0.6%, 492억 2,1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9〉 지방소득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입 예 산 (A)	세 입 결 산 (B)	증 감 (C)=(B)-(A)	증 감 륜 (C)/(A)
합 계		7,933,937	7,983,158	49,221	0.62
	양 도 소 득 분	740,773	738,756	△2,016	△0.27
	종 합 소 득 분	909,933	1,009,903	99,970	10.99
	법 인 소 득 분	2,631,051	2,552,179	△78,871	△3.0
	특 별 징 수 분	3,652,180	3,682,319	30,139	0.83

- ③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5.3%(소비지출분 19.3%, 취득세 등 보전분 6%)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의 안분비율과 비교할 때 소비지출분(19.3%)은 12.8%로 △0.2%, 취득세 등 보전분(6%)은 △0.9% 감소한 바

- 민간소비 및 수입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감소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2조 7,868억 9,200만원)보다 △1,080억 2,000만원(△3.9%) 부족수납된 것임
 - 지방소비세의 세액 비율은 '23회계연도에는 25.3%로 인상되었고 향후 민간소비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세수 증가가 예상되나
 - 서울시와 타·시도의 안분비율 가중치를 달리 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소비지출분 및 취득세 등 보전분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④재산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시 공시가격이 '22회계연도보다 △5.83% 인하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3조 5,220억 7,900만원)보다 △471억 4,500만원(△1.3%) 부족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⑤레저세 수입은 사업경영 정상화 및 경기재개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징수하였으나,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061억 3,300만원)보다 △10억 500만원(△0.9%)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 ⑥자동차세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한시 인하정책 등으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524억 3,900만원)보다 △577억 8,800만원(△5.5%)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2)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3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6%, 378억 2,100만원 증가한 8,521억 1,3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0〉 시세세입 수납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3	25,000,501	23,862,799	95.4	852,112	3.4
2 0 2 2	27,089,200	26,163,797	96.6	814,292	3.0
2 0 2 1	26,777,061	26,001,188	97.1	701,913	2.6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된 시세 수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 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 (8,521억 1,2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3,948억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4,573억 1,200만원으로 확인됨
- '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출국정지 신청 기준을 더욱 낮추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시세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2월말 기준으로 10.6%(899억 5,500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난 '22회계연도에 발생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중 27.7%, 2,256억 2,5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 미수납액(8,521억 1,200만원)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45.7%, 3,898억 6,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이 40.8%, 3,480억 7,700만원, 납기 미도래 5.3%, 452억 2,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각위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기 미 도 래
합	계	852,112 (100.0)	389,865 (45.7)	28,530 (3.3)	348,077 (40.8)	32,215 (3.8)	981 (0.1)	5 (0.0)	1,551 (0.2)	3,820 (0.4)	1,471 (0.2)	371 (0.0)	45,221 (5.3)
당 해 연 도 분 미 수 납 액		394,800 (100.0)	221,128 (56.0)	7,925 (2.0)	121,017 (30.7)	1,839 (0.5)	157 (0.0)	- (0.0)	135 (0.0)	1,710 (0.4)	0.9 (0.0)	371 (0.1)	40,513 (10.3)
	취 득 세	70,764	38,044	346	16,350	32	-	-	131	71	-	371	15,416
	주 민 세	7,858	5,404	35	2,349	9	29	-	-	0.8	-	-	29
	재 산 세	50,005	29,781	598	18,421	11	5	-	-	488	-	-	698
	자 동 차 세	54,850	36,969	344	16,593	91	2	-	0.1	22	0.8	-	825
	담 배 소 비 세	9,209	4,096	-	5,113	-	-	-	-	-	-	-	-
	지 방 소 득 세	163,780	84,319	6,348	48,362	1,664	117	-	-	1,011	-	-	21,957
	지역자원시설세	3,119	1,455	41	1,584	0.9	0.3	-	-	16	-	-	20
	지 방 교 육 세	35,211	21,056	211	12,242	29	1	-	4	98	0.1	-	1,565
지 난 년 도 분 미 수 납 액		457,312 (100.0)	168,737 (36.9)	20,605 (4.5)	227,060 (49.6)	30,375 (6.6)	823 (0.2)	5 (0.0)	1,416 (0.3)	2,109 (0.5)	1,470 (0.3)	- (0.0)	4,708 (1.0)

-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은 9,302억 400만원이나, 이중 서울시 체납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의 실제 수납액은 5.2%(479억 3,1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2,256억 2,500만원)을 고려하면 38세금징수과의 수납 비율은 21.2%(479억 3,100만원)로서 25개 자치구가 나머지 78.8%(1,776억 9,300만원)를 징수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울시와 자치구의 체납징수 인원에 차이가 있고, 1인당 징수액에도 차이가 있어 징수액의 절대치를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징수실적에만 한정하여 비교할 경우, 전담부서의 실효성이 제기될 수도 있어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도	'22년도	'21년도
지 난 년 도 수 입	예 산 액		213,700	210,000	201,005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A)		930,204	778,458	699,543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B)		225,625	215,569	235,753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C)=(B)/(A)		24.3	27.7	33.7
	38 세 금 징 수 과	예 산 액	42,500	42,600	39,000
		징 수 결 정 액	515,892	388,014	298,432
		실 제 수 납 액 (D)	47,931	42,858	56,330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E)=(D)/(A)	5.2	5.5	8.1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F)=(D)/(B)	21.2	19.9	23.9
		참 고	조 직 구 성	5개팀	5개팀
			현 원	42명	41명
	자 치 구	예 산 액	171,200	167,400	162,005
		징 수 결 정 액	414,311	390,444	401,110
		실 제 수 납 액 (G)	177,693	172,710	179,422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H)=(G)/(A)	19.1	22.2	25.6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I)=(G)/(B)	78.8	80.1	76.1
		참 고	조 직 구 성	72개팀	71개팀
			현 원	370명	371명

(3) 시세 세입중 정리보류액 관련

- '23회계연도에 대한 시세 세입 결산결과 **정리보류액**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57.0%, 1,744억 7,800만원 증가한 2,855억 8,900만원이며 이 중 당해연도분 정리보류액은 383억 2,200만원, 지난연도분은 2,472억 6,6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3〉 지방세 정리보류액 사유별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체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 재 산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 세 정리보류	평 가 액 부 족	기 타
2 0 2 3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100.0)	(0.0)	(0.1)	(5.6)	(0.6)	(75.3)	(0.0)	-	(13.9)	(4.5)
2 0 2 2	111,111	56	733	17,291	2,089	73,216	5	185	12,862	4,669
	(100.0)	(0.1)	(0.7)	(15.6)	(1.9)	(65.9)	(0.0)	(0.2)	(11.6)	(4.2)
2 0 2 1	73,958	48	107	16,514	776	42,930	4	16	8,424	5,135
	(100.0)	(0.1)	(0.1)	(22.3)	(1.1)	(58.0)	(0.0)	(0.0)	(11.4)	(6.9)

- '22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2월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결손 처분”을 “정리보류”로 개정하였으나 명칭만 다를 뿐 정리보류 또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리보류 또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인 바,
-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적용하여 해당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4〉 지방세 세목별 정리보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정리보류액									
			배분금액 부 족	채납처분 중 지	소멸시효 완 성	행방불명	무재 산	채 무 자 화상법에 의한면제	국 세 정리보류	평 가액 부 족	기 타
합	계	285,589	133	259	15,977	1,739	214,939	32	-	39,714	12,794
	당 해 연 도 수 입	38,323	58	1.9	-	124	34,588	1.7	-	2,450	1,097
	취 득 세	519	39	-	-	-	65	-	-	377	36
	주 민 세	653	-	0	-	0.7	425	-	-	74	151
	재 산 세	418	13	-	-	50	78	-	-	203	71
	자 동 차 세	1,067	-	1.1	-	10	280	0.6	-	335	438
	담 배 소 비 세	18,789	-	-	-	-	18,788	-	-	-	-
	지 방 소 득 세	10,211	-	0.5	-	28	8,718	1.0	-	1,294	167
	지역자원시설세	81	2	-	-	21	8	-	-	33	15
	지 방 교 육 세	6,585	3	0.3	-	11	6,222	0.1	-	129	216
	지 난 년 도 수 입	247,267	74	257	15,977	1,615	180,350	30	-	37,263	11,697

(4)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수가 가감되는 세입원으로서 시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23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조 3,350억 5,100만원)보다 4%, 534억 5,200만원 증가된 1조 3,885억 3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7,849억 3,300만원)보다 △7.6%, △595억 8,200만원 감소된 7,253억 5,1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1,22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픽스(COFIX) 금리인상등으로 인해 14.7%, 180억 2,8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업수입**은 2,96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825억원) 불발 등으로 △28.5%, △846억 7,7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에는 매각대금 7,500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미수납 되었으며, '23회계연도에는 당초 1,896억원을 편성하고, '23년 7월, 제1회 추경에서 825억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나, 매각 불발로 징수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825억원 전액을 부족 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5,424억 6,900만원)보다 20.8%, 1,129억 1,700만원 증가된 6,553억 8,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2,134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37억 6,3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5〉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2 0 2 1 회 계 연 도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 제 수납액	수납률
세 외 수 입	1,335,051	1,388,503	104.0	1,888,271	1,336,601	70.8	1,752,711	1,115,326	63.6
경 상 적 세 외 수 입	784,933	725,351	92.4	1,423,889	702,749	49.4	1,250,794	523,116	41.8
재 수입 임대수입	159,401	172,253	108.1	154,234	137,268	89.0	144,847	120,742	83.3
사 용 료 수입	155,688	154,990	99.6	142,832	148,134	103.7	148,041	116,739	78.8
수 수 료 수입	38,799	36,405	93.8	44,616	44,379	99.5	40,390	54,626	135.2
사업수입 ^{주1)}	296,900	212,223	71.5	949,551	193,447	20.4	881,440	166,027	18.8
징수교부금 수입	11,394	8,700	76.4	11,383	9,541	83.8	14,024	10,912	77.8
이 자 수 입	122,748	140,776	114.7	121,271	169,978	140.2	22,050	54,067	245.2
임 시 적 세 외 수 입	542,469	655,386	120.8	456,496	621,337	136.1	494,477	587,341	118.7
재 산 매 각 수입	149,218	168,042	112.6	52,835	56,573	107.1	106,761	15,806	14.8
자 치 단 체 간부담금	13,770	13,392	97.3	14,599	13,641	93.4	10,598	10,591	99.9
보 조 금 반환수입	213,478	297,241	139.2	178,922	292,360	163.4	141,413	303,641	214.7
기 타 수 입	135,503	147,949	109.2	180,852	221,681	122.6	204,387	218,526	106.9
지 난 년 도 수입	30,498	28,759	94.3	29,288	37,080	126.6	31,316	38,775	123.8
지방행정재 부과금 등	7,648	7,766	101.5	7,884	12,514	158.7	7,439	4,868	65.4
과 징 금	691	588	85.2	317	1,916	603.4	410	838	204.1
이행강제금	-	-	-	-	-	-	-	-	-
변 상 금	4,470	4,403	98.5	3,371	7,899	234.3	3,334	4,942	148.2
과 태 료	2,361	2,482	105.1	4,062	2,637	64.9	3,562	2,830	79.5
환 수 금	-	132	-	-	9	-	-	95,859	-
부 담 금	124	158	127.0	133	52	39.0	131	△3,838	△2918.0
범 칙 금 ^{주2)}	-	-	-						

주1) 매각사업수입 △825억원(DMC 랜드마크용지) 포함

주2)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세입과목 “범칙금”이 신설

(5)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제3조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표 3-16〉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실제수납액 (E)	예 산 액 대 비 실제수납액 차 이 (F=E-A)
	A=B+C+D	본 예 산 (B)	추 경 예 산 (C)	간 주 처 리 (D)		
지 방 교 부 세	199,226	184,631	9,008	5,586	201,220	1,994
보 통 교 부 세	155,407	155,407	-	-	155,407	0
특 별 교 부 세	5,836	-	250	5,586	7,830	1,994
소방안전교부세	37,983	29,224	8,759	-	37,983	0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1,554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본예산에 292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소방안전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23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292억 2,400만원)보다 45억 1,000만원 증액된 337억 3,400만원으로 확정통보하였고, '22년도 세제잉여금 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42억 4,900만원)을 회계연도중 추가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총 8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79억 8,3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아울러 '23회계연도중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한 55억 8,6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세입조치하고,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특별

교부세 세입예산을 기정예산보다 증액조정(2억 5,000만원)하여 의결하여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액(1,992억 2,6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2,012억 2,000만원)이 초과수납(19억 9,4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을 '19년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지난 '22년 11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부서장회의'에서 분권교부세 보전분 제도 원안유지 의견을 제출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교부기한을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 구두협의라는 한계가 있어 향후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실화 및 교부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인 바,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는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편성하되, ①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③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동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수납한 것임
- '2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6조 4,781억 4,6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5,652억 5,900만원)보다 △ 1.3%, △871억 1,300만원이 부족수령된 바,
 - 결산결과를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①**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6조 607억 5,4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1,625억 7,000만원)보다 △1.7%, △1,018억 1,6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으며,
 -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1,402억 6,2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1,357억 6,800만원)보다 3.3%, 44억 9,400만원이 초과수령 되고,
 - ③**기금(511-03)**의 경우, 2,771억 2,9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 (2,669억 1,900만원)보다 3.8%, 102억 1,000만원이 초과수령된 것임

〈표 3-17〉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실제수납액 (B)		예산액 대비 (C)=(B)-(A)	부족수령액 (C)/(A)
		수납률 (B)/(A)	부족수령률 (C)/(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6,565,258	6,478,146	98.7	△87,112	△1.3
국고보조금(511-01)	6,162,570	6,060,754	98.3	△101,816	△1.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511-02)	135,768	140,262	103.3	4,494	3.3
기금(511-03)	266,919	277,129	103.8	10,210	3.8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표 3-18〉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8,734,677	8,357,766	△376,911
	일반회계 ^{주1)}	6,565,258	6,478,146	△87,112
	특별회계	2,169,419	1,879,620	△289,799
	기타특별회계 ^{주1)}	187,843	289,798	△289,79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61,423	135,698	△25,725
	교통사업특별회계	47,397	46,069	△1,32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246	20,246	-
	주택사업특별회계	797,461	604,495	△192,966
	도시개발특별회계	141,611	140,176	△1,435
	균형발전특별회계	11,160	9,253	△1,907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2,725	889,065	△63,66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2,382	29,605	△2,777
	소방특별회계	3,829	3,829	-
	공기업특별회계 ^{주2)}	1,180	1,180	-
	수도사업특별회계	1,145	1,145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34	34	-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 ① 국고보조금(511-01)
-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 ③ 기금(511-03)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임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 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과
- ② 보조금수익(673)중 국고보조금(673-01)에 대한 수입결산 현황임

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4조 7,834억 1,800만원)의 98.4%, 14조 5,432억 8,5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미수납액(2,359억 4,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2,123억 400만원)보다 11.1%, 236억 3,700만원 증가하였고, 정리보류액(41억 9,100만원) 또한 직전회계연도보다 367.6%, 30억 5,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9〉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정리보류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3	14,783,418	14,543,285	98.4	235,941	1.6	4,191
2 0 2 2	15,070,984	14,857,539	98.6	212,304	1.4	1,140
2 0 2 1	13,809,285	13,686,110	99.1	118,672	0.9	4,502

○ 특히, ①수도사업특별회계(614억 8,000만원) ②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518억 7,700만원), ③주택사업특별회계(517억 7,000만원), ④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65억 9,800만원), ⑤교통사업특별회계(310억 2,700만원) 등에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0〉 특별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정 리 보 류 액 (징수결정액대비)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합 계		14,783,418	14,543,285 (98.4)	4,191 (0.0)	235,941 (1.6)
기 타 특 별 회 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56,158	2,056,139 (99.9)	- (-)	18 (0.0)
	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188,287	2,155,086 (98.5)	2,172 (0.1)	31,027 (1.4)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60,298	323,700 (88.8)	- (-)	36,598 (10.2)
	③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2,907,489	2,855,718 (98.2)	- (-)	51,770 (1.8)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074,218	2,071,873 (99.9)	- (-)	2,344 (0.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3,209	203,209 (100.0)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788	11,335 (88.6)	1,118 (8.7)	335 (2.6)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801,032	1,800,825 (99.9)	- (-)	206 (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4,341	34,341 (100.0)	- (-)	- (-)
	소 방 특 별 회 계	986,484	986,169 (99.9)	32 (0.0)	282 (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159,111	2,044,885 (94.7)	867 (0.0)	113,357 (5.3)
	①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74,511	1,012,372 (94.2)	658 (0.1)	61,480 (5.7)
	②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84,600	1,032,513 (95.2)	209 (0.0)	51,877 (4.8)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310억 2,700만원)중 86.8%, 269억 3,4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제출되었고
-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517억 7,000만원)중 무재산은 62.5%, 323억 3,900만원, 납세태만은 24.4%, 126억 1,000만원으로 확인되어, 해당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액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1〉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 재 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 무 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 또는 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 미 도 래	
합 계	122,583	32,527	4,464	39,810	104	-	2	5,268	4	1,602	10,164	28,633	
	(100.0)	(26.5)	(3.6)	(32.5)	(0.1)	-	(0.0)	(4.3)	(0.0)	(1.3)	(8.3)	(23.4)	
도시철도건설사업	18	-	-	-	-	-	-	-	-	-	18	-	
	(100.0)	(-)	(-)	(-)	(-)	(-)	(-)	(-)	(-)	(-)	(100.0)	(-)	
교통사업	31,027	142	13	26,934	-	-	-	2,156	-	-	1,774	6	
	(100.0)	(0.5)	(0.0)	(86.8)	(-)	(-)	(-)	(6.9)	(-)	(-)	(5.7)	(0.0)	
광역교통	36,598	-	-	101	-	-	-	2,731	-	503	7,129	26,132	
	(100.0)	(-)	(-)	(0.3)	(-)	(-)	(-)	(7.5)	(-)	(1.4)	(19.5)	(71.4)	
주택사업	51,770	32,339	4,439	12,610	-	-	2	379	4	1,097	303	594	
	(100.0)	(62.5)	(8.6)	(24.4)	(-)	(-)	(0.0)	(0.7)	(0.0)	(2.1)	(0.6)	(1.1)	
도시개발	2,344	-	-	-	-	-	-	-	-	-	551	1,793	
	(100.0)	(-)	(-)	(-)	(-)	(-)	(-)	(-)	(-)	(-)	(23.5)	(76.5)	
학교용지	335	-	-	-	-	-	-	-	-	-	335	-	
	(100.0)	(-)	(-)	(-)	(-)	(-)	(-)	(-)	(-)	(-)	(100.0)	(-)	
의료급여기금	206	-	-	-	94	-	-	-	-	-	51	60	
	(100.0)	(-)	(-)	(-)	(45.9)	(-)	(-)	(-)	(-)	(-)	(24.9)	(29.1)	
소방	282	45	10	164	9	-	-	2	-	2	1	47	
	(100.0)	(16.1)	(3.7)	(58.3)	(3.4)	(-)	(-)	(0.7)	(-)	(0.7)	(0.4)	(16.7)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1조 745억 1,100만원)의 94.2%인 1조 123억 7,200만원이 실제수납 된 것으로 제출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745억 1,100만원)은 요금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의 증가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8,985억 4,800만원)보다 19.5%, 1,759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09억 6,000만원)보다 20.6%, 105억 2,000만원 증가된 614억 8,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며
 - 미수납액(614억 8,000만원)중 **납기미도래**를 사유로 65.7% 403억 6,6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24년도에는 납기내에 반드시 수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3	1,074,511 (100.0)	1,012,372 (100.0)	658 (100.0)	61,480 (100.0)
	당 해 연 도 분	1,058,564 (98.5)	999,359 (98.7)	- (-)	59,204 (96.3)
	지난년도수입	15,946 (1.5)	13,012 (1.3)	658 (100.0)	2,275 (3.7)
2	0 2 2	898,548 (100.0)	846,853 (100.0)	735 (100.0)	50,960 (100.0)
	당 해 연 도 분	885,307 (98.5)	836,256 (98.7)	0 (0.0)	49,051 (96.3)
	지난년도수입	13,241 (1.5)	10,596 (1.3)	735 (100.0)	1,909 (3.7)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846억)의 95.2%인 1조 325억 1,3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846억)은 직전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88억 2,800만원)보다 7.5%, 757억 7,200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회계연도(520억 1,300만원)보다 △0.3%, △1억 3,600만원 감소한 518억 7,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3〉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2 0 2 3		1,084,600 (100.0)	1,032,513 (100.0)	209 (100.0)	51,877 (100.0)
	당 해 연 도 분	1,034,912 (95.4)	986,267 (95.5)	- -	48,644 (93.8)
	지난년도수입	49,688 (4.6)	46,246 (4.5)	209 (100.0)	3,232 (6.2)
2 0 2 2		1,008,828 (100.0)	956,596 (100.0)	218 (100.0)	52,013 (100.0)
	당 해 연 도 분	989,383 (98.1)	944,200 (98.7)	0 -	45,183 (86.9)
	지난년도수입	19,444 (1.9)	12,396 (1.3)	218 (100.0)	6,829 (13.1)

라. 지방채 관련

- '23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11조 4,424억 9,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11조 8,980억 200만원)보다 △3.8%, △4,555억 400만원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 지방채 현재액은 342억원이나, '21회계연도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34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지난 '22회계연도에 이어 '23회계연도에도 별도의 추가 차입이나 상환이 없어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됨
- **특별회계** 지방채 현재액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직전회계연도말(11조 2,138억 200만원)보다 △4.0%, △4,555억 400만원 감소된 10조 7,582억 9,700만원으로 확인됨
 - **지방채 차입**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차입액(2조 2,816억 2,600만원)보다 △5,744억 600만원 감소된 1조 7,072억 2,000만원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①도시철도공채(6,906억 9,000만원)와 ②동북선 경전철 건설 등을 위한 모집공채(4,609억원)를 포함하여 총 1조 1,515억 9,000만원을 차입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확충을 위해 85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등을 위한 모집공채 3,950억원을 차입한 것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에는 총 756억 3,0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23년도 예산서의 예산총칙에 명시된 ①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256억 3,000만원), ②풍납토성 복원 보상 등을 위한 모집공채(100억원)를 발행하였으며,

- '22회계연도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이월발행분인 ③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200억원), ④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2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4〉 2023회계연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예산총칙) 및 실제 발행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 2 3 년 도 본 예 산 예 산 총 칙	' 2 3 년 도 제 1 회 추 경 예 산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증 감 액	' 2 3 년 도 당 해 발행규모 ^{주1)}	예 산 총 칙 대 비 지 방 채 잔 액	비 고
	①	②	③=②-①	④	⑤=④-②	전년도이월발행
총 계	1,793,048	1,692,948	△100,100	1,667,220	25,727	40,000
일 반 회 계	-	-	-	-	-	-
특 별 회 계	1,793,048	1,692,948	△100,100	1,667,220	25,727	40,000
도 시 철 도 건 설 사 업 비 특 별 회 계	1,277,252	1,177,152	△100,100	1,151,590	25,561	-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85,000	85,000	-	85,000	-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95,000	395,000	-	395,000	-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5,796	35,796	-	35,630	166	40,000 ^{주2)}

※ 주1) 전년도 이월발행분 400억원은 제외된 것임

주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200억원,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 200억원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도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 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규모(1조 6,929억 4,800만원)보다 실제 발행규모(1조 6,672억 2,000만원)는 △257억 2,700만원 적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지난 '23년 3월,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대상 범위를 일부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서는 매출공채의 실판매액이 당초 예산액(7,162억 5,200만원)보다 △255억 6,100만원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6,906억 9,000만원이 발행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차입할 계획이었던 정부자금채에 대해서 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 (257억 9,600만원)보다 △1억 6,600만원 감소된 256억 3,0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채 상환**의 경우, 특별회계는 지난 '22회계연도 상환액(1조 58억 5,200만원)보다 1조 785억 6,600만원 증가된 2조 1,370억 9,500만원을 상환한 바,

■ 회계별로 지방채 상환 내역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1조 3,924억 5,300만원을 상환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581억 6,6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03억 7,500만원을 상환하였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930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31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됨

○ **기금**의 지방채 현재액은 6,500억원으로,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대규모 차입이 발생한 지난 '21회계연도(6,000억원)와 '22회계연도(2,000억원)의 채무상환 시기가 미도래하여 회계연도중 증·감이 없어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한 규모임

- 서울시가 '23회계연도에 4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는 1조 7,072억 2,000만원으로 이월 발행액(400억원)을 제외하면 '23회계연도분 지방채는 1조 6,672억 2,000만원을 발행한 것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2조 6,994억 6,500만원) 및 '23회계연도 예산총칙의 제4조(공채발행 및 차입금)의 범위(1조 6,929억 4,800만원)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검토됨
- 더욱이 '23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11조 4,424억 9,7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말(11조 8,980억 200만원)보다 △3.8%, △4,555억 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24년도 말 지방채 예상액(11조 4,056억 6,900만원)과 '23회계연도 말 지방채 현재액(11조 4,424억 9,700만원)을 비교할 경우, △368억 2,800만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24년도 서울시의 최종 예산은 50조 5,244억 5,900만원으로 행안부의 기준에 따른 예산대비 채무비율(이하 “채무비율”)을 산출하면 22.5%인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3-25〉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중 채무지표 산정기준

◆ 채무지표별 산정 세부기준

③ 예산대비 채무비율 = $\frac{\text{일반채무 잔액}}{\text{최종예산}} \times 100$

- 연도구분 : 당해연도 최종예산 및 일반채무 자료 활용
- 최종예산 규모 대비 일반채무(지방채+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 이행책임)
 - ※ 전체 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 '24년도(본예산 기준) 예산대비 채무비율 = 22.5%
 - 서울시 채무 ('24년도 말 기준 11조 4,056억원) /
최종예산 (50조 5,244억원 = 예산 45조 7,405억원 + 기금 4조 7,839억원)
 - 다만, 동 수치는 채무는 '24년도 말 예산액 기준이지만
최종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향후, 추경 등을 통해 '24년도 예산규모가 조정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관련 법령은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 채무비율(22.5%)이 25%를 초과하게 되면 당초 계획한 재정사업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세입예산보다 부족 수납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물론, 경기불황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6〉 202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발행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 방 채 발 행 한 도 액	총 한도액 ^{주1)}		2,699,465
	기	본 한 도 액	1,702,213
	별	도 한 도 액	997,252
		지 역 개 발 채 권 발 행 액	-
		도 시 철 도 공 채 발 행 액	777,252
		' 2 3 년 차 환 채 발 행 액	220,000
		지 역 일 자 리 사 업 (투 자 사 업)	-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
지 방 채 발 행 규 모	총 발행규모 ^{주2)}		1,667,220
	일	반 회 계	-
	특	별 회 계	1,667,220
	기	금	-

※ 주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28171 ('22.11. 4), “2023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 및 발행규모”

주2) 전년도 이월발행분 (400억원) 제외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당해연도에 발행하지 않은 지방채는 1회에 한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발행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채 756억 3,000만원 중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200억원, ②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4억 9,000만원, ③신림~봉천터널 건설 6,000만원, ④월드컵대교 건설 144억 6,000만원, ⑤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9억 9,000만원은 지난 '22회계연도 지방채 발행계획분을 '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한 사례로 확인됨

〈표 3-27〉 2022회계연도에 승인된 지방채를 이월 발행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지방채발행 계획액 ^{주1)}	'22회계연도 발행액	'23회계연도 발행액	차액
		(A)	(B)	(C)	(A-B-C)
총 계		98,000	57,900	40,000	100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공 원 보 상	20,000	- ^{주2)}	20,000	-
	강 남 순 환 도 시 고 속 도 로 건 설	10,000	9,500	490	10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22,500	22,400	60	40
	월 드 컵 대 교 건 설	14,500	-	14,460	40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31,000	26,000	4,990	10

※ 주1) 지방채발행계획액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의 금액임

주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에 지방채 1,500억원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21회계연도에 승인된 지방채를 이월발행한 것으로 '22회계연도에 승인된 200억원은 전액 '23회계연도로 이월하여 발행하였음

- '22회계연도에 승인받은 지방채를 '23회계연도로 이월 발행한 사례를 검토하면 '22년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确定的 지방채 발행계획에서确定的 규모를 초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중 '23회계연도에 이월 발행한 지방채 200억원의 경우, '23회계연도에 162억 3,900만원은 집행되었으나, 37억 6,000만원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4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집행하기 직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재원중 18.8%, 37억 6,0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지방채 원금뿐 아니라 추가적인 이자비용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지방채의 발행 및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중 실제 지출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합리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지난 '23년도 본예산 심사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한 정부자금채 257억 9,600만원을 발행할 것으로 계획하여 예산총칙 제4조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채무관리서의 작성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하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외 의무부담 등”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작성 내용으로도 “당해연도 지방채(지방채 증권, 차입금) 발행 내용에 대해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 편성된 정부자금채를 회계연도중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 결산서의 재무제표 첨부서류중 ①채무관리보고서와 결산서 첨부서류중 ②지방채 발행 보고서에

서 해당 사안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됨

- 이에 대하여 채무총괄관리부서는 동 정부자금채는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정부자금채)에는 해당되나, 관계 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발행과 동시에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로 채무를 이관하므로 서울시는 상환의무가 없어 채무가 해소된다고 회신한 바,
- 동 지방채 발행 건은 예산총칙에 기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심사시 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사안으로 회계연도 개시후 실제 발행하여 서울시의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되었고, 결산서에도 세입결산에 기재되어있음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작성대상에 정부자금채라 하여도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있고, 작성예시에도 “정부자금(공자기금)”을 기재하고 있어, 정부자금채 발행 즉시 채무가 이관되어 상환이나 관리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여도 채무관리보고서 및 지방채 발행 보고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28〉 202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현황 (회계별)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발 행 일	발 행 액	기 채 방 법 (차 입 선)	발 행 금 리	상 환 기 간
총 계		1,681,590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 계	1,151,590			
도 시 철 도 건 설 (도 시 철 도 공 채)	연중	690,690	매출공채 (도시철도공채)	2.5	7년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2023.11.13	47,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진접선 차량기지 건설	2023.11.13	81,9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2023.11.13	253,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9 호 선 4 단 계 건 설	2023.11.13	28,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노 후 전 동 차 교 체	2023.11.13	51,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63	3년만기 일시상환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소 계	395,000			
재 개발 임대주택 매입	2023.11.22	18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3.963	2년만기 일시상환
재 건축 소형주택 매입	2023.11.22	6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3.963	2년만기 일시상환
일 반 매 입 임 대	2023.12.12	8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신 혼 부 부 매 입 임 대	2023.12.12	45,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청 년 매 입 임 대	2023.12.12	3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 계	85,000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2023.12.12	85,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소 계	75,630			
풍납토성 복원사업(차환)	2023.12.12	1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45	1개월('24. 1월 상환)
가 락 동 농 수 산 물 도 매 시 장 시 설 현 대 화	연중수시	25,630	정부자금채 (공모공채)	3.00	농수산식품공사로 채무 이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2023.12.12	20,00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2023.12.12	49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2023.12.12	6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월 드 컵 대 교 건 설	2023.12.12	14,46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023.12.12	4,990	모집공채 (공모공채)	4.25	1개월('24. 1월 상환)

〈표 3-29〉 2023회계연도 지방채 증감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2022년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중 증감현황			2023년도말 현재액	2023회계연도중 이자지급
				차입상환	증감	①-②		
				①	②	①-②		
총	계		11,898,002	1,681,590	2,137,095	△455,504	11,442,497	180,399
일	반 회 계 (합 계)		34,200	-	-	-	34,200	783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일 반 회 계)	모 집 공 채	34,200	-	-	-	34,200	783
특	별 회 계 (합 계)		11,213,802	1,681,590	2,137,095	△455,504	10,758,297	168,113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11,213,802	1,681,590	2,137,095	△455,504	10,758,297	181,909
	도시철도공채 ^{주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 공채	5,545,433	690,690	768,453	△77,762	5,467,670	77,626
	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118,100	460,900	624,000	△163,100	955,000	9,656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도시 기금	716,024	-	48,166	△48,166	667,858	16,827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050,000	395,000	310,000	85,000	1,135,000	13,230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1,430,000	20,000	150,000	△130,000	1,300,000	22,754
	강남신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773,800	20,000	99,200	△79,200	694,600	19,689
	풍납토성 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 집 공 채	71,000	10,000	23,000	△13,000	58,000	944
	신림-봉천터널 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 발전기금	20,418	-	3,025	△3,025	17,393	289
	서부간선지하도로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 발전기금	38,625	-	5,150	△5,150	33,475	275
	동부간선도로확장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자 금관리기금	31,400	-	-	-	31,400	428
	동부간선도로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자 금관리기금	83,400	-	-	-	83,400	1,138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 집 공 채	283,000	85,000	93,000	△8,000	275,000	4,326
	미수입복합공간 등 문화시설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	모 집 공 채	52,600	-	13,100	△13,100	39,500	926
	공 기업 특 별 회 계 (소 계)		-	-	-	-	-	-
기	금 (합 계)		650,000	-	-	-	650,000	11,503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재난관리기금)	모 집 공 채	650,000	-	-	-	650,000	11,503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이월발행분 포함

주2) 교통공사 공채 이관분은 도시철도공채에 포함된 것임

〈표 3-30A〉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4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단초 발행액	발행조건		'23년도말 현재액	'24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24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채 무 총 계 (가)+(나)+(다)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지방채 ^{주1)} (가)=㉠+㉡+㉢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일 반 회 계 ㉠			34,200			34,200	-	-	783	34,200
마 국 산 업 단 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모집공채	'21.12.	34,200	2.29 (고정금리)	5년 (일시상환)	34,200	-	-	783	34,200
특 별 회 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기 타 특 별 회 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도 시 철 도 공 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 공채	'17.~'23.	5,467,670	1.0~2.5 (고정금리)	7년 (일시상환)	5,467,670	665,966	376,300	38,349	5,343,323
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모집공채	'19.~'23.	955,000	1.69~4.26 (고정금리)	3년~10년 (일시상환)	955,000	294,000	392,153	38,478	1,208,000
지하철 부채 상환(차환) (도시철도건설사업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24.10. (예정)	-	-	-	-	220,000	-	-	220,000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주 택 사 업)	주택도시 기금	'95~'01	1,018,574	1.8(변동) 3.0(고정)	10년거치 20년상환 30년거치 15년상환	667,858	-	52,305	15,325	615,552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 (주 택 사 업)	모집공채	'19.~'23.	1,135,000	1.06~4.45 (고정금리)	1개월, 2년, 4년, 5년, 10년 (일시상환)	1,135,000	144,000	365,000	20,761	914,000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도 시 개 발)	공공자금 관리기금	'24.10. (예정)	-	-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	180,000	-	-	180,00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S O C 확충 (도 시 개 발)	모집공채	'20.~'23.	694,600	1.767~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694,600	50,000	162,000	14,108	582,600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표 3-30B〉 서울시 채무현황 및 2024년도중 차입·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23년도말 전망액	
				발행 금리	거치기간 (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채무총계 (가)+(나)+(다)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지방채 ^{주1)} (가)=㉠+㉡+㉢			11,801,389			11,898,002	1,683,966	1,720,794	192,857	11,405,669	
특별회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기타특별회계 ㉠			11,117,189			10,758,297	1,683,966	1,570,794	181,527	10,871,46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			모집공채	'19.~'23.	1,300,000	1.29~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30년 (일시상환)	1,300,000	- 20,000	22,269	1,280,000
풍납토성 복원사업 (도시개발)			모집공채	'19.~'23.	58,000	1.79, 4.25 (고정금리)	10년 (일시상환)	58,000	- 10,000	894	48,000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SOC (도시개발)			지역상생 발전기금	'19.~'20.	59,043	0.75 (고정금리)	2년거치 8년상환 (분할상환)	50,868	40,000 8,175	481	82,693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SOC (도시개발)			공공자금 관리기금	'20.	31,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31,400	- -	430	31,400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SOC (광역교통시설)			모집공채	'19.~'23.	275,000	1.75~4.2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275,000	90,000 122,000	4,282	243,000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북천교~의정부시계) (광역교통시설)			공공자금 관리기금	'20.	83,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분할상환)	83,400	- -	1,140	83,400
미술문화복합공간 확충 문화시설발견 (문화관광형발전)			모집공채	'19.~'21.	39,500	1.79~4.45 (고정금리)	5년, 10년 (일시상환)	39,500	- -	832	39,5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기금 ㉢			◎		650,000			650,000	- 150,000	11,503	650,000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재난관리기금)			모집공채	'20.~'22.	650,000	1.237~2.585 (고정금리)	3년, 5년 (일시상환)	650,000	- 150,000	11,503	500,000
채무부담행위 (나)					-	-	-	-	- -	-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다)					-	-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표 3-31〉 부채·채무^{주1)} 현황 (2023~20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2 0 2 1
서울시 및 투자기관 총계	부 채	43,399,239	44,776,082	43,540,404
	채 무	21,714,185	22,017,477	20,019,584
서울시	부 채	18,059,399	19,360,205	18,793,543
	채 무	11,442,497	11,898,002	10,774,904
서울시 투자기관	부 채	25,339,839	25,415,876	24,746,860
	채 무	10,271,687	10,119,475	9,244,680
서울교통공사	부 채	6,832,164	6,556,959	6,607,231
	채 무	3,958,000	3,538,000	3,597,310
서울시설공단	부 채	245,661	199,348	186,577
	채 무	-	-	-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부 채	197,104	172,091	147,393
	채 무	94,122	71,197	53,627
서울주택도시공사	부 채	17,706,889	18,168,757	17,634,093
	채 무	5,960,188	6,328,312	5,504,234
서울에너지공사	부 채	349,126	307,276	170,298
	채 무	259,377	181,965	89,506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 채	8,893	11,442	1,266
	채 무	-	-	-

※ 주1) 채무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함

4. 세출결산

가. 불용액 관련

(1)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51조 4,900억 4,800만원)의 4.3%인 2조 2,388억 5,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9,951억 500만원)보다 2,437억 4,400만원 증가한 것임
- 불용액은 ①사업추진중 자연재해 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②지속적인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③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 사례 모두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지난 '23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일부사업에 대해 증·감 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2조 2,388억 5,000만원으로 지난 '17회계연도에 불용액이 1조원을 초과한 이후 불용액이 2조원 이상 발생한 바,
 - 사업부서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자 예산확보를 우선시하였을 수도 있으나,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해당 소요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용규모가 확대되어 당해연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에는 회계연도중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32〉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주1)}	불 용 액 ^{주1)}	불 용 률
2 0 2 3	51,490,048	2,238,850	4.3
2 0 2 2	53,468,799	1,995,105	3.7
2 0 2 1	47,759,128	1,180,681	2.5
2 0 2 0	46,798,514	1,223,944	2.6
2 0 1 9	40,094,847	1,096,919	2.7
2 0 1 8	36,547,866	1,011,219	2.8
2 0 1 7	32,916,152	1,135,249	3.4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아울러,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보다 예산의 규모가 △3.7%, △1조 9,787억 5,1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규모는 전년 대비 12.2%, 2,437억 4,400만원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전년 대비 51.7%)과 보조금반납금(전년 대비 20.6%)도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어 불용이나 이월 사례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33〉 서울특별시 결산현황 ('23회계연도~'22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회 계 연 도 (A)	2 0 2 2 회 계 연 도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률 (D = C / B)
예 산 현 액	51,490,048	53,468,799	△1,978,751	△3.7
지 출 액	47,460,455	50,276,587	△2,816,131	△5.6
다음연도 이월액	1,690,556	1,114,066	576,490	51.7
보 조 금 반 납 금	100,185	83,040	17,144	20.6
불 용 액	2,238,850	1,995,105	243,744	12.2

○ 회계별로 불용액 발생 규모를 검토하면 일반회계는 직전회계연도(8,604억 5,700만원)보다 3,814억 4,100만원 증가한 1조 2,418억 9,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23회계연도에 세수 부족수납이 발생되어 보통세 등 지방세 세입규모에 연동하여 세출예산의 규모가 확정되는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 등 법정전출금의 실제 지출액이 당초 추계한 규모보다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되는 바,

-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면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회계년도말이라도 정리추경을 통해 당해 연도 세입규모와 그와 연동된 법정전출금의 세출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는 직전회계연도(1조 1,346억 4,700만원)보다 △1,376억 9,600만원 감소한 9,969억 5,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339억 8,300만원(예산현액 대비 17.3%)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684억 2,000만원)보다 불용액이 388.1%, 2,655억 6,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703억 5,900만원(예산현액 대비 5.6%)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4,808억 7,900만원)보다 불용액이 △64.5%, △3,105억 2,000만원 감소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367억 7,100만원)중 71.7%, 263억 7,300만원이 불용된 바,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 분담분인 토지매입가의 50%를 편성한 것이나 교육청의 토지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토지매입가 확정이 순연되어, 당초 매입가를 예상하여 편성한 예산현액(19억 8,7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한 예탁금은 세입감소에 따라 예탁금 집행액이 감소하여 예산현액(337억원)의 28.8%, 97억원만 예탁되고 예산현액 대비 71.2%, 240억원이 불용되었음
- 공기업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69억 5,100만원(예산현액 대비 6.6%)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1,049억 9,800만원)보다 △36.2%, △380억 4,700만원 감소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60억 3,000만원(예산현액 대비 8.1%)이 불용되어 직전회계연도(703억 5,700만원)보다 불용액이 50.7%, 356억 7,300만원 증가하였음

〈표 3-34〉 회계별 불용액 발생 현황 ('23~'22)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주 1)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주 1)
합 계	51,490,048	2,238,850 (4.3)	53,468,799	1,995,105 (3.7)
일 반 회 계	36,507,392	1,241,899 (3.4)	38,319,642	860,457 (2.2)
특 별 회 계	14,982,655	996,950 (6.7)	15,149,156	1,134,647 (7.5)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823,968 (6.3)	13,247,111	959,291 (7.2)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057,950	13,310 (0.6)	2,201,609	34,165 (1.6)
교통사업 특 별 회 계	2,230,608	146,182 (6.6)	2,292,776	190,577 (8.3)
광역교통시설 특 별 회 계	332,691	8,778 (2.6)	350,236	44,460 (12.7)
주택사업 특 별 회 계	3,041,073	170,359 (5.6)	3,002,632	480,879 (16.0)
도시개발 특 별 회 계	2,119,576	79,070 (3.7)	2,425,711	82,750 (3.4)
균형발전 특 별 회 계	211,850	14,857 (7.0)	208,872	11,253 (5.4)
학교용지부담금 특 별 회 계	36,771	26,373 (71.7)	29,214	26,513 (90.8)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1,928,934	333,983 (17.3)	1,752,290	68,420 (3.9)
한강수질개선 특 별 회 계	37,339	3,282 (8.8)	33,731	978 (2.9)
소방 특 별 회 계	983,148	27,755 (2.0)	950,036	19,293 (2.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172,981 (8.6)	1,902,045	175,356 (9.2)
수도사업 특 별 회 계	995,268	106,030 (10.7)	867,963	70,357 (8.1)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07,442	66,951 (6.6)	1,034,081	104,998 (10.2)

※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임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출잔액의 경우,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중 50.5%, 1조 1,313억 8,6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7,506억 5,300만원)보다 3,807억 3,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체 불용액의 24.4%, 5,477억 5,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718억 4,000만원)보다 △2,240억 8,000만원 감소하였으나,
 - 보조금 정산잔액은 '23회계연도 불용액의 17.0%, 3,820억 1,400만원이 발생되어 직전회계연도(3,020억 3,600만원)보다 799억 7,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지난 '24년 1월,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를 불용 원인중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절감액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은 0.2%, 61억 4,500만원으로 계약심사 과정에서 절감한 재원 등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는 계약심사 절감액 등을 예산절감액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 불용사유가 자칫 예산의 과다 편성 등 편성과정에서 추계부실로 인한 과다 편성을 계약심사 절감액으로 포장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의 발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오용되지 않도록 불용 사유를 분류함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5〉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발 생 사 유					
			보조금 정산잔액 주1)	예산절감액 주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주3)	낙찰차액 주4)	지출잔액 주5)	예비비 주6)
2023 회계연도	불용액	2,238,850	382,014	6,145	547,759	81,832	1,131,386	89,713
	구성비	100.0	17.0	0.2	24.4	3.6	50.5	4.0
구	분	합 계	발 생 사 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2 회계연도	불용액	1,995,105	302,036	-	771,840	84,915	750,653	85,660
	구성비	100.0	15.1	-	38.7	4.3	37.6	4.3
구	분	합 계	발 생 사 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1 회계연도	불용액	1,180,681	112,585	-	323,227	75,308	595,680	73,879
	구성비	100.0	9.5	-	7.4	6.4	50.5	6.3

※ 주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사군비만 해당

주2) 예산절감 :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 계약심사 절감액 등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한 경우

주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주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주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주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 실·본부·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복지정책실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의 23.2%, 5,192억 1,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주요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2,907억 5,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1,305억 1,000만원) 등인 바,

- 복지정책실은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어 국고보조금의 실제 교부액 및 예산 편성액을 적극적으로 경정 및 관리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음

■ 그럼에도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복지정책실의 불용액(5,192억 1,000만원)중 55.9%, 2,907억 5,9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도 25.1%, 1,305억 1,000만원이 발생되었음

■ 특히, 복지정책실의 '23회계연도 불용액(5,192억 1,000만원)은 지난 '22회계연도(1,778억 7,000만원)보다 3,413억 4,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불용규모가 전년 대비 191.9% 증가한 바,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국고보조금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고, 적정 규모가 내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비 규모가 변경내시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예산미집행에 따른 불용과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재원없는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불용액중 10.6%, 2,373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98.6%, 2,340억 9,5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평생교육국은 매년 **지출잔액**을 사유로 9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방세 전출, 담배소비세 전출, 지방교육세 전출** 등은 세수실적과 연동하여 전출규모가 변동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입 추계부서의 정밀한 세수추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서울시와 교육청이 상호 연계된 사업내용이기에 재원없는 불용이나 미수납이 상호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경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실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123억 6,700만원이 불용되고, 불용액의 62.1%, 1,319억 8,5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고, 715억 9,200만원(불용액의 33.7%)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임

- 주택정책실은 불용액(2,105억 6,200만원)중 52.7%, 1,110억 8,1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되었고, 불용액의 39.7%, 836억 3,8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은 139억 3,100만원(불용액의 6.6%)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36〉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계)		발생사유별 불용액					
		구성비 ^{주2)}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유발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238,850	100.0	382,014	6,145	547,759	81,832	1,131,386	89,713
복지정책실	519,215	23.2	290,759	-	130,510	141	97,804	-
평생교육국	237,319	10.6	-	-	1,987	1,236	234,095	-
도시교통실	212,367	9.5	2,491	24	71,592	3,662	131,985	2,610
주택정책실	210,562	9.4	13,931	-	83,638	338	110,081	1,571
기획조정실	202,003	9.0	941	-	252	146	123,534	77,128
행정국	126,949	5.7	17	-	116,623	792	9,515	-
여성가족정책실	106,515	4.8	24,351	103	29,235	193	52,631	-
서울아리수본부	106,030	4.7	10,278	2,467	11,568	12,379	63,918	5,418
재무국	100,440	4.5	0.2	-	5,001	165	95,274	-
물순환안전국	81,925	3.7	375	-	9,364	15,638	56,013	533
재난안전관리실	54,492	2.4	4,697	212	2,075	19,123	28,383	-
균형발전본부	51,357	2.3	116	-	47,551	402	3,287	-
기후환경본부	47,963	2.1	24,489	835	2,944	1,341	18,352	-
경제정책실	29,128	1.3	69	203	2,222	751	25,880	-
소방재난본부	27,405	1.2	314	-	354	3,018	21,267	2,450
푸른도시여가국	22,587	1.0	879	86	2,462	6,793	12,365	-
시민건강국	22,383	1.0	6,584	84	6,312	1,345	8,056	-
도시기반시설본부	13,864	0.6	-	58	12,377	35	1,392	-
미래청년기획단	10,472	0.5	69	-	-	334	10,068	-
문화본부	10,157	0.5	249	634	2,223	3,309	3,740	-
미래한강본부	7,489	0.3	316	-	2,612	2,241	2,32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7,378	0.3	849	143	571	267	5,545	-
의회사무처	6,938	0.3	-	2	4,226	473	2,235	-
디지털정책관	6,924	0.3	6	1,006	30	2,653	3,227	-
관광체육국	3,973	0.2	419	-	209	943	2,400	-
디자인정책관	1,804	0.1	-	-	85	1,177	541	-
인재개발원	1,605	0.1	-	-	38	98	1,468	-
자치경찰위원회	1,555	0.1	-	-	382	734	438	-
시립미술관	1,526	0.1	-	-	-	201	1,324	-
홍보기획관	1,492	0.1	-	25	137	797	531	-
미래공간기획관	1,384	0.1	-	-	891	313	180	-
도시공간본부	1,347	0.1	-	-	21	306	1,020	-
서울역사박물관	609	0.0	5	-	-	189	414	-
비상기획관	599	0.0	7	-	-	210	381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456	0.0	-	-	234	13	208	-
감사위원회	327	0.0	-	-	3	18	305	-
기술심사담당관	118	0.0	-	-	-	17	101	-
민생사법경찰단	96	0.0	-	-	15	-	8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4	0.0	-	-	-	-	44	-
대변인	32	0.0	-	-	-	6	26	-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2)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및 이월예산 불용사업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4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60건, 1조 6,479억 1,300만원으로 '23회계연도중 발생한 불용액(2조 2,388억 5,000만원)의 73.6%에 해당됨

〈표 3-37A〉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정 책 실	의 료 급 여 사 업	1,928,822	333,983	17.3	-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853,145	116,616	2.4	-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2,052,398	102,743	5.0	-
기 획 조 정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순세계 잉여금)	1,062,487	100,000	9.4	-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46,118	97,772	5.0	-
복 지 정 책 실	기 초 연 금 지 급	3,043,664	77,113	2.5	-
복 지 정 책 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952,725	63,660	6.6	-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90,745	63,473	3.5	-
도 시 교 통 실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일반전출금(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747,575	60,000	8.0	-
도 시 교 통 실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29,783	56,467	43.5	-
균 형 발 전 본 부	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321,351	44,319	3.3	-
도 시 교 통 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08,779	44,058	40.5	-
주 택 정 책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도정)	420,000	36,000	8.5	-
주 택 정 책 실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예 탁	33,700	24,000	71.2	-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282,047	22,938	8.1	39,661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3-37B〉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 택 정 책 실	재 개 발 임 대 주 택 매 입	236,482	21,991	9.2	-
주 택 정 책 실	공 공 주 택 건 설 (추가 8만호, 통합공공임대주택)	59,114	19,763	33.4	8,641
물 순 환 안 전 국	서 울 물 재 생 시 설 공 단 위 탁 사 업 비	190,408	18,964	9.9	-
주 택 정 책 실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10,629	17,111	15.4	-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71,033	15,642	22.0	19,779
여성가족정책실	부 모 급 여 (영 아 수 당) 지 원	339,248	14,525	4.2	-
여성가족정책실	누 리 과 정 보 육 료 지 원	207,221	14,304	6.9	-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월 세 한 시 특 별 지 원	54,724	14,219	25.9	10,000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81,888	12,887	2.2	-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203,371	12,701	6.2	-
여성가족정책실	서 울 형 키 즈 카 페 조 성	52,744	12,286	23.2	-
여성가족정책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75,898	11,480	15.1	-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 배급수관(350mm이하) 정비	74,205	11,416	15.3	944
기 획 조 정 실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전 출	118,213	10,000	8.4	-
기 획 조 정 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도시개발)	41,600	10,000	24.0	-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31,245	9,799	31.3	7,104
서울아리수본부	광 암 수 계 배 수 관 로 정 비	20,107	9,376	46.6	2,791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4,668	9,182	16.7	2,226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19,802	9,129	46.1	-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84,423	9,088	3.1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3-37C〉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경 제 정 책 실	서 울 동 행 일 자 리	106,134	8,398	7.9	304
시 민 건 강 국	코 로 나 1 9 백 신 접 종 시 행 비	38,634	7,620	19.7	-
재난안전관리실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100,319	7,460	7.4	5,629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5,115	6,821	27.1	5,515
주 택 정 책 실	안 심 집 수 리 보 조 사 업	10,650	6,382	59.9	-
도 시 교 통 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454,413	6,331	1.3	-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188,764	6,331	3.3	-
주 택 정 책 실	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8,764	6,331	3.3	-
도 시 교 통 실	운 수 업 계 (버 스) 연 료 보 조 금	27,086	6,179	22.8	-
여성가족정책실	아 동 수 당 지 원	408,118	5,873	1.4	-
미래청년기획단	서 울 청 년 수 당	60,297	5,817	9.6	-
경 제 정 책 실	서 울 형 뉴 딜 일 자 리	80,508	5,415	6.7	1,464
여성가족정책실	임 산 부 교 통 비 지 원	37,200	5,088	13.6	-
주 택 정 책 실	역 세 권 공 공 임 대 주 택 등 매 입	17,994	5,065	28.1	-
여성가족정책실	지 역 아 동 센 터 운 영 지 원 (자 체)	20,571	5,049	24.5	-
주 택 정 책 실	공 공 토 지 건 설 형 서 울 리 츠	7,472	5,008	67.0	-
재 무 국	차 세 대 지 방 세 입 정 보 시 스 템 개 발 및 운 영 분 담 금	4,990	4,990	100.0	-
주 택 정 책 실	재 건 축 등 공 공 임 대 주 택 매 입	153,473	4,904	3.1	-
재난안전관리실	구 천 면 길 도 로 확 장	4,889	4,834	98.8	-
주 택 정 책 실	시 유 지 활 용 공 공 주 택 공 급	19,387	4,790	24.7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3-37D〉 불용액 발생규모 4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거 주 시 설 운 영	111,326	4,756	4.2	-
주 택 정 책 실	청 년 월 세 지 원	64,802	4,569	7.0	-
물 순 환 안 전 국	중 량 물 재 생 센 터 운 영	58,574	4,536	7.7	-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정 비 사 업 용 자 금 지 원	25,000	4,205	16.8	-
물 순 환 안 전 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32,135	4,156	12.9	1,005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보통세중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과목에서 세입예산액보다 부족수납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법정전출 사업의 경우 재원이 부족수납되어 당초 편성규모보다 감액전출됨으로써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가 다수 확인됨

- 행정국 소관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 4조 8,531억 4,500만원의 2.4%, 1,166억 1,600만원이 불용된 바,

■ 관련 법령은 자치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자 보통세의 일부를 조례에 따라 자치구로 교부하는 것으로,

■ 서울시는 '23년도 본예산 제출시 추계한 당해연도 보통세 세입 규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편성하였으나, 보통세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수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세입 규모와 연동되는 조정교부금을 당초 편성 규모대로 자치구로 교부하지 못하여 불용된 것임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시세의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는 바,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세부사업 ①**지방세 전출**은 예산현액(2

조 523억 9,800만원)의 5.0%, 1,027억 4,300만원, ②**지방교육세 전출**은 예산현액(1조 9,461억 1,800만원)의 5.0%, 977억 7,200만원, ③**담배소비세 전출**은 예산현액(2,844억 2,300만원)의 3.1%, 90억 8,800만원은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으로

- 평생교육국은 위 3개 세부사업이 계획한 규모만큼 교육청으로 전출되지 못한 사유를 세수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출잔액**으로 제출하였음
- 재무국 소관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1조 7,907억 4,500만원의 3.5%, 634억 7,3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5,818억 8,800만원의 2.2%, 128억 8,700만원이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으로 확인됨
- 관련 법령은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금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매년 공동재산세 일부를 자치구로 전출하고 있는 바, '23회계연도에는 세수징수실적 저조로 인하여 연동되는 **재정보전금**에서도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재무국은 그 사유를 **지출잔액**으로 제출하였음
- 또한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세 징수교부금**을 편성하여 징수실적에 따라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바, 결산결과 세입 징수액이 당초 추계에 미달되어 연동되는 세출사업에서도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70%는 ①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②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계정, ③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계정(도정계정), ④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재촉계정)으로 각각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출하고 있음
- '23회계연도의 경우, 재산세 징수실적 저조로 인해 균형발전본부 소관 ①**도시개발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예산현액(1조 3,213억 5,100만원)

중 3.3%, 443억 1,900만원의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 되었으며

- 도시교통실 소관 ②**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불용액 63억 3,100만원), 주택정책실 소관 ③**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불용액 63억 3,100만원), ④**주택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불용액 63억 3,100만원)도 시세가 부족수납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로 검토됨

〈표 3-38〉 시세 부족수납에 따른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불 용 액	불 용 률
법 정 전 출 금 시 세 결 손 에 따 른 불 용 액 계				465,891	-
행 정 국	조 정 교 부 금	4,853,145	4,736,528	116,616	2.4
평 생 교 육 국	지 방 세 전 출	2,052,398	1,949,655	102,743	5.0
평 생 교 육 국	지 방 교 육 세 전 출	1,946,118	1,848,346	97,772	5.0
재 무 국	재 정 보 전 금	1,790,745	1,727,271	63,473	3.5
균형발전본부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1,321,351	1,277,032	44,319	3.3
재 무 국	시 세 징 수 교 부 금	581,888	569,001	12,887	2.2
평 생 교 육 국	담 배 소 비 세 전 출	284,423	275,335	9,088	3.1
도 시 교 통 실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법 정 전 출 금	454,413	448,082	6,331	1.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정전출금(도정계정)	188,764	182,433	6,331	3.3
주 택 정 책 실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법정전출금(재촉계정)	188,764	182,433	6,331	3.3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시세 결손에 따른 불용액'은 4,658억 9,100만원으로 이는 '23회계연도 총 불용액의 20.8%에 해당되며 이를 회계연도 종료 전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였다면 불용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원년이 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23년도 본예산('22.11) 및 추경예산('23. 5) 편성시점에는 금번 발생한 세입 부족수납 사례를 예측하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례는 서울시의 집행 의지 등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회계연도중 가능한 조치 방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일 수 있으나,

■ 회계연도 종료 직전이라도 시세 수입을 감액조정하고 그와 연계된 세출사업의 규모도 조정하여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세입 추계오류에 따른 세입예산 부족수납이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세입과 연동된 세출사업에도 '시세 결손에 따른 불용액'을 발생시켜 불용규모가 확대되는 등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 관련 예산이 전출되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또한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해당 기관의 재정지표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서울시 회계간 전출입 등에도 영향을 주어 특정 회계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등 행정의 신뢰도 저하요인이 발생될 수 있는 바,

- 향후에는 세입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세수결손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라도 실제 세입 규모가 당초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세입예산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1조 624억 8,700만원중 9.4%, 1,000억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임

- 관련 법령은 법정정산분을 제외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5.2%에 해당하는 1조 624억 8,700만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고자 하였으나
- 세수감소 등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비율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 9,624억 8,700만원만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 1,000억원은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3-3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순세계잉여금)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불 용 사유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1,062,487	100,000 (9.4)	-	-	-	-	100,000 (9.4)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사업부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다른 사업의 재원에 일부 활용하고자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립비율(50%)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출 규모를 조정할 것일 수 있으나, 해당 재원은 지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른바 '현금성 자원'임에도 의회로부터 의결받은 전액을 전출하지 않고 1,0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1,000억원의 용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례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지출잔액은 “세출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정하고 있어, 동 사유가 아닌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등에 해당되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보다 적합한 분류로 사료됨

- 결산시 불용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 추진시 불용액을 감소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다른 세부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전출하지 않은 사업의 불용사유까지 지출잔액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용사유에 따른 후속조치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는 예산현액 1,904억 800만원의 9.9%, 189억 6,4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됨

- 사업부서는 지난 '23년 5월 30일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력비 증가 및 추가 시설 개선 등을 사유로 107억 2,700만원을 증액요청한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제1회 추경을 통해 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규모로 한정하여 감액조정하고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추가 예산(132억 3,700만원)보다도 48억 1,400만원이 더 불용(181억 5,100만원)된 것으로 검토됨

〈표 3-4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산 (A)	'23년도 1회추경	전용내역		예산현액 (B)	증감액 (B-A)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179,681	190,408	△300	300	190,408	10,827	18,964
공 공 운 영 비	-	-	-	300 ^{주1)}	300	300	0.8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65,204	178,442	△300 ^{주1)}	-	178,142	12,937	18,151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4,476	11,966	-	-	11,966	△2,510	813

※ 주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4874 ('23. 4.18)

- 공유재산 손해보험을 서울시가 직접 가입하고자 전용을 통해 재원 확보

- 사업부서가 추경을 통해 증액요청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132억 3,700만원)의 내역은 동력비(123억 4,200만원), 일반운영비(1억 6,4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7억 3,000만원)인 바,
- 사업부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181억 5,100만원)은 동력비(27억원), 일반운영비(6억원), 수선유지교체비(97억원), 약품비(17억원), 인건비(16억원), 일반예비비(18억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 결국 추경을 통해 증액 요청한 동력비,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안임에도 재원 확보만 우선시한 결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41〉 '23년도 제1회 추경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구 분	산 출 내 역	증 감 사 유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단 경상적대행사업비	13,237
	동력비	12,342
	동력비(탄천센터)	2,733
	동력비(서남센터)	9,608
	일반운영비	164
	직원채용 대행용역	110
	설립 이전 비전자기록물 전수조사	50
	탄천주민협의회 위원회 수당	4
	수선유지교체비	730
	서남센터 악취탈취포집 시설 개선사업	340
	탄천센터 악취탈취포집 시설 개선사업	270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개선	50
	탄천물재생센터 노후 체육시설 개선(족구장)	70

- 주택정책실 소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547억 2,400만원)중 ①25.9%, 142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②18.2%, 100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648억 200만원)의 7.0%, 45억 6,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42〉 청년 월세 지원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청 년 월 세 한 시 특 별 지 원	21,400	33,324	54,724	27,717	10,000	2,786	14,219
청년 월세 지원	64,802	-	64,802	60,232	-	-	4,569

- 국고보조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예산현액 547억 2,400만원을 재원으로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청년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나,
 - 정부가 예측한 인원(26,180명)보다 실제 선정인원(17,305명)이 미달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예산현액(545억 1,100만원)의 25.9%, 141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이후 2회의 변경내시를 통해 국고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23억원 축소되었음에도 관련 내용을 추경을 통해 반영하지 않아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분은 '재원없는 불용(23억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 매칭된 시비 또한 당초 대응 편성분의 79.1%, 118억 5,600만원 불용처리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회계연도중 국고보조금의 내시규모 변동에 따른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본예산에는 서울시 청년 25,000명을 지원하고자 64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지난 '23년 5월, 1차 모집시 선정된 21,757명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8개월분의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나, 2차 모집이 '23년 9월 실시되어 당초 계획의 절반인 4개월분의 임차료만 지원하게 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은 예산현액 639억 5,000만원의 7.1%, 45억 6,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당초 월세를 '23년 5월부터 8개월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차 대상자 선정 인원이 목표에 미달하여 일정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바, 동 사업의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1차 모집이 미달에 따른 2차 추가 모집 인원에 대한 지원금을 당초 계획(당초 계획은 4월)보다 늦은 9월부터 지급하여 발생한 불용액(45억 6,900만원)이라는 점에서

-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3〉 청년 월세 지원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 2 3 년 도 본 예 산 (A)	변경내역		예산현액 (B)	증감액 (B-A)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64,802	△50	50	64,802	-	4,569
사 무 관 리 비	80	-	-	80	-	4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 재 원)	64,000	△50 ^{주1)}	-	63,950	△50	4,565
공 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722	-	50 ^{주1)}	772	50	-

※ 주1)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15324 ('23. 8.16) “'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2차 추가모집 계획”

- 계획에 없던 추가모집을 하게 되어 서류 신청·접수·심사 대행비를 예산변경을 통해 확보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2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재원이 있는 사업중 10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53건으로 동 사업들의 불용규모는 2,090억 1,200만원임

- 직전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재원은 사업추진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여도 이용이나 전용,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능하여 결국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바, 향후에는 재원의 이월 여부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44A〉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보 급	36,475	282,047	22,938	8.1	39,661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 0 0 mm 이 상) 정 비	16,842	71,033	15,642	22.0	19,779
주 택 정 책 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3,324	54,724	14,219	25.9	10,000
여성가족정책실	서 울 공 공 (안 심) 키 즈 카 페 조 성	40,862	52,234	12,265	23.4	-
기 후 환 경 본 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2,048	31,245	9,799	31.3	7,104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17,356	20,107	9,376	46.6	2,791
서울아리수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710	54,668	9,182	16.7	2,226
경 제 정 책 실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193	106,134	8,398	7.9	304
재난안전관리실	노 후 포 장 도 로 정 비	3,870	100,319	7,460	7.4	5,629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템 공 급 체 계 구 축	1,710	25,115	6,821	27.1	5,515
경 제 정 책 실	서울형 뉴딜일자리	508	80,508	5,415	6.7	1,464
재 무 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4,990	4,990	4,990	100.0	-
재난안전관리실	구 천 면 길 도 로 확 장	4,889	4,889	4,834	98.8	-

〈표 3-44B〉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물 순환 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164	32,135	4,156	12.9	1,005
의회사무처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154	5,154	4,033	78.2	7
재난안전관리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771	10,846	3,819	35.2	3,250
재난안전관리실	현릉로 확장	4,913	8,513	3,691	43.3	2,408
재난안전관리실	탄전변동측도로 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1,800	3,914	3,457	88.3	187
주택정책실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	200	3,357	3,292	98.0	-
경제정책실	홍릉바이오 의료앵커 조성	24,062	26,061	3,179	13.2	3,595
도시교통실	공원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간데메공원)	3,126	3,126	3,126	100.0	-
서울아리수본부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465	27,808	3,029	10.8	25
평생교육국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3,680	10,004	2,978	29.7	2,938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3,125	15,107	2,516	16.6	4,686
문화본부	실감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	5,071	11,607	2,029	17.4	2,944
재난안전관리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8,752	10,272	1,971	19.1	-
균형발전본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70	4,105	1,899	46.2	515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후기전시설 개량	277	12,158	1,835	15.0	109
문화본부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3,049	24,523	1,816	7.4	17,788
푸른도시여가국	성산근린공원 조성	1,700	1,700	1,700	100.0	-
서울아리수본부	정주장 순환 정비	33	3,548	1,677	47.2	116
물 순환 안전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2,982	14,442	1,637	11.3	1,183
균형발전본부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368	6,547	1,589	24.2	18

〈표 3-44C〉 직전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3회계연도 불용액(1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2→'23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3→'24 이월액
기 후 환 경 본 부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지 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479	1,804	1,546	85.6	-
미 래 한 강 본 부	둔 치 및 화 장 실 청 소	3,841	12,708	1,515	11.9	2,616
푸른도시여가국	시 공 원 유 지 관 리 및 보 수 정 비	7,713	56,896	1,433	2.5	8,968
기 후 환 경 본 부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718	1,618	1,352	83.5	-
도 시 교 통 실	어 린 이 보 호 구 역 개 선 (전 환 사 업)	52	16,553	1,312	7.9	94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1,300	1,300	1,300	100.0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 행 · 운 영 사 업	1,297	7,659	1,298	16.9	-
균 형 발 전 본 부	세 종 로 공 원 환 경 개 선	2,290	2,290	1,296	56.6	-
서울아리수본부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2,182	14,550	1,202	8.2	5,379
푸른도시여가국	단 절 된 녹 지 축 연 결	2,424	6,360	1,189	18.6	3,114
주 택 정 책 실	기 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3,317	3,317	1,183	35.6	-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 환경 공 간 조 성	2,500	8,600	1,148	13.3	6,922
푸른도시여가국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2,067	10,744	1,115	10.3	427
도시기반시설본부	서 부 선 건 설 (민 자)	350	1,520	1,111	73.1	365
재난안전관리실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432	11,016	1,101	10.0	2,742
도 시 교 통 실	대 각 선 및 일 반 횡 단 보 도 확 충	376	3,765	1,062	28.2	394
서울아리수본부	소 블 록 배 수 관 세 척	247	5,814	1,024	17.6	-
경 제 정 책 실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95	14,611	1,020	6.9	1,050
물 순 환 안 전 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 지 보 수 및 개 선	2,030	13,703	1,014	7.4	13,165
도 시 교 통 실	공 영 주 차 장 관 리 위 탁	141	46,643	1,000	2.1	1,201

- 기후환경본부 소관 **전기차 보급**은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의 8.1%, 229억 3,800만원이 불용되고 396억 6,1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23회계연도 본예산에 1,138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12,05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3년 5월, '23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1,316억 8,200만원 증액된 2,455억 7,100만원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8,523대 증가한 20,576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 동 사업의 '22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364억 7,500만원은 '22회계연도 신청분(1,939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23년도 내 1,096대가 출고되었고, 신청취소 등으로 843대는 출고되지 못하여 직전회계연도 이월액(364억 7,500만원)중 10.1%, 37억 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24년도로 이월된 396억 6,100만원의 경우에도 '23회계연도 종료 직전 신청한 수요에 대한 것으로 차량을 계약한 후에도 출고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매년 상당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3-45〉 전기차 보급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산	'23년도 1 추 주 1)	전 년 도 이 월 주 2)	예산현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소 계	113,889	131,682	36,475	282,047	39,661	59,620	22,938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	-	-	91	-	-	10
사무관리비	135	-	-	135	-	-	1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08,270	131,542	36,028	275,841	39,661	59,614	22,680
자치단체자본보조	1,196	140	-	1,336	-	0.2	8
자산및물품취득비	4,197	-	447	4,644	-	6	236

주1)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증감액

주2) '22회계연도에서 '23회계연도로의 이월액(364억 7,5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액임

- 실제로 동 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23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의 56.6%, 1,598억 2,600만원만이 집행되고, 보조금반납금(596억 2,0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485억 7,200만원(439.6% 증가) 증가하였으며, 불용액(229억 3,8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25억 5,700만원(120.9% 증가) 증가하였고, 이월액(396억 6,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보다 31억 8,100만원(8.1% 증가) 증가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반납과 국비에 매칭된 시비가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현실성 있는 수요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3-46〉 최근 3년간 전기차 보급 결산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집 행 률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불 용 액
2023	282,047	159,826	56.6	39,661	59,620	22,938
2022	307,870	249,964	81.1	36,475	11,048	10,381
2021	355,543	277,587	78.0	53,200	24,047	707

- 재난안전관리실 소관 **구천면길 도로확장**은 예산현액 48억 8,900만원의 98.8%, 48억 3,4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사업대상지 내 건축물 철거를 위해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용역(5,400만원)의 준공시기가 당초 '23년 8월에서 '23년 12월로 연기됨에 따라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었던 보상 등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48억 3,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3-47〉 구천면길 도로확장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출 과 목	' 2 3 년 도 본 예 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시 설 비	-	4,889	4,889	54 ^{주1)}	4,834 ^{주2)}	98.8

※ 주1) 지출된 구조진단 용역비는 5,441만 7,000원임

주2) 보상비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불용사유는 지출잔액임

- 이월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예산현액에 대한 전용이나 변경,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 등이 불가하여 회계연도중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예산의 이월은 필수적인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집행시 이월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월된 재원이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분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표 3-48〉 구천면길 도로확장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4,889	4,834 (98.8)	-	-	-	-	4,834 (98.8)	-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 장애요인 발생 등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구조진단 용역의 준공기한이 두 차례 연기되고, 그로 인해 후속 절차가 순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불용사유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평생교육국 소관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100억 400만원)의 29.7%, 29억 7,800만원을 불용하고, 29.3%, 29억 3,8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예산현액(151억 700만원)의 16.6%, 25억 1,600만원을 불용하고, 31.0%, 46억 8,600만원은 '24년도로 이월하였음

〈표 3-49〉 서울런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24년도 이 월 액	불용액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6,324	3,680	10,004	4,087	2,938	2,978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1,981	3,125	15,107	7,904	4,686	2,516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36억 8,000만원중 72.8%, 26억 8,200만원은 불용처리된 바,
- '22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멘토를 1:1 매칭하여 학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서울런 가입자 수를 고려하여 멘토단 운영 예산을 이월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희망자에 한정하여 멘토단을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중 불용할 것이 확실시되어도 이용, 전용 및 감추경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월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동 사례로 인한 불용액(26억 8,200만원)을 지출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계획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불용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도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당초 총사업비를 일정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식에서 월별 콘텐츠 실 이용 인원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실제 지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출한 바,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용사유를 지출잔액이 아닌 계약심사 절감액 등 예산 절감한 경우에 해당되는 **예산절감액**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최초 시작된 '21년부터 현재까지 매 회계연도 이월 및 불용이 발생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행되는 학사일정 중 서비스업체가 바뀌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이용하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예산이 이월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월액 발생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은 예산현액 41억 500만원의 46.2%, 18억 9,900만원이 불용되고, 12.5%, 5억 1,500만원은 이월된 바,

- 동 사업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시설비** 예산현액 20억 6,6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 이월액(14억 2,6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하였으나, 소유주 동의를 득하지 못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시설비 예산현액중 16억 1,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과 관련된 입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회계연도중 소요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것이나,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이월액은 회계연도중 재활용이 불가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집행 장애요인이 다양한 변수로 인해 발생 될 수 있어 관련 예산의 이월은 필요 최소한도의 규모만으로 한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표 3-50〉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변경내역		예산현액	이월액	불용액
			감액	증액			
소 계	2,035	2,070	△92	92	4,105	515	1,899
사 무 관 리 비	1,385	622	△92 ^{주1)}	-	1,915	475	270
공 공 운 영 비	10	-	-	92 ^{주1)}	102	-	0.2
시 설 비	640	1,426	-	-	2,066	40	1,612
감 리 비	-	22	-	-	22	-	16

※ 주1) 서울특별시, 도심재창조과-2940 ('23. 3.28)

- 전용사유 : ① 영조물 손해배상 가입 보험료 납부

② 운영 용역사 선정전으로 공공요금 직접 납부 필요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서울시가 '23회계연도에 추진한 19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1〉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재 무 국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	4,990	4,990
도 시 교 통 실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간데메공원)	3,126	3,126
주 택 정 책 실	홍제3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2,802	2,802
평 생 교 육 국	학 교 용 지 매 입 비 부 담	1,987	1,987
푸른도시여가국	성 산 근 름 공 원 조 성	1,700	1,700
도시기반시설본부	위 레 신 사 선 건 설 (민 자)	1,300	1,300
주 택 정 책 실	강 서 구 공 항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1,117	1,117
주 택 정 책 실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	876	876
문 화 본 부	백제역사유적지구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원	600	600
물 순 환 안 전 국	종 로 청 소 년 센 터 저 류 조 설 치	500	500
복 지 정 책 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389	389
주 택 정 책 실	성 동 구 사 근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315	315
주 택 정 책 실	구 로 구 구 로 2 동 도 시 재 생 사 업 지 원	315	315
도 시 교 통 실	5 호 선 직 결 화 사 전 타 당 성 재 검 토 용 역	200	200
물 순 환 안 전 국	우수저류시설 운영 개선방안 수립 용역	198	198
주 택 정 책 실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1	141
경 제 정 책 실	서 울 국 제 경 제 자 문 단 (S I B A C) 운 영	110	110
기 획 조 정 실	공 공 토 지 자 원 D B 의 효 율 적 관 리 · 운 용	100	100
도 시 교 통 실	스 마 트 쉘 터 성 과 분 석	100	100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예산현액(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 재무국 소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은 예산현액 49억 9,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이나, 예산현액 전액은 지난 '22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액된 재원임

-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 당초 '23년도까지 구축·운영할 계획이었던 차세대 시스템중 서울시 통합사업이 반복적(4회)으로 유찰되는 등 시스템 개발 준공시기가 '24년도로 늦춰짐에 따라 '23회계연도로 이월된 예산을 '23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 동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3년 1월, 당초 개통할 예정인 차세대 시스템(2단계)의 준공 연기를 통보한 바 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차세대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3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 '23년 7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울시를 시스템에 통합하는 작업(3단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약정된 위탁사업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함에 서울시는 해당 위탁사업의 미납액에 대해 서울시 통합사업이 계약완료된 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납부할 예정으로 회신한 바, '23회계연도중 2단계 용역이 준공되지 않아 서울시가 요청한 3단계 용역은 공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의 위탁기관이 회계연도중 계획변경 및 준공연기를 반복하여 예산현액이 불용될 가능성을 예상하였을 것이나,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전액 이월예산으로 회계연도중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실시되어도 불용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른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전 절차가 준공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도 회계연도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재원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는 이월액인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재원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결산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 향후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부담금 형태의 사업은 일부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진행 추이를 고려하여 나머지 재원을 편성하는 합리적 선택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2〉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담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출 과 목	'23년도 본 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	4,990	4,900	-	4,900 ^{주1)}	100.0

※ 주1)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임

- 주택정책실 소관 ①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②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③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④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전액 불용된 사업으로 검토됨

〈표 3-53〉 도시재생사업 전액 불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23년도 본 예산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1,117	1,117	-	1,117
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315	-	315
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315	315	-	315
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141	141	-	141

- 서울시는 지난 '21년 6월, 기존 도시재생방향과 달리 개발과 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한 도시재생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바,

- ①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11억 1,700만원), ②성동구 사근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3억 1,500만원), ③구로구 구로2동 도시재생사업 지원(예산현액 3억 1,500만원)은 당초 강서구, 성동구, 구로구에서 수립한 도시재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심사 결과 재심사(2단계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④양천구 신월3동 스마트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의 경우, 지난 '20년 11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1년부터 '22년까지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이력이 있으나,

- 지난 '22년 10월,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된 이후, '23년 2월, 국토교통부가 사업규모 축소를 사유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내시 하였으나, '23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국비(1억 1,200만원)와 매칭된 시비(2,900만원)를 감액조정하지 않아 불용된 사례로 검토됨

- 동 사례의 경우, 전액 감액내시되어 교부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을 조정하지 않아 “재원없는 불용”을 발생시키고, 매칭된 시비마저 불용하게 되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정책실 소관 ①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예산현액 3억 8,900만원)의 경우, 당초 편성된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나, 추경을 통해 경정하지 않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 사업부서로서는 지난 '22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내시를 근거로 '23년도 예산안중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 '22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과목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고, '22년 12월 27일에도 동 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비 예산액의 규모를 변경하여 확정내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업부서가 지난 '23년 5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제출시 동 사업의 국비에 대하여 세입과목과 금액을 조정하여 편성의 오류를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이후 집행시기가 임박해서야 국비의 세입과목이 변경된 것을 인지하고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간주처리 하고, 매칭되는 시비는 기존사업에서 예산의 변경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이미 가내시를 근거로 국비(3억 8,900만원)와 매칭되는 시비(5억 2,700만원)를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지난 '23년 8월, 매칭 편성한 시비는 예산변경을 하였으나, 기 편성된 국비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시까지 감액조정 등 별도의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원 없는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 검토됨
- 또한, 사업부서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과목 편성오류를 경정하고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②**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간주처리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사업에서 예산의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으나,
- 예산총칙을 통해 정하고 있는 간주처리는 회계연도중 수시로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사례와 같이 사업부서의 회계오류를 회석하기 위해 오용하는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년 7월,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였음
- 금번 개정된 관련 기준은 '24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어 동 사인을 훈령 위반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예산의 변경제도에 대한 개정 취지는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여 예산을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례는 가내시 및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예산과목을 임의로 편성한 것을 추경 등을 통해 경정하지 못해 발생한 오류를 간주처리와 세부사업 신설하는 우회적 기법을 통해 편성오류를 희석하려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사업부서는 국비를 간주처리하고, 매칭되는 시비를 변경하면서까지 신설한 ②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의 예산 또한,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여 교부된 국비는 전액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업부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표 3-54〉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 2 3 년 도 예 산 액		변경내역 ^{주2)}		예산 현액	집행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간 처	주 리	감액	증액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 원 시 범 사 업 (보 건 복 지 부)	(x389) 917	-	(△x0) △527	-	(x389) 389	-	-	(x389) 389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 원 시 범 사 업	(x433) 433	(x433) 433 ^{주1)}	-	(x0) 527	(x433) 960	-	(x433) 433	(x-) 527

※ 주1)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8678 ('23. 7.25) “2023 회계연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 알림”

■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보건복지부)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 4억 3,300만원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주2)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13798 ('23. 8.2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변경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가내시하여 국고보조금에 세입처리하였으나, 이후 확정내시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정정 내시함에 따라 회계간 사업비 조정을 위한 시비예산 변경 필요

나.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한 것으로 191건, 4,429억 9.1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출됨

〈표 3-55〉 2023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191	442,991	△442,991
일반회계		127	377,161	△377,161
특별회계	주1)	64	65,829	△65,829

주1) 기타특별회계(64건, 658억 2,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체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 받는 부서로서도 사전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까지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6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고
	감	증	감	증	
계	191	191	△442,991	442,991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5	15	△112,166	112,166	<감액> ■ 여성가족정책실 내 조직변경 △112,166(15건) <증액> ■ 여성가족정책실 내 조직변경 112,166(15건)
기 획 조 정 실	1	2	△63,773	63,845	<감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63,773(1건) <증액> ■ 기획조정실 내 조직변경 63,773(1건) ■ 기획조정실←행정국 72(1건)
경 제 정 책 실	21	21	△32,162	32,162	<감액> ■ 경제정책실 내 조직변경 △32,162(21건) <증액> ■ 경제정책실 내 조직변경 32,162(21건)
기 후 환 경 본 부	27	27	△136,627	136,627	<감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36,627(27건) <증액> ■ 기후환경본부 내 조직변경 136,627(27건)
행 정 국	5	-	△439	-	<감액> ■ 행정국→기획조정실 △72(1건) ■ 행정국→디지털정책관 △367(4건)
디 지 털 정 책 관	-	4	-	367	<증액> ■ 디지털정책관←행정국 367(4건)

〈표 3-56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고
	감	증	감	증	
시 민 건 강 국	35	35	△50,837	50,837	<감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50,837(35건) <증액> ■ 시민건강국 내 조직변경 50,837(35건)
디 자 인 정 책 관	13	13	△4,014	4,014	<감액> ■ 디자인정책관 내 조직변경 △4,014(13건) <증액> ■ 디자인정책관 내 조직변경 4,014(13건)
재 난 안 전 관 리 실	11	11	△3,094	3,094	<감액> ■ 재난안전관리실 내 조직변경 △3,094(11건) <증액> ■ 재난안전관리실 내 조직변경 3,094(11건)
물 순 환 안 전 국	56	56	△37,463	37,463	<감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37,463(56건) <증액> ■ 물순환안전국 내 조직변경 37,463(56건)
소 방 재 난 본 부	7	-	△2,410	-	<감액> ■ 소방재난본부→비상기획관 △2,410(7건)
비 상 기 획 관	-	7	-	2,410	<증액> ■ 비상기획관←소방재난본부 2,410(7건)

다.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예산총칙을 통해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년도 서울시 예산서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1)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지방채상환(원리금 등), (3)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회계연도 이후 '23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 된 바 없음

라.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전용 건수는 165건으로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중 0.05%, 240억 3,600만원을 전용한 바, '22회계연도 대비 전용 건수는 33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27억 4,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 ①일반회계의 경우, 138건, 120억 6,700만원을 전용하여 '22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는 48건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45억 700만원 감소하였고, ②기타특별회계는 18건, 35억 3,1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 대비 △18건, △45억 9,900만원 감소하고, ③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9건, 84억 3,9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3건, 63억 6,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직전 회계연도보다 전용 건수가 증가한 것은 당초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여 위탁기관이 가입하던 공유재산 손해보험금(공제)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명의로 재가입함에 따라 55건, 14억 8,800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57〉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2021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65	24,036	132	26,784	168	26,701
일반회계	138	12,067	90	16,574	144	20,382
특별회계	27	11,970	42	10,209	24	6,318
기타특별회계	18	3,531	36	8,130	22	6,034
공기업특별회계 ^{주1)}	9	8,439	6	2,078	2	284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3-58〉 예산의 전용 규정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다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공식문서로 보고하였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용내역 2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출시 공문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바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관련 법에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 법과 관련 조례를 통해 분기별로 전용내역을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용내역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법규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26개 실·본부·국에서 165건을 전용한 것으로 복지정책실 31건, 41억 3,100만원을 전용하고, 시민건강국 16건, 7억 3,500만원, 문화본부 15건, 6억 6,500만원 등을 전용한 바,
 - **복지정책실**의 경우, 손해보험 관련 14건, 6,600만원을 전용한 것 이외에도 수요 과소편성을 사유로 16건, 31억 2,900만원을 전용하여, 향후 복지 수요 산출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의 경우에도 손해보험 관련 7건, 7,200만원을 전용한 것 이외에도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등을 사유로 8건, 6억 6,000만원을 전용하고, **문화본부**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관련 6건, 6,500만원을 비롯하여 관련 법령 시행 예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등을 사유로 9건, 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제출됨

〈표 3-59〉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 ^{주1)}		전 용 건 수	전 용 액	
				전체 전용액 대비
계		165	24,036	100.0
	상 수 도 사 업 본 부	7	8,067	33.5
	복 지 정 책 실	31	4,131	17.1
	노 동 공 정 상 생 정 책 관	8	1,572	6.5
	도 시 교 통 실	11	1,469	6.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8	1,014	4.2
	평 생 교 육 국	3	984	4.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2	784	3.2
	시 민 건 강 국	16	735	3.0
	문 화 본 부	15	665	2.7
	디 지 털 정 책 관	2	620	2.5
	관 광 체 육 국	6	597	2.4
	기 후 환 경 본 부	6	583	2.4
	경 제 정 책 실	10	494	2.0
	미 래 한 강 본 부	2	472	1.9
	물 순 환 안 전 국	5	374	1.5
	미 래 청 년 기 획 단	2	329	1.3
	주 택 정 책 실	5	326	1.3
	소 방 재 난 본 부	2	298	1.2
	인 재 개 발 원	2	168	0.7
	행 정 국	2	97	0.4
	디 자 인 정 책 관	2	95	0.4
	기 획 조 정 실	2	59	0.2
	서 울 역 사 박 물 관	3	57	0.2
	푸 른 도 시 여 가 국	1	22	0.1
	의 회 사 무 처	1	10	0.1
	균 형 발 전 본 부	1	4	0.1

주1) 전용액 규모순

1.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2. “구성비”는 전체 실·본부·국(상수도사업본부 포함)의 전용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관 실·본부·국별 전용 사례를 검토하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은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고자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2,0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3-60〉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사업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2	△20	-	'23. 8.28
“	사 무 관 리 비	-	-	20	

- 동 사업은 지역고용 노동현안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가급적 지자체가 직접 발주 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보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로 변경하기 위해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해당 지침은 이미 지난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으로 지자체인 서울시가 이미 직접 발주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예산편성 이후 전용을 통해 지침 위반요인을 해소한 사례로 사료되는 바,
 -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전용제도의 취지에는 부합되지 않는 전용 사례로 사료되어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에서 9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서울시 공공배달앱을 통해 상품권을 결제한 시민에게 제공되는페이백 상품권 발행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 직접 수행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전용한 것인 바,

〈표 3-61〉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송 인 용 일
소 상 공 인 간 편 결 제 활 성 화 지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00	△900	-	'23. 3. 3
서울 광역 사랑 상품권 발 행 · 운 영 사 업	사 무 관 리 비	5,462	-	900	

-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동 전용 사례처럼 보조사업에서 직접 사업으로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경을 통해 세부사업간 소요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광체육국 소관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품 개발 운영**은 국내·외 관광업계 간 온라인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바운드 관광업계 판로 지원을 위한 B2B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가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소요예산중 민간경상사업보조(2억 3,100만원) 전액을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으로 전용한 것으로

〈표 3-62〉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송 인 용 일
지속가능한 마을관광 상 품 개 발 운 영	민간경상사업보조	231	△231	-	'23. 7.27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공 기 관 등 에 대 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550	-	231	

- 동 전용 사례는 사업중단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감소시키고자 해당 예산과목에 편성된 소요예산 전액을 전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경정요청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본부 소관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세부사업 내 목그룹 간 3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24년 5월 시행되는 관련 법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자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3-63〉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문 화 재 조 사 및 문 화 재 위 원 회 운 영	사 무 관 리 비	496	△300	-	'23. 9. 7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300	

- 미래한강본부 소관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공공요금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억 5,000만원을 전용한 바,

〈표 3-64〉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일
한 강 관 공 선 등 운 영 및 관 리	자산및물품취득비	600	△450	-	'23.11.24
미 래 한 강 본 부 청 사 시 설 유 지 관 리	공 공 운 영 비	1,558	-	450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경우, 재정사업에 민간공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4억 5,000만원을 다른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간 전용한 것으로
-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의 경우, '23년 3월, 본예산으로 편성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억 5,000만원중 △67.6%, △12억 5,000만원을 이미 변경(감액)하여 ①서울항 조성 사업중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6억 5,000만원, ②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중 수상택시 승강장 등 정비 3억원, ③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유지관리중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유지보수 3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됨

○ 디지털정책관 소관 **재난재해 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은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6억원을 전용한 것으로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중요시스템(대시민 서비스)에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고자 중요시스템 클라우드 전환비 6억원을 전액 전용한 것이나, 본예산 편성 시 부적절하게 편성된 예산과목에 대해 전용을 통하여 자체 치유한 사례일 수 있어 향후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표 3-65〉 재난재해 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예 산 액	감	증	전 승 인 용 일
재난재해대비 SDDC기반 클라우드 환경 구축	공 공 운 영 비	600	△600	-	'23. 7.11
〃	자산및물품취득비	1,740	-	600	

마. 명시이월 관련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관련 법령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 중 1.6%, 8,299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8,299억 7,500만원) 중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도 포함된 것임

〈표 3-66〉 202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액	명 시 이 월 률
합 계		51,490,048	829,975 ^{주1)}	1.6
	일 반 회 계	36,507,392	42,345	0.1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754,727	5.8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32,902 ^{주2)}	1.6

※ 주1) '23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과 관련 기준에 따라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는 달리 이월의 종류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는 바,

- 이 중 건설개량이월은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활용되는 명시이월과 비교하면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한다는 점과, 다음연도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연도로 다시 사고이월(재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근거, 이월대상, 이월에 대한 승인권자 등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상호 구별이 필요한 제도임
-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시 결산서에 건설개량이월과 명시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기준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서울수도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수차례 기준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나,
- 지난 '24년 1월, 개정통보된 관련 기준에서도 여전히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액에 통합하여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동 사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체가 명확히 구별되는 이월제도가 결산서에서도 구분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기준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되, 행정안전부가 동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외에 다양한 건의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90억 5,300만원)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238억 4,800만원)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은 7,970억 7,300만원으로,
- 우리 시의회는 '24년도 예산심사시 서울시가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하고 '23회계연도 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84개 세부사업, 115개 통계목에 대해 8,188억 1,100만원의 명시이월을 승인('23.12)하였으나,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동일한 세부사업(84개)과 통계목(115개)에서 7,970억 7,300만원만 실제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실제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이 의회의 승인액(8,188억 1,100만원)보다 △2.6%, △217억 3,800만원 감소된 것은 예산안 제출일('23.11. 1)이나 의결일('23.12.15)에는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경비가 회계연도 종료시점('23.12.31)까지 일부 집행된 결과로 사료됨

〈표 3-67〉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관련 의회 승인현황 및 실제 이월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의회 승인현황 (2024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결결과)			실제 이월현황 (결산결과)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 승인액	세부사업 수	통계목 수	명시이월액
84	115	818,811	84	115	797,073

-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을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산현액(49조 4,873억 3,6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51조 5,667억 5,400만원)보다 △2조 794억 1,7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은 오히려 직전회계연도(3,356억 7,700만원)보다 4,613억 9,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직전회계연도(363억 5,400만원)보다 5,543억 2,300만원 증가된 명시이월(5,906억 7,800만원)이 발생한 결과 서울시의 전체 명시이월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 중 ①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② **청년 매입임대 사업**, ③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④ **공공원룸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포함한 4개의 국고보조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서울시 전체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의 68.5%에 해당되는 5,465억 6,4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 명시이월은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과 비교하면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해 예산에 대한 감시권한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결국 이월예산의 한 종류로서 ①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며, ② 관련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예산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감추경 또한 불가능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 4개의 국고보조사업을 주관하는 사업부서(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는 중앙부처(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집행부진요인을 최소화하고,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이월보다는 감추경을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68〉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23~'21)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주1)}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23	합계 ①+②+③		51,490,048	137	829,975 ^{주2)}	1.6
	명시이월	소계 ①+②	49,487,336	115	797,073 ^{주3)}	1.6
		일반회계 ①	36,507,392	48	42,345	0.1
		기타특별회계 ②	12,979,944	67	754,727	5.8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002,711	22	32,902	1.6
2022	합계 ①+②+③		53,468,799	178	348,007 ^{주2)}	0.6
	명시이월	소계 ①+②	51,566,754	164	335,677 ^{주3)}	0.9
		일반회계 ①	38,319,642	75	81,713	0.2
		기타특별회계 ②	13,247,111	89	253,964	1.9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902,045	14	12,329	0.6
2021	합계 ①+②+③		47,759,128	208	471,129 ^{주2)}	1.0
	명시이월	소계 ①+②	45,928,700	195	445,055 ^{주3)}	0.9
		일반회계 ①	33,834,846	85	85,451	0.3
		기타특별회계 ②	12,093,854	110	359,603	3.0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830,427	13	26,074	1.4

※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표 3-69〉 직전회계연도 대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증감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건, %, %p)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건수 ^{주1)}	이월액 (이월률)	건수	이월액 (이월률)
합 계	51,490,048	137	829,975 ^{주2)} (1.6)	53,468,799	178	348,007 ^{주2)} (0.6)	△41	481,968 (0.9)
① + ②								
명 시 이 월 (계) ①	49,487,336	115	797,073 ^{주3)} (1.6)	51,566,754	164	335,677 ^{주3)} (0.6)	△49	461,395 (0.9)
일 반 회 계	36,507,392	48	42,345 (0.1)	38,319,642	75	81,713 (0.2)	△27	△39,367 (0.0)
기 타 특 별 회 계	12,979,944	67	754,727 (5.8)	13,247,111	89	253,964 (1.9)	△22	500,762 (3.8)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 별 회 계	2,057,950	6	37,369 (1.8)	2,201,609	10	23,492 (1.0)	△4	13,876 (0.7)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230,608	9	19,462 (0.8)	2,292,766	19	17,590 (0.7)	△10	1,871 (0.1)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332,691	2	3,480 (1.0)	350,236	3	4,774 (1.3)	△1	△1,294 (△0.3)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41,073	11	590,678 (19.4)	3,002,632	6	36,354 (1.2)	5	554,323 (18.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119,576	32	83,759 (3.9)	2,425,711	46	169,145 (6.9)	△14	△85,385 (△3.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11,850	7	19,978 (9.4)	208,872	5	2,606 (1.2)	2	17,371 (8.1)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36,771	-	- (0.0)	29,214	-	- (0.0)	-	- (0.0)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1,928,934	-	- (0.0)	1,752,290	-	- (0.0)	-	- (0.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7,339	-	- (0.0)	33,731	-	- (0.0)	-	- (0.0)
소 방 특 별 회 계	983,148	-	- (0.0)	950,036	-	- (0.0)	-	- (0.0)
건 설 개 량 이 월 (계) ②	2,002,711	22	32,902 (1.6)	1,902,045	14	12,329 (0.6)	8	20,572 (0.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002,711	22	32,902 (1.6)	1,902,045	14	12,329 (0.6)	8	20,572 (0.9)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867,963	8	4,964 (0.5)	-	4,089 (0.3)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07,442	14	23,848 (2.3)	1,034,081	6	7,365 (0.7)	8	16,483 (1.6)

※ 주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통계목 기준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 기준

주2)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3)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 아울러 관련 기준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는 이월액 확정기한('24. 1.10)이 약 2개월 경과한 시점인 지난 3월 4일, 명시이월액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로 확인됨

〈표 3-70〉 당초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 (가)	변경된 명시이월액 (‘23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물 순 환 안 전 국	강 남 역 일 대 빗 물 배 수 시 설 설 치	13,740 ^{주1)}	10,000	△3,740 ^{주2)}

※ 주1)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서 국비 34억 3,500만원과 시비 103억 5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기 확정된 명시이월액(137억 4,000만원) 중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9억 3,500만원)와 이에 대한 매칭시비(28억 500만원)를 감액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전액(137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확정('24. 1)한 것이나,
- 사업부서는 기 확정된 이월액(137억 4,000만원) 중 서울시로 교부되지 않은 국비와 이에 대한 매칭시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여 지난 2월 29일과 3월 4일, 명시이월액을 100억원으로 정정요청 하고, 3월 4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정정한 것인 바,
-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확정된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는 없음에도,

- 동 사업의 명시이월액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확정기한 경과 이후에 임의로 변경한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여 이월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례일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 필요한 경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 중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 '23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2조 27억 1,100만원) 중 1.6%에 해당하는 329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3억 2,900만원)보다 166.8%, 205억 7,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표 3-71〉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발생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2023 회계연도	계	2,002,711	22	32,902	1.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95,268	8	9,053	0.9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7,442	14	23,848	2.3
2022 회계연도	계	1,902,045	14	12,329	0.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7,963	8	4,964	0.5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081	6	7,365	0.7
2021 회계연도	계	1,830,427	13	26,074	1.4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15,087	10	22,218	2.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15,340	3	3,856	0.3

- 회계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는 직전회계연도(8건)와 동일하나, 건설개량이월액은 직전회계연

도(49억 6,400만원)보다 82.3%, 40억 8,900만원 증가되었으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가 직전회계연도(6건)보다 133.3%, 8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개량이월액도 직전회계연도(73억 6,500만원)보다 223.8%, 164억 8,3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23회계연도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정과 지역경기 활력제고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을 통보하는 등 재정의 신속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수차례 시행하였으며, 서울시의 예산부서(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도 경기침체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사업공정과 집행관리에 유의하여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지출부서(재무국 재무과)는 물론 각 실·본부·국에도 통보하였으나,
 - 서울아리수본부가 운용하는 수도사업특별회계와 물순환안전국이 운용하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예산 집행시기를 유예하는 건설개량이월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오히려 증가된 바,
 -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용기조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일 수 있어 사업추진일정을 정확히 반영하여 한정된 세출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도록 개선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사업별로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는 예산현액 98억 5,100만원 중 52억 900만원(예산현액 대비 52.8%)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5억 2,400만원(예산현액 대비 5.3%)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증설)**의 경우, 주민협의회로부터 반대민원(4회)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지연되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0억 8,100만원 전액이 건설개

량이월 되고,

-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중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시설비 1억 7,800만원과 감리비 6,900만원은 사고이월 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한 시설비 1억 2,700만원은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
- '23년 10월,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소요예산(8억 5,000만원)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③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사업방침을 수립하고, '23년 12월말,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비(2억 7,600만원) 전액이 회계연도 중 집행되지 못하고 사고이월된 것임

〈표 3-72〉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3년도 본예산	전년도 건설개량이월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계		5,931	3,919	9,851	4,631	4,107	5,733	5,209	524	10
시 설 비	소 계	550 ^{주1)}	-	770 ^{주1)}	642	187	582	127	454	-
	난 지	550	-	493 ^{주2)}	365	187	306	127	178	-
	중 량	-	-	276 ^{주2)}	276	-	276	-	276	-
감 리 비	난 지	300 ^{주1)}	-	80 ^{주1)}	69	-	69	-	69	10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탄 천	5,081	3,919	9,001	3,919	3,919	5,081	5,081	-	-

※ 주1) '23년 10월,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감리비(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동일사업 내 시설비로 조정('23.10.19)한 것임

주2) '23년도 본예산에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시설비(5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5,600만원)과 예산 조정('23.10)을 통해 확보한 시설비(2억 2,000만원)를 활용하여 중량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3회계연도에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와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던 것으로서
 - 사업부서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신규추진이 필요한 별도의 사업내역(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증설)에 집행잔액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운용이라고 판단하였을 수도 있으나, 다음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동 사업은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과거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있고,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거나 반대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이월된 사례가 있으나, '23회계연도에도 유사한 이월사례가 발생한 바,
 -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일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밀하게 산정한 후 회계연도 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당초 전망한 것보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동 사업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시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내용 및 취지, 지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시의회는 예산심사 시 동 사업의 사업내역 각각에 대해 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에 대한 승인규모를 결정한 바,

-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사업부서는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0억원과 ②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8억 5,000만원(시설비 5억 5,000만원, 감리비 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이나,
- 우리 시의회는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①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100억원) 중 △49억 1,9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음
-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해 ㉠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의 낙찰차액 등을 건설개량이월 하여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에 활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사 취지를 등한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된 사례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 ㉡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를 위해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과 이월 예산을 서남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에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이월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결과 폐지·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며 서울시가 운용하는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

방의회의 예산 심사내용과 취지를 존중하고, 세출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동 사업은 집행이 부진한 사업내역과 새로이 추진되어야 할 사업내역 등에 대해 추경으로 시의회에 증·감조정을 요청하기보다는, 사업내역 간 일종의 ‘예산 돌려쓰기’를 통해 조정(변경) 등으로 예산을 융통하고 있어 당초의 의결취지대로 예산이 사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추가 확보 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개량이월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사안으로 사료됨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건설개량이월은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서 최소화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17회계연도까지는 기타특별회계로 운용하다가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속한 사업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운용 첫 해인 ’18회계연도부터 지난 ’23회계연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건설개량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도 사업추진기간을 2년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운용기법으로 건설개량이월이 남용되는 것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73〉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결산결과(회계연도별, 2023~2018^{주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불용액
2023	9,851	4,107	5,733	5,209	524	10
2022	13,307	8,734	3,919 ^{주2)}	3,919	-	652
2021	24,548	20,601	1,727 ^{주3)}	169	1,558	2,218
2020	20,535	2,447	18,048 ^{주4)}	8,995	9,052 ^{주7)}	39
2019	18,181	12,545	5,535 ^{주5)}	5,326	209	100
2018	44,792	33,593	11,181 ^{주6)}	3,002	8,179	17

※ 주1) '17회계연도까지 기타특별회계 중 하나로 운용되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회계연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고 그 명칭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변경되었음

주2) '22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탄천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법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2회 유찰, 지역주민에 의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39억 1,900만원 건설개량이월

주3) '21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 관련 시운전 등 일부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1억 6,9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가 '22년 3월말 준공예정임에 따라 물품 및 공사 잔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15억 5,800만원 사고이월

주4) '20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공사 착공시기도 지체되었으며,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의 경우 주민협의회 협의가 지연되어 회계연도 중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못해 89억 9,5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서남물재생센터 관련 관급자재 납품시기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출범('21. 1)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90억 5,200만원 사고이월

주5) '19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설계용역 지연으로 서남물재생센터 2단계 건조시설 설치공사의 착공도 순연되어 53억 2,600만원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설계경제성심사, 건설기술심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공기가 부족하여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2억 900만원 사고이월

주6) '18회계연도 결산 이월사유

- 건설개량이월 : '19년도 본예산 심사시 의회가 삭감한 “난지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25억원)를 보전하기 위해 '18회계연도의 낙찰차액 등 30억 2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
- 사고이월 : 가동설비 기간을 조정하여 착공이 지연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81억 7,900만원 사고이월

주7) '19회계연도에 건설개량이월된 민간대행사업비(53억 2,600만원)를 '20회계연도에 집행한 결과 다음연도로 다시 사고이월(재이월)된 30억 4,800만원이 포함된 것임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은 예산현액 44억 3,500만원 중 88.8%, 39억 4,0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된 것으로,

-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소화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소화조 준설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나, 소화조 준설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23년 10월말 준공됨에 따라 회계연도 중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를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표 3-74〉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세목별)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4,435 ^{주1)}	441 ^{주2)}	441 ^{주2)}	3,940 (건설개량이월)	53
시 설 비	4,135	441	441	3,640 (건설개량이월)	53
감 리 비	300	-	-	300 (건설개량이월)	-

※ 주1) '23년도 본예산에 ㉔ 공사비(36억 4,000만원), 소화조 준설비(2억 5,000만원), 시스템 비계설치비(2억 1,000만원), 정밀안전진단비(3,5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41억 3,500만원과 ㉕ 감리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임

주2)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소요예산 중 소화조 준설비, 시스템 비계설치비, 정밀안전진단비에 대해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이 이루어진 것임(공사비는 해당 없음)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① '23년 1월부터 4월까지 소화조 준설용역을 실시하고, ② 4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며, ③ '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된 바,

- '23년 4월,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3년 12월 2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23. 4.21)을 고려하면, 사업부서는 당초 계획대로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23년 5월, 제1회 추정안

이 의회에 제출('23. 5.30)되기 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이미 지난 '21회계연도에도 설계지연으로 인해 설계비(2억 500만원) 중 8,2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설계지연으로 공사 발주시기도 지연되어 공사비 32억 7,5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 되었으며,
- '22회계연도에는 건설기술심의를 이행('21.12)한 결과 공사시행 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설계용역을 준공('22. 4)한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다시 투자심사를 이행('22. 8)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32억 7,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는 바,
- '21회계연도부터 편성되어 온 공사비를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과 불용 처리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23회계연도 중에는 선행공정(준설, 안전진단 등)의 추진상황에 따라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의 집행가능성에 대해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필요시에는 감추경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75〉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사업 결산결과(회계연도별, 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2023	4,435	441	3,940	3,940	-	53
2022	3,357	78	-	-	-	3,278 ^{주1)}
2021	3,480	123	3,357	3,275 ^{주1)}	82 ^{주3)}	-

※ 주1)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32억 7,5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공사비(32억 7,5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3) 설계비(2억 500만원) 중 8,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지난 '21회계연도와 '22회계연도에 이어 '23회계연도에도 감추경을 추진하지 않고,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출원인행위조차 하지 못한 채 공사비(36억 4,000만원)와 감리비(3억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로 처리하고 있는 바,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사례로 사료되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8억 6,400만원 중 5,700만원(예산현액 대비 2.0%)이 사고이월되고, 21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76.7%)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

- 당초 '23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6억 6,600만원)와 공사비(41억 6,000만원)를 포함한 48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2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설계지연을 사유로 회계연도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공사비 △19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이나,

- '23년 11월, 설계용역의 준공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4년 6월 30일로 연기함에 따라 설계용역비(6억 6,600만원) 중 5,7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선행공정인 설계용역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도 지연되어 공사비 21억 9,800만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표 3-76〉 가락-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건설개량 이월률		사고 이월률
계		2,864 ^{주1)}	2,256	78.7	2,198	76.7	57	2.0
시설비	설계용역비	666	57	8.6	-	-	57	8.6
	공사비	2,198 ^{주1)}	2,198	100.0	2,198	100.0	-	-

※ 주1) 제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기 편성된 공사비(41억 6,000만원) 중 △19억 6,100만원을 감액한 것임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23년 1월, 당초 체결한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기한('23.12.31)이 회계연도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준공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더라도 후속공정인 공사의 추진기간을 '23회계연도에 확보하기는 불가능했던 사안으로,
 - 지방의회는 추경안 심사시 제출된 안건의 범위 내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집행기관이 일부 감액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추가로 감액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에서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 공사착공이 불가능하다면 '23년 5월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통해 공사비(41억 6,000만원)에 대해 감추경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공사비(41억 6,000만원) 중 일부(△19억 6,100만원)에 대해서만 감추경을 요청한 결과 감액되지 못한 공사비(21억 9,800만원)는 단 1원도 지출되지 못하고 전액 건설개량이월된 것으로서 사업부서가 감추경 요청규모를 소극적으로 산정한 결과는 아닌지 재고(再考)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은 소요예산을 자치구에 재배정(송과구)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해당 자치구는 당초 '23년 1월, 설계용역을 '23년 12월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서울시의 사업부서(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는 '23년 5월, 추경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 ① 당초부터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23년 12월로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자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지연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기재하고, ② 실시설계가 준공되면 회계연도 중 일부 공사라도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한 사실이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77〉 사업추진일정 관련 기재내용 비교

당초계약에 따른 실제 설계용역 기간 ^{주1)} (’23. 1. 1. 계약체결)	제1회 추경안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23. 5.30. 의회제출)
○ 착수일자 : ’23. 1. 1 ○ 완수일자(준공기한) : ’23.12.31	○ 추경사유 -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 후 하반기 공사착공 코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 공사비 감추경

※ 주1) ’23년 11월 27일 체결한 변경계약을 통해 준공기한(’23.12.31)이 ’24년 6월 30일로 연기됨

- 서울아리수본부 급수부 소관 **미아 배수지 건설**은 ’23년도 본예산에 토지보상비(12억 1,100만원)를 포함한 12억 8,6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예산현액(12억 8,600만원) 중 94.1%, 12억 1,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북한산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배수지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20년 6월, 서울시가 국립공원 해제안건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부처 간 협의지연으로 인해 ’23년 5월에서야 환경부가 국립공원 해제를 고시한 것으로,
 - 국립공원 해제(’23. 5. 1)가 지연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23. 7), 실시계획 작성(’23. 9)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회계연도 중 토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절대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기 편성된 토지보상비(12억 1,100만원)를 전액 건설개량이월 처리한 것임

〈표 3-78〉 사전절차 이행 후의 토지보상 추진일정(미아 배수지 건설)

구분		법정기한	일정
보상계획 수립		-	'23.11.16
보상계획 공고·통지·열람		14일 이상 열람	'23.12. 7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체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	'23.12.22 (토지소유자 추천시 일정 다소 연기)
	감정평가업체를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30일 이상 협의	'24. 1.24 (협이가 성립될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7일 내 협이되도록 독촉)
협의 불성립시	손실보상 협의 경위서 작성	-	'24. 1.3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60일 이내	'24. 2. 1 (7일 내 협의되지 않을 경우 즉시 신청)
	재결신청 공고·열람	14일 이상	'24. 2.21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토지수용	-	-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	-	-

- 동 사례의 경우, 동일한 사유(국립공원 해제절차 지연)로 이미 지난 '21회계연도에도 '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으며, '22회계연도에는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 바,

〈표 3-79〉 미아 배수지 건설 결산결과(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2023	1,286	69	1,211	1,211 ^{주1)}	-	5
2022	1,570	324	-	-	-	1,246 ^{주2)}
2021	1,998	318	1,570	1,246 ^{주3)}	324 ^{주4)}	109

※ 주1) 토지보상비 12억 1,1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2) 직전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토지보상비(12억 4,6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주3) 토지보상비 12억 4,6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된 것임

주4) 설계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3억 2,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보상사업의 특성상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서울시의 보상의지를 신용하도록 하려면 토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을 필요성이 있음
- 다만, 앞선 2개 회계연도에 관련 절차(국립공원 해제)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협의’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토지보상비를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 또는 불용처리 하였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일정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비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0〉 건설개량이월이 발생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물 재 생 센 터 슬 러 지 자 체 처 리 시 설 설 치	9,851	4,631	4,107	5,209	52.8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00mm이상) 정비	71,033	47,878	35,611	3,976	5.5
물순환안전국	물 재 생 센 터 소 화 조 효 율 개 선 실 증 사 업	4,435	441	441	3,940	88.8
물순환안전국	중 랑 물 재 생 센 터 시설현대화(2-1단계)	3,855	1,154	54	2,700	70.0
물순환안전국	도 림 2 - 6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982	482	433	2,500	83.8
물순환안전국	구 로 1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3,622	1,115	1,074	2,500	69.0
물순환안전국	시 흥 고 지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971	480	410	2,490	83.8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템 공 급 체 계 구 축	25,115	15,910	12,779	2,214	8.8
물순환안전국	가 락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2,864	623	565	2,198	76.7
서울아리수본부	미 아 배 수 지 건 설	1,286	69	69	1,211	94.1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6,463	4,988	4,970	1,160	17.9
서울아리수본부	배급수관 신설 및 연결	3,316	1,511	1,468	990	29.8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분 뇨 처 리 시 설 지 하 화	1,653	814	686	766	46.3
서울아리수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0,107	10,253	7,939	477	2.3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시 설 복 개 공 원 화	4,300	4,016	1,918	283	6.5
서울아리수본부	아리수올림터·배수지 노 후 기 전 시 설 개 량	12,158	10,213	10,213	109	0.8
물순환안전국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3,870	2,956	2,956	100	2.5
서울아리수본부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668	45,210	43,058	74	0.1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만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됨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건설개량이월이 없는 대신 명시이월이 발생됨)

바. 사고이월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부대경비 등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51조 4,900억 4,800만원) 대비 1.6%에 해당하는 8,605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660억 5,800만원)보다 12.3%, 945억 2,200만원 증가된 바,

〈표 3-81〉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사 고 이 월		
			건 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 0 2 3 회 계 연 도	계	51,490,048	706	860,581	1.6
	일반회계	36,507,392	306	213,859	0.5
	특별회계 ^{주1)}	14,982,655	400	646,721	4.3
2 0 2 2 회 계 연 도	계	53,468,799	708	766,058	1.4
	일반회계	38,319,642	304	193,448	0.5
	특별회계 ^{주1)}	15,149,156	404	572,610	3.7
2 0 2 1 회 계 연 도	계	47,759,128	709	690,473	1.4
	일반회계	33,834,846	296	183,674	0.5
	특별회계 ^{주1)}	13,924,281	413	506,799	3.6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것임

-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36조 5,073억 9,200만원) 대비 0.5%에 해당하는 2,138억 5,9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1,934억 4,800만원)보다 10.5%, 204억 1,000만원 증가된 것이며,
-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14조 9,826억 5,500만원) 대비 4.3%에 해당하는 6,467억 2,100만원으로서 직전회계연도

(5,726억 1,000만원)보다 12.9%, 741억 1,1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사고이월액 발생규모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액(7,970억 7,3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까지 포함한 서울시 전체 이월액의 발생규모(1조 6,905억 5,600만원)도 직전회계연도(1조 1,140억 6,600만원)보다 51.7%, 5,764억 9,000만원 증가된 바,

〈표 3-82〉 예산이월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명시이월액 (다)		건설개량 이월액 (라)		사고이월액 (마)	
		이월률 (나)/(가)		이월률 (다)/(가)		이월률 (라)/(가)		이월률 (마)/(가)	
2023	51,490,048	1,690,556	3.2	797,073 ^{주1)}	1.5	32,902	0.0	860,581	1.6
2022	53,468,799	1,114,066	2.0	335,677 ^{주2)}	0.6	12,329	0.0	766,058	1.4
2021	47,759,128	1,161,603	2.4	445,055 ^{주3)}	0.9	26,074	0.0	690,473	1.4

※ 주1) '23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8,299억 7,5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329억 2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2) '22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3,480억 7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3) '21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4,711억 2,9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260억 7,400만원)을 제외한 것임

-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사업중단으로 인해 매물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 이월예산은 ①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고, ②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감추경을 추진할 수 없으며, ③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이 되는 순세계 잉여금의 재원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승인(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나, '23회계연도에는 전체 이월액은 물론 사고이월액 발생규모까지도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된 바,
- 시세 부족징수 등으로 인해 이전보다 서울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재원의 한정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조직별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서울시의 전체 실·본부·국(40개) 중 사고이월액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3개 실·본부·국인 푸른도시여가국(1,632억 8,700만원), 물순환안전국(1,348억 9,200만원), 재난안전관리실(1,122억 3,500만원)에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의 47.6%에 해당하는 4,104억 1,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푸른도시여가국의 경우, '23회계연도에 3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19.5%에 해당하는 63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69건, 1,632억 8,7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9%)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예산현액 145억 2,900만원의 33.2%, 48억 2,800만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예산현액 157억 2,500만원의 30.1%, 47억 3,8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의 41.1%, 692억 7,100만원),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예산현액 389억 8,800만원의 48.6%, 189억 6,3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물순환안전국의 경우, '23회계연도에 47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24.5%에 해당하는 115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141건, 1,348억 9,2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5.6%)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홍제천 역사·문화 명소 조성**(예산현액 33억 8,600만원의 81.4%, 27억 5,700만원),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예산현액 45억 7,000만원의 46.1%, 21억 1,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예산현액 103억 8,400만원의 62.2%, 64억 6,400만원),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예산현액 60억 8,500만원의 31.4%, 19억 1,7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한강수계기금)**(예산현액 5억 8,900만원의 21.7%, 1억 2,800만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예산현액 1억 5,900만원의 18.0%, 2,800만원)을 포함한 2개 세부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예산현액 326억 4,300만원의 32.8%, 107억 800만원), **면목 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예산현액 181억 3,200만원의 51.2%, 93억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재난안전관리실의 경우, '23회계연도에 3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22.3%에 해당하는 73개 세부사업에서 통계목 기준 94건, 1,122억 3,5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0%)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일반회계에서는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예산현액 39억원의 19.8%, 7억 7,300만원),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예산현액

11억 4,700만원의 48.8%, 5억 6,0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교통개선분담금)(예산현액 전액인 30억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예산현액 98억 2,000만원의 21.3%, 21억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신림~봉천터널 건설(예산현액 342억 8,900만원의 44.1%, 151억 2,300만원),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예산현액 436억 7,400만원의 31.0%, 135억 4,1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된 것임
- 그 밖에 미래한강본부의 경우에는 '23회계연도에 8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 중 32.9%에 해당하는 27개 세부사업에서 총 248억 1,100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바,
- 단순 비율상으로는 미래한강본부가 추진한 3개 사업 중 1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직(미래한강본부)은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83〉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건수(통계목 기준) 및 사고이월사유^{주1)}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사유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합의 자연	사전절차 자연	유관사업 자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재 구매자연	용역 준공한 미도래	기타
합 계	706	860,581	100.0	75,800 (8.8)	122,142 (14.1)	146,464 (17.0)	30,055 (3.4)	81,491 (9.4)	18,760 (2.1)	279,654 (32.4)	106,211 (12.3)
푸른도시여가국	69	163,287	18.9	3,894	88,234	48,543	1,690	9,577	773	9,148	1,425
물순환안전국	141	134,892	15.6	4,409	-	24,078	4,855	42,128	11,295	33,425	14,698
재난안전관리실	94	112,235	13.0	33,909	31,321	19,622	2,997	6,135	4,513	13,330	404
도시·건축·시설본부	10	88,861	10.3	-	1,963	-	8,938	-	-	77,959	-
도시교통실	44	61,149	7.1	3,491	-	2,528	1,459	-	-	20,667	33,003
기후환경본부	21	57,490	6.6	-	-	13,267	-	-	-	2,263	41,959
경제정책실	26	44,042	5.1	-	-	-	2,579	-	-	41,462	-
문화본부	50	43,102	5.0	4,528	622	127	-	473	9	37,048	293
서울아리수본부	24	41,378	4.8	13,273	-	10,314	6,534	8,797	767	512	1,179
미래한강본부	33	24,811	2.8	8,184	-	1,520	-	3,719	341	10,778	266
균형발전본부	31	21,937	2.5	-	-	15,986	124	-	-	5,807	19
평생교육국	10	15,537	1.8	-	-	-	-	2,525	-	638	12,373
시민건강국	14	11,532	1.3	4,038	-	475	-	6,457	-	560	-
관광체육국	8	7,516	0.8	-	-	-	379	1,146	-	5,991	-
복지정책실	11	5,728	0.6	-	-	27	-	256	852	4,592	-
주택정책실	32	5,236	0.6	-	-	14	-	-	-	5,203	18
노동공정생생정책관	7	4,175	0.4	-	-	4,124	39	-	-	12	-
미래공간기획관	18	3,522	0.4	-	-	1,577	-	-	-	1,945	-
행정국	5	2,738	0.3	-	-	2,525	-	-	-	212	-
도시계획국	16	2,586	0.3	-	-	-	-	-	-	2,586	-
디지털정책관	7	2,514	0.2	-	-	-	-	-	-	2,514	-
디자인정책관	9	1,991	0.2	-	-	1,278	397	190	-	125	-
미래청년기획단	5	1,125	0.1	-	-	-	60	-	-	1,065	-
소방재난본부	4	725	0.08	-	-	-	-	-	118	37	569
홍보기획관	2	488	0.05	-	-	-	-	85	-	402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422	0.04	-	-	-	-	-	-	422	-
자치경찰위원회	2	395	0.04	-	-	306	-	-	88	-	-
의회사무처	3	279	0.03	-	-	7	-	-	-	272	-
시립미술관	3	240	0.02	70	-	-	-	-	-	170	-
기획조정실	2	213	0.02	-	-	-	-	-	-	213	-
여성가족정책실	2	209	0.02	-	-	-	-	-	-	209	-
서울역사박물관	2	209	0.02	-	-	136	-	-	-	73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한 것이나,

-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실·본부·국(대변인,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재무국, 기술심사담당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포함한 8개 실·본부·국)은 작성이 생략된 것임

주2) 구성비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 중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 기본적으로는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이나, 사고이월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실·본부·국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표 3-84〉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현황(세부사업수,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의 비율)

(단위 : 개, 백만원, %)

실·본부·국명	전체 세부사업수 ①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수 ②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사업 비율 ②/①	전체 예산현액 ③	사고이월액 ④	사고이월률 ^{주1)} ④/③
합계	4,776	576	12.1	51,490,048	860,581	1.6
푸른도시여가국	323	63	19.5	824,172	163,287	19.8
물순환안전국	470	115	24.5	1,277,804	134,892	10.5
재난안전관리실	328	73	22.3	1,483,845	112,235	7.5
도시기반시설본부	28	7	25.0	1,645,105	88,861	5.4
도시교통실	236	38	16.1	4,903,544	61,149	1.2
기후환경본부	173	20	11.6	769,370	57,490	7.4
경제정책실	198	17	8.6	807,537	44,042	5.4
문화본부	329	32	9.7	681,110	43,102	6.3
서울아리수본부	70	20	28.6	995,268	41,378	4.1
미래한강본부	82	27	32.9	151,863	24,811	16.3
균형발전본부	105	22	21.0	1,467,008	21,622	1.4
평생교육국	90	8	8.9	4,829,992	15,537	0.3
시민건강국	362	9	2.5	673,725	11,532	1.7
관광체육국	115	7	6.1	284,984	7,516	2.6
복지정책실	239	8	3.3	10,035,372	5,728	0.057
주택정책실	254	29	11.4	4,341,140	5,236	0.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75	5	2.9	344,458	4,175	1.2
미래공간기획관	51	14	27.5	25,579	3,377	13.2
도시계획국	80	20	25.0	27,781	3,047	10.9
행정국	96	4	4.2	5,182,634	2,738	0.052
디지털정책관	76	5	6.6	165,083	2,514	1.5
디자인정책관	79	9	11.4	73,920	1,991	2.6
미래청년기획단	28	3	10.7	117,462	1,125	0.9
소방재난본부	83	4	4.8	1,926,242	725	0.037
홍보기획관	38	2	5.3	89,244	488	0.5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2	1	8.3	4,415	422	9.5
자치경찰위원회	60	2	3.3	25,467	395	1.5
의회사무처	47	3	6.4	40,880	279	0.6
시립미술관	25	3	12.0	20,653	240	1.1
기획조정실	72	2	2.8	1,786,652	213	0.011
여성가족정책실	270	2	0.7	3,185,071	209	0.006
서울역사박물관	39	2	5.1	15,756	209	1.3
대변인	9	-	-	1,720	-	-
비상기획관	19	-	-	5,815	-	-
민생사법경찰단	4	-	-	1,103	-	-
재무국	43	-	-	3,255,499	-	-
기술심사담당관	11	-	-	2,156	-	-
인재개발원	19	-	-	17,434	-	-
감사위원회	29	-	-	2,336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9	-	-	829	-	-

※ 주1) 사고이월률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만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 것이나,
 - 예산현액에 비해 사고이월액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취하면 “0.0”으로 기재되는 실·본부·국에 한정하여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을 절사한 것임

- 아울러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를 검토하면, ①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2,796억 5,4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32.4%), ② **사전절차 지연**을 사유로 1,464억 6,4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7.0%), ③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1,221억 4,200만원(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1%)의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3-85〉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3~'21)^{주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주2)}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 ^{주2)}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23	860,581	75,800	122,142	146,464	30,055	81,491	18,760	279,654	106,211
	(100.0)	(8.8)	(14.1)	(17.0)	(3.4)	(9.4)	(2.1)	(32.4)	(12.3)
2022	766,058	184,211	113,933	177,425	7,586	22,972	25,590	133,228	101,110
	(100.0)	(24.0)	(14.8)	(23.1)	(0.9)	(2.9)	(3.3)	(17.3)	(13.1)
2021	690,473	123,947	13,920	121,680	10,589	84,648	8,818	198,567	128,301
	(100.0)	(17.9)	(2.0)	(17.6)	(1.5)	(12.2)	(1.2)	(28.7)	(18.5)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2,796억 5,4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332억 2,800만원)보다 1,464억 2,4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32.4%)도 직전회계연도(17.3%)보다 15.1%p 증가된 것임

- 동 사유(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사고이월의 경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계약체결시점부터 회계연도 중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계약하거나, 사고이월보다는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고,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도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약한 이후 사고이월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한 사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 사업부서는 예산확보와 행정편의 등을 고려하여 ① 회계연도 중 집행하지 못할 용역비까지 편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②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고이월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464억 6,4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774억 2,500만원)보다 △309억 6,000만원 감소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7.0%)도 직전회계연도(23.1%)보다 △6.1%p 감소된 것임
- 동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월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중앙부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인허가·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 예산편성 당시에는 관련 절차의 이행기간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에는 사업부서가 전망한 것보다 절차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소요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해당 절차를 추진일정 및 예산규모에 반영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서야 사업부서가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뒤늦게 인식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예산이월이 발생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 사전절차가 지연되거나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경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1,221억 4,2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1,139억 3,300만원)보다 7.2%, 82억 800만원 증가된 것이나,
-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8,605억 8,1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7,660억 5,800만원)보다 12.3%, 945억 2,200만원 증가됨에 따라 전체 사고이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14.1%)은 직전회계연도(14.8%)보다 △ 0.7%p 감소된 것임
 - 동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월은 통계목을 기준으로 8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이 중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행('23. 9~'23.11)한 후 '23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사유로 135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되어 ‘보상협의를 지연’된 사안이 아니라 보상협의 자체가 회계연도말에 착수된 사안으로 판단되는 바,
- 실제 협의가 지연된 사안인지를 불문하고, 보상사업의 이월사유를 **보상협의 지연**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울시가 아닌 외부(토지 등의 소유자)로 사고이월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례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86〉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 기 미 집 행 도 시 공 원 보 상 (시 공 원)	시 설 비	168,463	69,271	41.1
푸른도시여가국	도 시 계 획 시 설 (녹 지) 조 성 및 재 정 비	시 설 비	38,988	18,963	48.6
재난안전관리실	신 림 ~ 봉 천 터 널 건 설	시 설 비	31,637	14,687	46.4
재난안전관리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시 설 비	43,674	13,541	3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동 북 선 경 전 철 건 설 (민 자)	시 설 비	120,582	1,963	1.6
재난안전관리실	현 립 로 확 장	시 설 비	7,913	1,808	22.9
재난안전관리실	벗 꽃 로 확 장	시 설 비	1,284	1,284	100.0
문 화 본 부	국 가 지 정 문 화 재 보 수 정 비	시 설 비	22,095	622	2.8

※ 주1) 통계목 기준,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된 세부사업임

〈표 3-87〉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서울아리수본부	장 기 사 용 송 배 수 관 (4 0 0 m m 이 상) 정 비	시 설 비	69,494	15,533	22.4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3 차 (총 인) 처 리 시 설 설 치	시 설 비	31,145	10,680	34.3
미래한강본부	암 사 초 록 길 조 성	시 설 비	19,620	8,184	41.7
재난안전관리실	노 들 로 구 조 개 선	시 설 비	16,149	7,500	46.4
재난안전관리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시 설 비	14,586	6,815	46.7
재난안전관리실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시 설 비	10,295	6,233	60.6
문 화 본 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 립	시 설 비	21,781	4,528	20.8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성 능 개 선	시 설 비	6,304	4,061	64.4
시 민 건 강 국	가 락 1 1 9 안 전 센 터 - 강 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 립	시 설 비	7,582	3,930	51.8
재난안전관리실	월 드 컵 대 교 건 설	시 설 비	41,608	3,200	7.7
재난안전관리실	천 호 대 교 남 단 주 변 연 결 체 계 개 선	시 설 비	4,306	2,819	65.5
물순환안전국	방 화 1 - 8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3,861	2,658	68.8
도 시 교 통 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전환사업)	시 설 비	11,648	2,474	21.2
서울아리수본부	광 암 수 계 배 수 관 로 정 비	시 설 비	18,347	2,245	12.2
재난안전관리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교통 개선분담금 계 정)	시 설 비	9,079	2,096	23.1
물순환안전국	방 화 1 - 9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574	1,940	34.8
재난안전관리실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시 설 비	15,215	1,915	12.6
푸른도시여가국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시 설 비	4,699	1,500	31.9
물순환안전국	염 곡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140	1,378	26.8
재난안전관리실	모래내고가 방호울타리 개선공사	시 설 비	1,488	981	66.0

※ 주1) 통계목 기준,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3-88〉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 하 차 도 건 설 사 업	시 설 비	39,985	15,540	38.9
푸른도시여가국	생 활 밀 착 형 공 원 조 성	시 설 비	27,451	14,175	51.6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 설 비	42,019	7,243	17.2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	21,858	7,104	32.5
재난안전관리실	서 부 간 선 도 로 일 반 도 로 화 및 친 환 경 공 간 조 성	시 설 비	7,700	6,551	85.1
서울아리수본부	배 수 지 내 부 방 식	공 공 운 영 비	14,159	6,488	45.8
서울아리수본부	원 인 자 이 설 공 사 직 접 시 행	공 공 운 영 비	14,550	5,379	37.0
물순환안전국	하 수 차 집 관 로 유 지 보 수	시 설 비	12,935	4,998	38.6
푸른도시여가국	근 교 산 등 산 로 정 비	시 설 비	15,718	4,738	30.1
물순환안전국	일 원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786	4,572	95.5
재난안전관리실	디 지 털 3 단 지 ~ 두 산 길 간 지 하 차 도 건 설	시 설 비	5,837	3,940	67.5
물순환안전국	문 래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571	3,797	83.1
기후환경본부	가 스 열 펌 프 배 출 가 스 저 감 장 치 설 치 사 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3,780	3,766	99.6
물순환안전국	신 촌 - 6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5,091	3,461	68.0
물순환안전국	남 가 좌 3 - 3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시 설 비	4,758	3,320	69.8
서울아리수본부	상 수 도 블 록 시 스 템 공 급 체 계 구 축	시 설 비	24,461	3,300	13.5
물순환안전국	이 문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269	3,267	76.5
푸른도시여가국	공 원 내 책 십 터 조 성	시 설 비	5,508	3,138	57.0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시 설 비	14,588	3,137	21.5
물순환안전국	이 문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4,269	3,110	72.9

※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3-89〉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면 목 3 - 5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16,532	9,013	54.5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시 설 비	5,000	4,597	91.9
푸른도시여가국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시 설 비	7,340	4,003	54.5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시 설 비	2,700	2,700	100.0
평생교육국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 지원센터) 조성 운영	시 설 비	4,789	2,525	52.7
미래한강본부	독섬 전망 문화 복합 시설 운영 및 관리	시 설 비	3,704	2,501	67.5
푸른도시여가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시 설 비	17,662	2,427	13.7
물순환안전국	중 곡 - 1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공 사	시 설 비	15,725	2,415	15.4
재난안전관리실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시 설 비	12,998	2,207	17.0
물순환안전국	군 자 - 2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11,371	2,178	19.2
푸른도시여가국	서울숲 확 대 조 성	시 설 비	2,939	2,155	73.3
시 민 건 강 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감 리 비	1,014	1,014	100.0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공원·휴게공간 조성	시 설 비	2,800	982	35.1
관 광 체 육 국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무관리비	2,471	793	32.1
물순환안전국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 성 시 범 사 업	시 설 비	5,680	744	13.1
시 민 건 강 국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개발비	1,724	597	34.7
물순환안전국	서남하수처리구역 하 수 관 로 보 수 보 강	시 설 비	6,233	522	8.4
물순환안전국	갈현로7길37 일대 사유지 통 과 사 각 형 거 이 설	시 설 비	546	522	95.7
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사업 관리 용역	시 설 비	1,320	480	36.4
문 화 본 부	손기정 기념관 시설보강	시 설 비	720	473	65.7

※ 주1) 통계목 기준,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3-90〉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시 설 비	114,786	51,706	45.0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시 설 비	106,072	15,966	15.1
경 제 정 책 실	(가 칭) 서 울 큐 브 조 성	시 설 비	13,203	11,146	84.4
경 제 정 책 실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시 설 비	21,643	8,813	40.7
경 제 정 책 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시 설 비	25,225	8,473	33.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	시 설 비	62,642	8,244	13.2
문 화 본 부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시 설 비	19,397	8,124	41.9
문 화 본 부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시 설 비	16,865	7,700	45.7
경 제 정 책 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 설 비	10,436	6,974	66.8
물순환안전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시 설 비	9,110	5,720	62.8
관 광 체 육 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12,499	5,062	40.5
문 화 본 부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기존 통합수장고) 건립	시 설 비	21,781	4,962	22.8
푸른도시여가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시 설 비	14,461	4,828	33.4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시 설 비	8,668	4,503	52.0
도시교통실	복합시설 공영주차장 건설 (50 + 동 부 캠퍼스)	시 설 비	5,601	4,033	72.0
문 화 본 부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 설 비	14,400	3,890	27.0
도시교통실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	시 설 비	8,037	3,714	46.2
복 지 정 책 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 설 비	7,102	3,184	44.8
푸른도시여가국	단 절 된 녹지축 연결	시 설 비	6,333	3,114	49.2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전산개발비	13,412	3,101	23.1

※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3-91〉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기후환경본부	전 기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75,841	39,661	14.4
도시교통실	저 상 버 스 도 입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74,009	33,003	44.6
물순환안전국	차 집 관 로 보 수 공 사	시 설 비	15,911	5,531	34.8
평생교육국	5 0 + 캠퍼스 확충	시 설 비	9,111	4,749	52.1
평생교육국	학 력 격 차 없 는 맞 춤 형 온 라 인 콘 텐 츠 지 원	사 무 관 리 비	15,097	4,686	31.0
물순환안전국	센 터 내 토 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시 설 비	10,582	3,353	31.7
평생교육국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 무 관 리 비	9,007	2,938	32.6
물순환안전국	장 위 - 4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7,431	2,069	27.8
기후환경본부	수 소 차 보 급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0,800	1,782	8.6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행 사 운 영 비	1,255	1,255	100.0
물순환안전국	수 처 리 분 야 기 계 설 비 유 지 보 수 및 개 량	시 설 비	14,442	1,183	8.2
물순환안전국	행 당 - 5 소 구 역 하 수 관 로 정 비 사 업	시 설 비	2,210	888	40.2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재 료 비	4,568	710	15.6
기후환경본부	어 린 이 통 학 차 량 의 L P G 차 전 환 지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2,723	399	14.7
물순환안전국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시 설 비	3,411	351	10.3
물순환안전국	수 처 리 분 야 계 측 기 유 지 관 리	시 설 비	3,477	323	9.3
재난안전관리실	신 당 역 ~ 신 당 지 하 상 가 연 결 통 로 설 치 공 사	시 설 비	2,262	322	14.2
물순환안전국	난 지 물 재 생 센 터 운 영	공 공 운 영 비	13,427	295	2.2
소방재난본부	산 불 전 문 진 화 차 보 강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750	289	38.6
소방재난본부	소 방 차 량 교 체 및 보 강	자 산 및 물 품 취 득 비	20,937	279	1.3

※ 주1) 통계목 기준, “기타” 사유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1)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근린공원 용지에 대하여 '19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총 2조 73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원 실효를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 예산현액 1,684억 6,300만원 중 692억 7,100만원(예산현액 대비 41.1%)이 사고이월 되고, 99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5.9%)이 명시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의 예산현액(1,684억 6,300만원) 중에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명시이월액(855억 3,900만원)과 사고이월액(729억 2,300만원), 그리고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100억원)이 포함된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명시이월액(99억 9,400만원)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분할, 실시계획 변경인가,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100억원) 중 99.9%가 이월된 것이며,
 - 사고이월액(692억 7,100만원)은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855억 3,900만원) 중 19.0%에 해당되는 162억 6,700만원이 회계연도 중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81.0%에 해당되는 692억 7,100만원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 재결절차를 이행하게 되거나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집행하지 못해 보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이월 처리한 사안으로 확인됨

〈표 3-92〉 최근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주1)} 결산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3	168,463	89,165	79,266	9,994	69,271 ^{주2)}	32
2022	279,883	121,419	158,463	85,539	72,923 ^{주3)}	-
2021	450,542	264,467	186,075	185,745	329	1
2020	250,027	149,441	585	585	-	100,000
2019	289,488	190,603	98,677	98,677	-	206

※ 주1) '19회계연도의 세부사업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강남)임

주2) '22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692억 7,100만원)은 '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855억 3,900만원) 중 지출되지 못한 소요예산이 재이월된 것임

주3) '22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729억 2,300만원)은 '21회계연도 명시이월액(1,860억 7,500만원) 중 지출되지 못한 소요예산이 재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① 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5800 ('24. 5.17) 등 재구성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에도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당해연도 예산(938억 800만원) 중 91.1%에 해당하는 855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예산(1,857억 4,500만원) 중 39.2%에 해당되는 729억 2,300만원이 재이월(사고이월)된 바 있어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월할 당시 계획한 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사안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보상협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서울시의 보상의지를 신용하도록 하기 위해 소요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있지만, 사업추진방식이나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 사업부서는 동 사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사업추진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사업은 예산이 신규편성된 '19회계연도부터 지난 '23회계연도까지 총 9건, 1조 4,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해당 지방채에 대해 775억 8,300만원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해당 재원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처리될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물론 최근의 고금리 기조가 단기간 내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부담이 증가되는 등 부수적 부담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세출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9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관련 지방채 발행현황 및 이자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채 발행현황 ^{주1)}						지방채 (원금) 상환액 ^{주2)}	지방채 (원금) 잔액 ^{주2)}	이자 지급액 ^{주2)}
발행일자	발행액	기채방법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상환재원			
합계	1,450,000					170,000	1,280,000	77,583
'19.10.30	210,000	공모공채 (모집공채)	1.847	30년 일시상환	지방비	-	210,000	17,454
'19.11.22	190,000		1.685			-	190,000	12,806
'19.12.24	180,000		1.742	10년 일시상환		-	180,000	12,542
'20. 5.22	280,000		1.297	5년 일시상환		-	280,000	12,710
'20. 7.23	150,000		1.359	7년 일시상환		-	150,000	7,134
'21. 5.14	150,000		2.245	10년 일시상환		-	150,000	8,418
'21.12. 1.	120,000		2.454			-	120,000	5,889
'22.12.12	150,000		4.450	1개월 일시상환		150,000	-	556
'23.12.12	20,000		4.250			20,000	-	70

※ 주1) 지방채 발행현황은 '19회계연도부터 '23회계연도까지의 현황을 정리한 것임

주2) 지방채(원금) 상환액, 지방채(원금) 잔액, 이자지급액은 '24회계연도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 이자지급액 중 25%는 중앙정부가 국비지원을 통해 부담하는 것임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소관 **전기차 보급**은 예산현액 2,820억 4,700만원 중 14.0%, 39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① **버스**의 경우, 구매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차량출고까지 2개월 상당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보조금 368억 5,600만원(399대분)이 사고이월 되고,
- ② **승용·화물·이륜차**의 경우, 4/4분기에 일부 모델이 한시적으로 할인하는 등의 사유로 구매지원 신청이 증가되었으나, 차량 출고기한(2개월)이 미도래하여 28억 500만원(총 372대분)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94〉 사고이월이 발생한 세부내역 (전기차 보급)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이월 물량	사고이월액		
			계	국비	시비
합계		771	39,661	28,081	11,580
버스	소계	399	36,856	25,849	11,006
	시내버스·마을버스	385	36,267	25,411	10,856
	통학버스	13	517	388	129
	통근버스	1	71	49	21
승용	소계	308	2,158	1,746	411
	승용	244	1,438	1,141	296
	택시	64	720	605	114
화물		35	598	460	137
이륜		29	48	24	24

〈표 3-95〉 최근 5년간 전기차 보급 세출결산 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보조금반납금 비율)	불용액 (불용률)
			계 (이월률)	명시이월 (명시이월률)	사고이월 (사고이월률)		
2023	282,047	159,826 (56.6)	39,661 (14.0)	- (0.0)	39,661 ^{주1)} (14.0)	59,620 (21.1)	22,938 (8.1)
2022	307,870	249,964 (81.1)	36,475 (11.8)	- (0.0)	36,475 ^{주2)} (11.8)	11,048 (3.5)	10,381 (3.3)
2021	355,543	277,587 (78.0)	53,200 (14.9)	- (0.0)	53,200 ^{주3)} (14.9)	24,047 (6.7)	707 (0.1)
2020	246,727	172,166 (69.7)	70,528 (28.5)	50,400 (20.4)	20,128 ^{주4)} (8.1)	2,652 (1.0)	1,380 (0.5)
2019	177,897	97,180 (54.6)	28,786 (16.1)	- (0.0)	28,786 ^{주5)} (16.1)	25,859 (14.5)	26,069 (14.6)

※ 주1) '23회계연도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96억 6,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2) '22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이 미도래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60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차량생산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4,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3) '21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3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2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4) '20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1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주5) '19회계연도의 경우, 차량출고기한(2개월) 미도래로 인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83억 2,9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차량생산기간(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3번째로 큰 규모의 사고이월액이 발생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매 회계연도 결산마다 차량출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서울시 전체 사업 중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회계연도 결산과 '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은 동일 사유(차량출고기한 미도래)로 수 백억원 규모의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월액 발생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환경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음

- 그러나 사업부서로부터 동 사업에 대해 최근 3년간('21. 4~'24. 4) 소관 중앙부처(환경부)와 협의하거나 개선건의한 내역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주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중앙부처(환경부)는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문제보다는 소관사업의 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업부서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불용이나 이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용결과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식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푸른도시여가국 동부공원여가센터 소관 **서울숲 확대 조성**은 예산현액(30억 800만원)의 72.6%, 21억 8,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23년 4월, 신규 청사를 건축(**신축**)하지 않고 기존 청사를 **증축**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소요예산(25억 7,100만원) 중 21억 8,600만원이 재이월(사고이월) 처리된 것임

〈표 3-96〉 서울숲 확대 조성^{주1)} 결산결과 ('23~'22)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23	3,008	158	2,186	-	2,186 ^{주2)}	663
2022	2,719 ^{주3)}	147	2,571	2,571 ^{주4)}	-	-

※ 주1) '22회계연도의 세부사업명은 독섬 승마훈련원 리모델링 및 서울숲관리사무소 이전임

주2) '22회계연도 결산결과 '23회계연도에 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된 예산(25억 7,100만원) 중 21억 8,600만원을 활용하여 '24회계연도에는 기존청사 증축을 추진하고자 재이월(사고이월) 처리한 것임

주3) '22년도 본예산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청사를 이전하고자 신규편성된 것임

주4) '23회계연도 중 청사 신축을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된 것임

○ 그러나 시장이 편성하여 제출하고 시의회가 의결한 소요예산은 편성·의결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특히 이월예산은 '이월된 내용대로만' 집행할 수 있는 바,

- 동 사업의 경우, 동부공원여가센터의 청사 이전 등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과 부속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① 당초에는 구(舊) 독섬승마훈련원의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하고자 '22년도 본예산(27억 1,900만원)을 편성·의결한 것이나, ② '22회계연도 중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을 추진하기로 변경하고 사업비(25억 7,100만원)를 명시이월한 것으로,
- 우리 시의회가 부족한 사무공간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면, 명시이월된 소요예산(25억 7,1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된 용도(신축)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유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또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23. 4)하여 기존 청사에 대한 증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2회계연도 결산시 신축을 위해 명시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증축을 위한 소요예산은 별도로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에도,

- 행정편의가 우선시되어 **신축**을 위해 직전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이월 예산을 활용하여 **증축**을 추진하도록 사고이월(재이월)로 처리한 결과 실제 추진되는 사업내용(**증축**)이 당초 예산이 편성·의결된 내용(**리모델링**)은 물론 의회가 명시이월을 승인한 내용(**신축**)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사무공간 등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의회의 의결취지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 이월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사례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소관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은 예산현액(4억원) 중 1억 9,400만원(예산현액 대비 48.6%)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법령개정 반영 등으로 인해 용역발주('23. 9)가 지연되어 용역 준공기한('24.12)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97〉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400	194	194	194	-
				11

- 동 사업의 경우, '23년 9월 수립한 관련 계획에는 용역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23.12)한 후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12개월간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 이미 '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도 사업별설명서에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하여 '24년 2월 준공할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 사업이 예산편성단계부터 이월이 전제된 편성사례임을 지적한 사안임
 - 따라서 동 사업은 발주지연으로 인해 비로소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사 시에 우리 시의회가 문제제기한 부분이 결산심사 시에 현실화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사업부서는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단일 회계연도에 용역비 전액을 편성하여 예산이월을 내재시키는 것보다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일을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소관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6개 사업**은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빈도를 상향시킴에 따라 총 275억 8,600만원(예산현액 534억 5,200만원의 51.6%)이 사고이월된 것임
- 서울시는 '22년 8월 발생한 이상폭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2년 10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간당 95mm를 초과하는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재성능목표(95mm/hr)를 시간당 100mm(100mm/hr)로 상향하고,
 -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소구역 정비사업의 설계빈도도 기존에 간선이 30년, 지선이 10년이던 것을 간선 50년, 지선 30년으로 상향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설계 등을 추진한 사업(6개)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표 3-98〉 방재성능상향 추진을 사유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회계명)	사업명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사고이월 사유
합계		53,452	27,586 (51.6)	
물순환안전국 (공기업하수도 사업특별회계)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8,132	9,300 (51.2)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에 따 른 설계 재검토로 인한 시공중지 및 과업중지에 따라 1차분 공사준공이 연기되어 2차분 계약 착수 지연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4,972 (95.8)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에 따 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기간 을 연장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6	3,797 (82.0)	상향된 방재성능목표 적용을 위해 실 시설계용역 준공지연, 공사시행 지연, 사전절차 지연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69	3,567 (78.0)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을 연 장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	3,410 (85.2)	방재성능목표 상향(30년→50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기간을 연 장함에 따라 사업추진 지연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6,936	2,539 (14.9)	방재성능목표 상향 추진에 따른 재설 계 등으로 공사가 지연

- 사업별로는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재검토(재설계) 등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181억 3,200만원)의 51.2%, 93억원이 사고이월된 것이며,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169억 3,600만원)의 14.9%, 25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그리고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준공 기한을 연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으로,

- **일원-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51억 8,600만원)의 95.8%에 해당하는 49억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되고, **이문-1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예산현액(45억 6,900만원)의 78.0%에 해당하는 35억 6,7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현액(40억원)의 85.2%에 해당하는 34억 1,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문래-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공사 시행 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현액(46억 2,600만원)의 82.0%, 46억 2,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6개 사업)의 경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고자 재설계, 설계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 것으로서 사업이 지연된 것에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이문-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제외한 5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대책이 수립('22.10)된 지난 '22회계연도에도 이미 방재성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부서는 동 사업에서 동일한 사유로 인해 반복적인 예산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일정과 예산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9A〉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시공원)	168,463	89,165	69,271	41.1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1,267	66,321	52,757	43.5
기후환경본부	전기차보급	282,047	159,826	39,661	14.0
도시교통실	저상버스도입	74,009	40,382	33,003	44.5
푸른도시여가국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및재정비	38,988	19,568	18,963	48.6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건설	124,990	98,426	16,404	13.1
균형발전본부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지하차도건설사업	41,840	25,771	15,986	38.2
서울아리수본부	장기사용송배수관(400mm이상)정비	71,033	35,611	15,802	22.2
재난안전관리실	신림~봉천터널건설	34,289	19,166	15,123	44.1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공원조성	27,560	9,851	14,197	51.5
재난안전관리실	장기미집행도로토지보상비	43,674	30,133	13,541	31.0
경제정책실	(가칭)서울큐브조성	14,080	2,680	11,307	80.3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3차(총인)처리시설설치	32,643	21,906	10,708	32.8
문화본부	서울시문화유산보존센터(기존통합수장고)건립	23,960	12,909	9,935	41.4
물순환안전국	면목3-5소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	18,132	8,832	9,300	51.2
경제정책실	양재AI혁신지구양재커시설조성	22,782	13,731	9,050	39.7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도시철도건설(교통개선분담금)	79,733	56,253	8,938	11.2
경제정책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건립	26,899	17,777	8,734	32.4
문화본부	연극창작지원시설건립	20,922	12,438	8,469	40.4
미래한강본부	암사초록길조성	20,492	12,231	8,260	40.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9호선4단계건설	64,907	56,662	8,244	12.7
재난안전관리실	노들로구조개선	17,651	9,636	8,015	45.4

〈표 3-99B〉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문화본부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8,582	10,549	7,918	42.6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56,896	46,494	7,243	12.7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1,245	14,341	7,104	22.7
경제정책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11,532	4,293	7,069	61.2
재난안전관리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8,600	529	6,922	80.4
재난안전관리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15,408	8,493	6,915	44.8
서울아리수본부	배수지 내부방식	14,373	7,092	6,488	45.1
물순환안전국	사천(망원) 빗물펌프장 설치	10,384	3,919	6,464	62.2
재난안전관리실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11,045	4,701	6,343	57.4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6,112	422	5,690	93.0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15,911	10,289	5,530	34.7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3,841	7,789	5,512	39.8
서울아리수본부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14,550	7,969	5,379	36.9
물순환안전국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12,935	7,287	4,998	38.6
물순환안전국	일원-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214	4,972	95.8
푸른도시여가국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14,529	7,420	4,828	33.2
평생교육국	50+ 캠퍼스 확충	9,930	5,150	4,749	47.8
푸른도시여가국	근교산 등산로 정비	15,725	8,808	4,738	30.1
평생교육국	함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15,107	7,904	4,686	31.0
미래한강본부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9,249	4,396	4,552	49.2
문화본부	서서울미술관건립	17,013	11,119	4,411	25.9
재난안전관리실	노후 포장도로 정비	100,319	87,229	4,267	4.2

〈표 3-99C〉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3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관리실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건설	6,435	2,185	4,249	66.0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성능개선	12,026	7,391	4,061	33.7
도시교통실	복합시설공영주차장건설 (50+동부캠퍼스)	5,601	1,568	4,033	72.0
푸른도시여가국	자연휴양림 조성(전환사업)	7,420	3,416	4,003	53.9
시민건강국	가락119안전센터-강남 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8,598	4,656	3,942	45.8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	16,159	12,259	3,884	24.0
물순환안전국	문래-3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626	765	3,797	82.0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배출가스 저감장치설치사업	3,780	-	3,766	99.6
도시교통실	현릉로중앙버스터 전용차로조성	8,500	4,782	3,714	43.6
물순환안전국	신촌-6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542	1,838	3,596	64.8
경제정책실	홍릉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24,061	17,286	3,595	14.9
물순환안전국	이문-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569	715	3,567	78.0
물순환안전국	남가좌3-3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58	1,620	3,521	68.2
물순환안전국	이문-2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00	589	3,410	85.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양곡도매시장 이전	4,651	1,262	3,387	72.8
물순환안전국	센터내토목및 건축시설물보수공사	10,582	6,606	3,353	31.6
서울아리수본부	상수도블록시스템 공급체계구축	25,115	12,779	3,300	13.1
재난안전관리실	월드컵대교건설	43,608	40,408	3,200	7.3
복지정책실	시립서대문농아인 복지관별관건립	7,502	4,317	3,184	42.4
푸른도시여가국	공원내책심터 조성	5,768	2,359	3,174	55.0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및개선	13,703	9,525	3,165	23.0
푸른도시여가국	단절된녹지축연결	6,360	2,057	3,114	48.9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3,000	-	3,000	100.0

〈표 3-100〉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재난안전관리실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교통개선분담금)	3,000	-	3,000	100.0
재난안전관리실	벚꽃로 확장	1,284	-	1,284	99.9
기후환경본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3,780	-	3,766	99.6
도시교통실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	1,500	49	1,450	96.7
푸른도시여가국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297	36	1,255	96.7
물순환안전국	서대문역 1번출구 주변 하수관로 개량	2,070	50	1,989	96.1
물순환안전국	일원 - 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186	214	4,972	95.8
도시교통실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1,562	1	1,459	93.3
시민건강국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6,112	422	5,690	93.0

(2)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례 검토

- '23회계연도의 경우,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이 1차례 편성된 바,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3년 5월, 시의회에 제출되어 7월에 의결된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된 세부사업 중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은 예산현액(1억 5,600만원)의 25.2%, 3,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추경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1억 5,600만원) 전액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운영기관 선정절차가 '23년 9월말 완료되어 '23년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용역준공기한('24. 3.19)이 미도래하여 사무관리비(3,9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표 3-101〉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도입)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사무관리비	156	99	39	39	-	17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소관 **온열의자 설치**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서 3억 8,800만원이 신규편성된 사업으로서 사업별설명서에는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3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으로 기재된 것이나,

- 대상지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기한('23.12.24)을 '24년 1월 30일까지 연기하기로 변경방침을 수립한 결과 예산현액(3억 8,800만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3억 2,000만원(예산현액 대비 82.4%)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3-102〉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온열의자 설치)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시설비	388	-	320	320	-	67

- 동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가 소요예산을 '24년도 본예산이 아닌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은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하여 온열의자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경예산 편성 이후 대상지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었음을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례로 검토되는 바,
 - 추경예산의 경우, 회계연도 중 집행을 위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요예산 편성요청 이전에 사업대상지를 구체화시킬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는 여의나루역에 시민의 야외운동을 지원하는 공간(러너스테이션)을 조성하기 위해 추경안을 통해 27억 1,9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서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현액(27억 1,900만원) 중 34.1%, 9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러너스테이션 조성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러너스테이션 준공('23.12)에 대비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사전 불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 4,6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나, 예산현액(1억 4,600만원) 중 67.8%, 9,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여의나루역 러너축제의 경우에도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러너스테이션이 준공('23.12)되면 러닝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하고자 2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으로서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현액(2억 8,000만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임

〈표 3-103〉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러너스테이션 관련 3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디자인정책관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2,719	1,726	927	927	-	64
관광체육국	여 의 나 루 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146	45	99	99	-	1
관광체육국	여 의 나 루 역 러너축제 운영	280	-	280	280	-	-

-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 ① 추경안 의결('23. 7) 이후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심의('23. 7), 일상감사('23. 7~'23. 8),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23. 9)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② 지하철 역사에서 추진되는 공사의 특성상 주간에는 공사추진이 제한되

어 준공기한을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4월로 연기함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된 바,

-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과 공사대상지가 지하철 역사인 경우에는 주간작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추경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이나,
 - 사업추진일정을 낙관하고 소요예산을 편성한 결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사안은 아닌지 재고(再考)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과 **여의나루역 러너축제**는 다른 실·본부·국(디자인정책관)이 추진하는 사업(**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을 통해 러너스테이션이 회계연도 중 준공('23.12)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요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러너스테이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동 사업도 순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인 바,
- 러너스테이션의 당초 준공시점('23.12)이 회계연도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관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서는 동 사업의 추진시점도 순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유관사업이 완료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 소요예산을 편성한 결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 유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될 사업은 유관사업과 동시에 추경안에 편성하기보다는 다음연도 본예산이나 별도의 추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러너스테이션 준공기한은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4월로 연기된 것임에도,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를 검토하면 **지하철 유희공간 혁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러너스테이션의 준공기한을 '24년 10월로 오기고 있고,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운영**

과 **여의나루역 러너축제**는 러너스테이션의 준공기한을 '24년 6월로 오기 하고 있는 바,

- 이는 결산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작성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을 저해시킨 사례일 뿐만 아니라, 유관사업을 추진하는 실·본부·국 간에 사업추진일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소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은 예산현액(5억원)의 71.0%, 3억 5,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표 3-104〉 '23회계연도 결산결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용역)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500	134	355	355	-	10

-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대상지 선정('23. 9) 후 '23년 10월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준공기한('24. 4)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그러나 추경안 심사 당시에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소요예산 전액(5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결산시점에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용역발주 등이 지연된 결과 예산이월이 발생되었다고 이월사유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과 결산시점에 있어 사업부서가 서로 모순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소관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소관 **어린이박물관 조성도**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을 통해 신규편성된 사업인 바,

〈표 3-105〉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푸 른 도 시 여 가 국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 계획 용역	200	-	195	195	-	4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어린이박물관 조성	223	85	136	136	-	1

-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의 경우, 예산현액(2억원) 중 97.9%, 1억 9,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설기술 심의('23. 8), 제안서 평가('23.10)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11월,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내용에 따른 준공기한이 '24년 8월이기에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소관 **어린이박물관 조성**은 예산현액(2억 2,300만원) 중 60.9%, 1억 3,6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건축설계 공모 당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절차인 공공건축사전심의('23. 9~'23.10), 공공건축설계 공고 및 작품 접수('23.10~'23.11), 디지털심사('23.11)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당선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정원도시 서울 전략 기본계획 용역과 어린이박물관 조성**의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의 이행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소요예산을 확보한 결과 예산이월이라는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할 때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이 가능한 기간이 더욱 제한적이며, 별도의 추경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을 경정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일정 등을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회계연도 중 집행이 확실시되는 소요예산만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회계연도 중 소요예산 전액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결산시점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사전절차 이행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월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할 것임

(3)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례 검토

- 관련 법령은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3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회계연도 중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세부사업) 중 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06〉 '23회계연도에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불용액 (불용률)
합계		2,250	1,280 (56.9)	812 (36.0)	157 (6.9)
푸른도시여가국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	1,000	485 (48.5)	434 (43.4)	80 (8.0)
미래한강본부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	300	- (0.0)	256 (85.5)	43 (14.4)
디자인정책관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	350	226 (64.7)	121 (34.6)	2 (0.5)
푸른도시여가국	북악하늘길 교통약자를 위한 산책로 정비(시민참여)	500	468 (93.6)	- (0.0)	31 (6.3)
시민건강국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시범사업	100	100 (100.0)	- (0.0)	- (0.0)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소관 **응봉근린공원(금호산) 무장애 산책로 조성(시민참여)**은 예산현액(10억원)의 43.4%, 4억 3,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23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 후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산책로 조성공사('23. 9.22~'23.12.20)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공사 추진과정에서 ① 전문가 현장 자문의견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반영하여 공법과 노선을 변경하고, ② 배수시설 확충 등 공종이 추가되었으며, ③ 우천 및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단기간을 반영하여 '23년 12월, 공사 준공기한을 당초 '23년 12월에서 '24년 3월로 연기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시설비(4억 3,4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디자인 고도화**는 야간에 사고발생률이 높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3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현액(3억원) 중 단 1원도 지출하지 못하고 2억 5,600만원(예산현액 대비 85.5%)이 사고이월된 바,

- 시설물의 설치위치, 안정성,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시일이 소요되어 '23년 12월에서야 공사계약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기가 부족하여 '24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2억 5,6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소관 **공원 환경보호를 위한 행동유도 안내사인 디자인**은 예산현액(3억 5,000만원)의 34.6%, 1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 당초 서울대공원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형 디자인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대공원에서 동 사업의 취지가 공원운영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유로 사업대상지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용역 준공기한을 '23년 12월에서 '24년 3월로 연기한 결과 시설비(1억

2,100만원)가 사고이월된 것임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결산심사 시 조레가 시민참여예산사업을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회계연도 중 실현가능한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이월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온 바,

- 지난 '2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이월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23회계연도의 경우에는 추진된 시민참여예산사업(5개 세부사업) 중 절반 이상(3개 세부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되고 있어 조레에 따른 선정결과(단년도 사업)와 실제 현실이 괴리되는 사례가 재발된 것으로 검토됨

〈표 3-107〉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회계연도별 결산결과 ('23~'19)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2023	2,250	1,280	812	157
2022	22,944	22,565	-	379
2021	43,361	40,907	109	2,689
2020	61,167	57,226	1,373	2,567
2019	59,284	54,034	2,024	3,224

- 사업부서는 시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사전검토 등을 수행함으로써 사업 지연요인을 최소화하고, 사업 내용이 다른 실·본부·국과도 연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의함으로써 회계연도 중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제안된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업내용을 단년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인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보다는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면서도 시민의 요구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이월액 확정 이후 사고이월액을 임의변경한 사례 검토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즉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관련 기준과 규칙에는 확정기한(1월 10일)이 경과한 이후 이월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에도 서울시는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가 3건(통계목 기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08〉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임의로 정정한 사례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통계목	1월 10일자로 확정된 사고이월액 (가)	변경된 사고이월액 (’23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재난안전관리실	남 부 순 환 로 (개 봉 사 거 리) 평 탄 화	시 설 비	6,825	6,815	△10
물순환안전국	홍제천(마포구) 망원 나들목 설치 사업	시 설 비	307	279	△28
미래한강본부	안 양 천 교 자 전 거 도 로 구 조 개 선	시 설 비	1,605	1,560	△45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소관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는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101억 4,000만원) 중 68억 2,5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으나,

- 지난 2월 8일, 사업부서는 회계연도 중의 지출액 등을 착오하였음을 사유로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68억 2,500만원) 중 △1,000만원 감액한 68억 1,500만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훈령과 상관없이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소관 **홍제천(마포구) 망원나들목 설치 사업**은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28억 3,800만원) 중 3억 7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 지난 2월 13일, 사업부서가 회계연도 중의 지출액 등을 착오하였음을 사유로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3억 700만원) 중 △2,800만원 감액한 2억 7,900만원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사안으로 확인됨

○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소관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은 '24년 1월, 시설비 예산현액(30억원) 중 16억 500만원을 사고이월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 확정기한('24. 1.10) 경과 이후 4,500만원이 추가지출('24. 1.17) 됨에 따라 2월 13일, 사업부서가 기 확정된 사고이월액(16억 500만원)에서 지출된 예산만큼 △4,500만원 차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 16일, 예산부서가 사업부서의 요청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와 예산부서로서는 실제 지출된 예산규모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잘못 산정된 이월예산을 정정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 관련 규칙과 기준이 회계연도 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최대 10일 간 지출액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월예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라는 취지로 사료되는 바,
- 주어진 기간(최대 10일)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지출액 등을 파악하고 이월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기준과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인 것은 물론 회계관리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내용도 경시하는 행태일 수밖에 없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다만,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회계연도말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으나 지출하기 곤란하여 이월액 확정기한('24. 1.10) 경과 이후 '24년 1월 20일까지 기성금을 집행한 특수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1월 20일까지 지출된 사안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단서조항이 전혀 마련되어 않아 관련 기준과 규칙에 따른 확정기한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될 수밖에 없으나,

-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출된 예산을 확정기한(1월 10일) 이내에 파악하고 이월예산 산정시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가 적용된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이월액 확정기한도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되도록 하고, 이와 연계된 후속조치로서 서울시의 규칙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 순세계잉여금 관련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함
-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1조 6,459억 9,1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직전회계연도(4조 1,379억 4,600만원)보다 △60.2%, △2조 4,919억 5,5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3-109〉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회 계 연 도	2022 회 계 연 도	2021 회 계 연 도
합 계		1,645,991	4,137,946	6,442,845
	일 반 회 계	932,676	3,254,857	5,871,201
	특별회계 ^{주1)}	713,314	883,089	571,643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3조 2,548억 5,700만원)보다 △71.3%, △2조 3,221억 8,100만원 감소한 9,326억 7,6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8,830억 8,900만원)보다 △19.2%, △1,697억 7,500만원 감소한 7,133억 1,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물가 상승 및 민간 소비심리 둔화, 공시지가 인하 등으로 지방소비세(△1,080억 2,000만원), 취득세(△746억 8,100만원), 자동차세(△577억 8,900만원), 재산세(△471억 4,600만원) 등이 부족 수납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36조 5,073억 9,200만원)보다 △2,921억 2,300만원 감소한 36조 2,152억 6,900만원이 실제수납 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직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37조 1,167억 7,300만원)보다 △2조 1,883억 100만원 감소한 34조 9,284억 7,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3조 5,973억 7,000만원)보다 △2조 3,105억 7,400만원 감소한 1조 2,867억 9,600만원이 발생되어
- 다음 연도 이월액(2,562억 4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979억 1,3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세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3조 2,548억 5,700만원)보다 △2조 3,221억 8,000만원 감소한 9,326억 7,600만원으로 제출됨

〈표 3-110〉 최종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최	종	예산		
	①	36,232,230	38,050,516	33,482,498
전	년	도	이	월
	②	275,161	269,125	352,348
예	산	현	액	
	③=①+②	36,507,392	38,319,642	33,834,846
세	입	결	산	액 (수
	④	36,215,268	40,714,143	39,173,001
세	출	결	산	액 (지
	⑤	34,928,472	37,116,773	32,960,202
결	산	상	잉	여
	⑥=④-⑤	1,286,796	3,597,370	6,212,799
채	무	상	환	
	⑦	0	0	0
명	시	이	월	액
	⑧	42,345	81,713	85,225
사	고	이	월	액
	⑨	213,859	193,448	181,274
계	속	비	이	월
	⑩	0	0	0
보	조	금	실	제
	⑪	97,913	67,351	75,097
세	계	잉	여	금
	⑫=⑥-(⑦+⑧+⑨+⑩+⑪)	932,676	3,254,857	5,871,201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9,326억 7,600만원 중 관련 법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1,736억 5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872억 8,100만원), ③타 회계전출(551억 3,400만원) 등 이른바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6,166억 5,50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3-111〉 '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세 계 잉 여 금	법 정 정 산 분				여유재원
	소 계	자 치 구 교 부 ①	교 육 청 전 출 ②	타 회 계 전 출 등 ③	
932,676	316,021	173,605	87,281	55,134	616,655

-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 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9,326억 7,600만원)의 경우에도 법정정산분(3,160억 2,100만원)을 제외한 6,166억 5,5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3,083억 2,700만원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24년도 세입예산에 미리 편성한 바,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매년 6월 직전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전년도 11월 제출하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

- 서울시로서는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한정되어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편성일 수 있으나,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결특위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였음에도 '23회계연도 결산이후 발생규모가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24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표 3-112〉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23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추 계 액)	2024년도 세입 편성액 (순 세 계 잉 여 금)	잉여금 잔액
합 계		468,731	468,731	0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08,305	108,305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135	5,135	0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99,553	199,553	0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76,321	76,321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30	5,130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70	170	0
	소 방 특 별 회 계	28,024	28,024	0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46,093	46,093	0

○ 결과적으로 '23회계연도 결산결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제잉여금 발생규모가 '24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되어 '24회계연도중 기편성된 세입예산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며 감액하지 않는다면 '25년 6월, 결산시 세수결손이 확실시되어 '24회계연도중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①**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순세제잉여금이 706억 6,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083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실잔액은 △376억 4,500만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②**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제잉여금이 △2억 1,200만원 부족한 상황으로 확인됨

■ 동 특별회계는 순세제잉여금 전망액을 51억 3,500만원으로 예측하고, '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제잉여금 전망치 전액(5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결과 '23회계연도 순세제잉여금에서 마이너스(-) △2억 1,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타 회계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전출 등을 통해 본예산에 이른바 '가불하여' 편성한 51억 3,500만원 뿐만 아니라 '23회계연도 순세제잉여금 결손분 △2억 1,200만원까지 추가 편성(53억 4,700만원)하거나, 실제없이 장부상 허수로 편성한 순세제잉여금(51억 3,500만원)과 '23회계연도 순세제잉여금 결손분(△2억 1,200만원)을 포함하여 △53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회계는 '22회계연도에도 마이너스(-) 결산(△66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회계연도에도 연속하여 마이너스(-) 순세제잉여금(△2억 1,200만원)을 유발시킨 바, 이는 회계질서를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사례일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③**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156억 8,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에 1,995억 5,3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838억 7,300만원의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④**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에도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6,600만원임에도 2024년도 본예산에 763억 2,1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449억 5,500만원의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024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령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편성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13〉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 2 3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①	' 2 4 년 도 본 예산 기 편 성 액 ②	실 잔 액 ①-②
합	계	1,645,991	468,731	1,177,260
	일 반 회 계	932,676	0	932,67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36,698	0	36,698
	①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70,660	108,305	△37,645
	②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12	5,135	△5,347
	③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115,680	199,553	△83,873
	④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31,366	76,321	△44,955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6,094	0	6,094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936	0	936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205,873	5,130	200,743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284	170	114
	소 방 특 별 회 계	30,776	28,024	2,752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23,134	46,093	77,041
	공 기 업 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92,022	0	92,022

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관련 검토

(1) 개 요

- 서울시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별도로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고 있음

(2)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관련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결산결과, 예산현액 9,952억 6,800만원의 10.6%, 1,060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74억 4,200만원의 6.6%, 669억 5,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14〉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공 기 업 특별회계	예 산 액	예 산 성립 증감액	예 산 현 액 (가)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주1)}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금 액 (나)	비 율 (나)/(가)
계	1,843,784	158,926	2,002,711	1,646,412	183,113	202	172,981	
수도사업	930,000	65,268	995,268	838,603	50,431	202	106,030	
공 기 업 하수도사업	913,784	93,657	1,007,442	807,809	132,682	-	66,951	

※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202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①보조금 정산잔액, ②예산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처럼 사업별 불용사유가 유형화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경우에도 사유별로 불용액이 관리되도록 개선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는 현행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제한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불용액 발생사유를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준하여 제출받은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3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액 1,060억 3,000만원중 지출잔액이 전체의 60.3%, 639억 1,800만원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은 11.7%, 123억 7,9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15〉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106,030	10,278	2,467	11,568	12,379	63,918	5,418
	(100.0)	(9.7)	(2.3)	(10.9)	(11.7)	(60.3)	(5.1)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864

억 6,400만원이며, 이 중 85.9%, 742억 7,300만원이 16개 세부사업
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16〉 사업비^{주1)} 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71,033	35,611	19,779	15,642	22.0
장기사용 배급수관 (350mm 이하) 정비	74,205	61,844	944	11,416	15.3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0,107	7,939	2,791	9,376	46.6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668	43,058	2,226	9,182	16.8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25,115	12,779	5,515	6,821	27.1
아리수 생산재료비	179,500	175,625	304	3,571	1.9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27,808	24,753	25	3,029	10.8
급수공사	29,661	26,937	0	2,723	9.1
노후 밸브 정비	28,549	25,829	0	2,720	9.5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 정비	9,235	6,262	1,111	1,860	20.1
아리수 올림터·배수지 노후 기전시설 개량	12,158	10,213	109	1,835	15.0
정수장 순환 정비	3,548	1,754	116	1,677	47.2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	14,550	7,969	5,379	1,202	8.2
소블록 배급수관망 개선	5,100	3,977	0	1,122	22.0
스마트 정수센터 구축	1,353	286	0	1,067	78.8
소블록 배수관 세척	5,814	4,789	0	1,024	17.6

※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장기사용 배급수관(350mm이하) 및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의 경우, 지출현액 1,452억 3,800만원중 67.1%, 97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전체 사업비 불용액 864억 6,400만원중 31.3% 270억 5,800만원을 불용처리된 바,

- 주요 불용사유로는 ①낙찰차액, ②예산절감, ③설계변경 등 집행잔액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나, ③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중 76.4%에 이르고 있어 외부요인보다 내부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6〉 장기사용 배급수관 및 송배수관 정비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지 현 출액	집행액	이월액	불 용 액				
				소 계	①공사, 용역 및 자재 구입 낙찰 차액	②설계 등 심사 예산 절감액	③설계 등 변경 집행 잔액	④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합 계	145,238	97,456	20,724	27,058	5,134 (19.0)	1,193 (4.4)	20,680 (76.4)	47
장기사용 배급수관	74,205	61,844	944	11,413	2,087	105	9,218	3
장기사용 송배수관	71,033	35,611	19,779	15,642	3,047	1,088	11,462 ^{주1)}	44

※ 주1) '22사업연도 사고이월액중 불용액 109억 1,700만원 포함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의 경우, 지출현액 201억 700만원중 39.4%, 79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46.6%, 93억 7,600만원이 불용된 바,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2사업연도에도 93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23사업연도에는 이월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지난 '22사업연도부터 '23사업연도에 발생한 불용은 한국도로공사 주관 선행공사 일정이 수 차례 변경됨에 따라 불용 된 것이나, 이월된 예산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행공사 등 외부요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찰과 필요시 사업예산 경정 등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17〉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계	계 획 변 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시 설 비	18,347	6,740	2,245	9,360	9,352 ^{주1)}	8

※ 주1) '22사업연도 사고이월액중 불용액 93억 2,200만원 포함

-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이 해당 회계로 재순환되는 구조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타 회계로 전입·전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어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3사업연도에 669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지출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3.0%, 489억 1,200만원으로 낙찰차액(23.2%, 155억 5,600만원)이나 다른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초 지출계획이 실제보다 과다 편성된 결과일 수 있어, 지출잔액을 원인으로 한 불용액이 감소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18〉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 계 명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정 산 잔 액	예 절 감	산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공 기 업 하수도사업 특 별 회 계	66,951	-	-	-	2,315	15,556	167
	(100.0)	-	-	-	(3.5)	(23.2)	(0.2)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95.5%, 639억 5,800만원이며 1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 또한 사업비 불용액의 64.3%, 411억 5,900만원으로 검토됨

〈표 3-119〉 사업비^{주1)}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0,408	171,443	-	18,964	9.9
중량물재생센터 운영	58,574	53,914	123	4,536	7.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2,135	26,972	1,005	4,156	12.9
환경기초시설 설치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402	824	-	2,577	75.7
중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9,431	17,008	-	2,422	12.4
탄천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714	6,053	-	1,660	21.5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14,442	11,621	1,183	1,637	11.3
난지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1,279	9,706	-	1,572	13.9
탄천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5,192	3,142	689	1,360	26.2
중량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9,445	8,188	-	1,256	13.3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3,703	9,523	3,165	1,014	7.4

※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잠실수중보 상류인 송파구, 강동구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200만원중 24.2%, 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75.7%, 25억 7,700만원을 불용한 것임

〈표 3-120〉 환경기초시설 설치(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불용현황 ('23~'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 행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사 유
①2023	3,402	824	-	2,577	자치구 매칭 지방비 과소 편성
②2022	4,282	3,400	-	882	지출잔액
③2021	5,739	3,231	1,054	2,508	강동구 공법 변경에 따른 준공일 연기로 사고이월

- 동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한 국비,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매년 자치구의 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바, '23사업연도에는 강동구, 송파구의 과소 편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의 경우, 탄천 하수처리구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일원)의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보강(9건)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7억 1,400만원중 78.5%, 6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1.5%, 16억 6,0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3-121〉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불용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 용 액		
				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중랑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19,431	17,008		2,422	1,818	603
난지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5,789	5,038		750	652	98
서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6,233	4,801	522	908	540	368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7,714	6,053		1,660	393	1,267

- 남부순환로 3154~3179 주변 원형관로 보수 사업비(9억 5,8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수보강 사업중 지출잔액 발생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은 하수관내 나무뿌리의 침입으로 이음부 단차 및 결함, 균열 등이 발견되어 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하는 사업이기에 미집행 규모가 클수록 사고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용액 발생 규모가 감소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의해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주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23회계연도 자산은 152조 5,148억 700만원, 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34조 4,256억 2,600만원임
- 2023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이고, **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982억 7,200만원 흑자임

〈표 3-122〉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3	152,514,807	18,089,181	134,425,626	37,330,106	37,231,834	98,272
2022	152,170,872	19,360,205	132,810,666	40,643,160	39,621,406	1,021,753
증감액	343,935	△1,271,024	1,614,959	△3,313,054	△2,389,572	△923,482
(증감률)	(0.2)	(△6.6)	(1.2)	(△8.1)	(△6.0)	(△90.4)

※ 작성부서가 재무제표의 총괄설명증 '재무제표 요약'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재정상태표 이하의 내용은 '원'단위로 기재하여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가.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3회계연도말 **자산**은 152조 5,148억 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말 자산(152조 1,708억 7,200만원)보다 0.2%, 3,439억 3,500만원 증가하였음
- '23회계연도의 **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부채(19조 3,602억 500만원)보다 △1조 2,710억 2,400만원(△6.6%) 감소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순자산(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조 6,149억 5,900만원(1.2%) 증가하였음

(1)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2023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자산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84조 5,188억 3,900만원(55.4%),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31조 3,943억 7,700만원(20.6%),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18조 5,661억 9,400만원(12.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인 **유동자산** 8조 846억 9,300만원(5.3%) 등의 순으로 구성됨

〈표 3-123〉 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총 계	152,514,807	100.0	152,170,872	100.0	343,935	0.2
유 동 자 산 ^{주1)}	8,084,693	5.3	10,505,676	6.9	△2,420,983	△23.0
투 자 자 산 ^{주2)}	18,566,194	12.1	18,584,906	12.2	△18,712	△0.1
일 반 유 형 자 산 ^{주3)}	8,804,694	5.9	8,975,640	5.9	△170,946	△1.9
주 민 편 의 시 설 ^{주4)}	31,394,377	20.6	29,740,759	19.6	1,653,618	5.6
사 회 기 반 시 설 ^{주5)}	84,518,839	55.4	83,277,280	54.7	1,241,558	1.5
기타비유동자산 ^{주6)}	1,146,009	0.7	1,086,608	0.7	59,400	5.5

○ **자산**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3,439억 3,500만원 증가한 바,

- 주요 증감 내용은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에서 1조 6,536억 1,800만원,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1조 2,415억 5,8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은 △2조 4,209억 8,300만원 등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직전회계연도 대비 **증감내역**을 계정별로 검토하면

- **유동자산**은 ①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 1조 5,086억 8,600만원 증가하고, ②단기대여금 2,743억 5,3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조 1,415억 7,000만원 감소하여 직전회계연도보다 △2조 4,209억 8,300만원(△23.0%) 감소된 것임

〈표 3-124〉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084,693	10,505,676	△2,420,983	△23.0
③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4,366,484	8,508,054	△4,141,570	△48.7
① 단기금융상품 ^{주1)}	1,713,621	204,935	1,508,686	736.2
미수세금 ^{주2)}	717,492	675,555	41,937	6.2
미수세외수입금 ^{주3)}	326,850	290,039	36,811	12.7
미수정부간이전수익	187,687	353,305	△165,617	△46.9
② 단기대여금 ^{주4)}	312,736	38,676	274,353	708.6
재고자산 ^{주5)}	37,829	33,780	4,048	12.0
기타유동자산	421,991	401,623	20,368	5.1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연도말 예치금 통장금액

주2)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3)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4)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대손충당금 차감)

주5)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투자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87억 1,200만원(△0.1%) 감소한 것으로 ①민간 및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융자금 등의 **장기대여금** △977억 8,3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②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주식투자 등 **장기투자증권** 758억 4,2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3-125〉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8,566,194	18,584,906	△18,712	△0.1
① 장기대여금 ^{주1)}	1,036,059	1,133,842	△97,783	△8.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6,756	△8,976	2,219	24.7
② 장기투자증권 ^{주2)}	17,518,423	17,442,580	75,842	0.4
기타투자자산	18,468	17,459	1,008	5.8

주1)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

주2) 민간이나 지방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등

- **일반유형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709억 4,600만원(△1.9%) 감소된 것으로 ①토지의 경우, 송현동 및 잠원동 부지의 상호 교환취득(△1,800억원), 분할 및 합병말소(116건, △448억원) 등으로 △1,838억 600만원이 감소하였고 ②건물의 경우, 서대문경찰서 교통센터 등 미사용 노후건물 처분(△39억원), 감가상각(△344억원) 등으로 △286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③항공기 및 선박등을 포함한 차량운반구 196억 8,000만원 등은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6〉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804,694	8,975,640	△170,946	△1.9
① 토	지	7,357,856	7,541,662	△183,806	△2.4
입	목	3,011	3,011	-	-
② 건	물 ^{주1)}	911,709	940,377	△28,668	△3.0
구	축 물 ^{주1)}	14,537	18,084	△3,547	△19.6
기	계 장 치 ^{주1)}	4,737	5,429	△691	△12.7
③ 차 량 운 반 구 ^{주1)}		106,609	86,929	19,680	22.6
집	기 비 품 ^{주1)}	229,401	216,771	12,630	5.8
임	차 개 량 자 산 ^{주1)}	298	625	△326	△52.2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76,531	162,748	13,782	8.5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주민편의시설**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6,536억 1,800만원(5.6%) 증가된 바, ①공원의 경우, 용산가족공원 등 공원토지 취득(230건, 7,961억원), 도시개발 관련 토지 기부채납(26건, 1,564억원) 등 7,812억 900만원 증가하였고, ②기타주민편의시설의 경우, 상계 6구역 등 주택사업부지 취득(1,731억원), 응암1구역 등 임대주택매입(3,312억원) 등 2,82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③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은 △158억 1,100만원 감소 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7〉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1,394,377	29,740,759	1,653,618	5.6
도	서 관 ^{주1)}	98,610	84,621	13,989	16.5
주	차 장 ^{주1)}	1,511,033	1,492,859	18,173	1.2
주 차 장	사 용 수 익 권	△330	-	△330	△100.0
① 공	원 ^{주1)}	12,039,121	11,257,911	781,209	6.9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주1)}	445,179	422,932	22,246	5.3
동 물	원 ^{주1)}	2	9	△7	△77.8
수 목 원 및 휴 양 림	^{주1)}	355,415	353,963	1,452	0.4
문 화 및 관 광 시 설	^{주1)}	4,147,850	3,919,891	227,959	5.8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27,576	△31,098	3,522	11.3
③ 체	육 시 설 ^{주1)}	1,884,291	1,895,283	△10,992	△0.6
사 회 복 지 시 설	^{주1)}	1,382,654	1,312,180	70,474	5.4
③ 의	료 시 설 ^{주1)}	667,945	672,764	△4,819	△0.7
교 육 시 설	^{주1)}	1,005,341	891,344	113,996	12.8
② 기 타 주 민 편 의 시 설	^{주1)}	5,936,084	5,653,182	282,902	5.0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948,753	1,783,813	164,940	9.2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사회기반시설**은 직전회계연도보다 1조 2,415억 5,800만원(1.5%) 증가한 바, ①도로의 경우, 동남권유통단지 사회기반시설 등 기부채납(116건, 7,681억원), 서초대로 등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취득(1,793억원) 등 8,923억 5,900만원 증가하고, ②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의 경우, 건설중인 자산(도로 2,837억원, 도시철도 3,977억원, 하천부속시설 921억원 등) 2,603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③도시철도사용수익권 858억 7,500만원, 도로사용수익권 840억 3,800만원 등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8〉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4,518,839	83,277,280	1,241,558	1.5
① 도로	62,558,399	61,666,039	892,359	1.4
③ 도로 사용 수익 권	△1,819,117	△1,903,156	84,038	4.4
도 시 철 도	5,407,425	5,423,391	△ 15,965	△0.3
③ 도시철도 사용 수익 권	△1,076,311	△1,162,187	85,875	7.4
상 수 도 시 설 주1)	4,907,412	4,917,849	△ 10,436	△0.2
③ 수 질 정 화 시 설 주1)	6,543,400	6,637,176	△ 93,776	△1.4
하 천 부 속 시 설	3,627,414	3,573,177	54,236	1.5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1)	101,567	107,313	△5,745	△5.4
재 활 용 시 설 주1)	140,004	145,223	△5,219	△3.6
농 수 산 기 반 시 설 주1)	301,129	301,594	△454	△0.2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주1)	25,508	26,914	△1,405	△5.2
②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804,246	3,543,944	260,302	7.3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 **기타비유동자산**은 직전회계연도보다 594억원 증가된 바, ①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회전기금 지원액 696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②전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68억 1,400만원이 증가하고, ③역세권청년주택(장기안심보증금)(23건, 74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장기안심주택보증금 만기도래액(67건, 643억원)이 감소함에 따라 기타보증금은 196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29〉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146,009	1,086,608	59,400	5.5
보	증 금	353,364	333,783	19,581	5.9
	임 차 보 증 금	53,126	53,149	△22	0
	전 신 전 화 가 입 권	8	9	△1	△11.1
	③ 기 타 보 증 금	300,229	280,624	19,605	7.0
무	형 자 산	172,043	157,066	14,976	9.5
	지 적 재 산 권	4,761	72	4,688	6,512.5
	② 전 산 소 프 트 웨 어	55,592	48,777	6,814	14.0
	용 익 물 권	105,274	103,702	1,571	1.5
	건 설 중 인 무 형 자 산	6,415	4,513	1,901	42.1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20,601	595,758	24,842	4.2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40,099	69,109	△29,010	△42.0
	유 산 자 산	62,136	58,612	3,524	6.0
	생 물 자 산	942	900	41	4.6
	장 기 일 반 미 수 금 ^{주 1)}	447,622	466,995	△19,373	△4.1
	① 기 타 비 유 동 자 산	69,801	140	69,661	49,757.9

※ 주1) 대손충당금 차감

(2)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됨

○ 2023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총부채**는 18조 891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9조 3,602억 500만원)보다 $\Delta 6.6\%$, $\Delta 1$ 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음

- 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 지방채증권 등의 **유동부채**(18.9%, 3조 4,239억 2,600만원)와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의 **장기차입부채**(53.7%, 9조 7,217억 200만원) 그리고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시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27.3%, 4조 9,435억 5,2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Delta 1$ 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한 바, ①유동부채가 $\Delta 1$ 조 4,556억 100만원 감소하고, ②장기차입부채도 $\Delta 392$ 억 400만원 감소하였으나, ③기타비유동부채는 2,237억 8,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다만,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23년 4월23일, 서울시교육청에게 '23회계연도 법정전출금(지방세 전출) 정산액을 당초 536억 2,500만원에서 297억 8,400만원 증가한 834억 1,000만원으로 변경통지한 바,

- 출납사무가 완결된 이후 지방세 전출분중 지방소비세 관련 산정오류를 뒤늦게 인지하고 조치한 것이나, 이미 결산검사('23. 4.15~5.19)가 진행 중인 시점에 오류를 인지함으로써 재무회계결산중 부채(일반미지급금, 정부간이전비용)가 297억 8,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재무회계결산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따라 지난 5월27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첨부서류중 재무제표는 ①총괄(요약), ②재무제표중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주석17), ③필수보충정보중 성질별 재정운영표(정부간 이전비용)과 ④필수보충정보중 기능별 재정운영표(일반회계) 등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임

〈표 3-130〉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부 채 총 계		18,089,181	19,360,205	△1,271,024	△6.6
①	유 동 부 채 ^{주1)}	3,423,926	4,879,527	△1,455,601	△29.8
②	장 기 차 입 부 채 ^{주2)}	9,721,702	9,760,906	△39,204	△0.4
③	기 타 비 유 동 부 채 ^{주3)}	4,943,552	4,719,771	223,781	4.7

○ 직전회계연도 대비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1조 4,556억 100만원(△29.8%) 감소 된 바, ①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유동성지방채증권의 모집공채 감소 등으로 △4,163억원 감소하고, ②기타유동부채의 경우, 일반미지급금(자치구조정 교부금 △6,105억원, 교육청전출금 △3,540억원) 등 △1조 393억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1〉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3,423,926	4,879,527	△1,455,601	△29.8
	단 기 차 입 금	-	-	-	-
①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1,720,794	2,137,095	△416,300	△19.5
	유 동 성 장 기 차 입 금	-	-	-	-
	유 동 성 지 방 채 증 권	1,660,314	2,080,753	△420,439	△20.2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60,480	56,341	4,138	7.3
②	기 타 유 동 부 채	1,703,131	2,742,432	△1,039,300	△37.9
	일 반 미 지 급 금	1,052,983	2,234,941	△1,181,958	△52.9
	선 수 금	154,445	25,161	129,284	513.8
	선 수 수 익	34,964	35,058	△93	△0.3
	단 기 예 수 보 관 금	282,853	332,915	△50,062	△15.0
	일 반 미 지 급 비 용	113,691	112,354	1,337	1.2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000	2,000	-	-
	기 타 유 동 부 채	62,192	-	62,192	100.0

- **장기차입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0.4%, △392억 400만원 감소된 바,
 ①일반공모채의 경우, 도시철도 확충 만기 등으로 △3,214억원 감소하고,
 ②도시철도공채는 신규보다 만기도래 상환이 증가하여 △777억 6,200만원 감소하고, ③공공임대 주택매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481억 6,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2〉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A=B+E)		9,721,702	9,760,906	△39,204	△0.4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B=C-D)	773,046	833,526	△60,480	△7.3
	계 (C)	833,526	889,868	△56,341	△6.3
	금 융 기 관 차 입 금	0	0	0	0
	③ 주 택 도 시 기 금 ^{주 1)}	667,858	716,024	△48,166	△6.7
	공 공 자 금 관 리 기 금	114,800	114,800	0	0
	지 역 상 생 발 전 기 금	50,868	59,043	△8,175	△13.8
	차감(유동성대체액) (D)	60,480	56,341	4,138	7.3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E=F-G)	8,948,656	8,927,380	21,276	0.2
	계 (F)	10,608,970	11,008,133	△399,162	△3.7
	② 도 시 철 도 공 채	5,467,670	5,545,433	△77,762	△1.4
	① 일 반 공 모 채	5,141,300	5,462,700	△321,400	△5.9
	차감(유동성대체액) (G)	1,660,314	2,080,753	△420,439	△20.2

※ 주1) 국토부 공공임대주택매입 사업 관련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보다 2,237억 8,100만원(4.7%) 증가된 바, ①임대보증금 수납액 증가에 따라 2,359억 3,300만원 증가하고, ②진행 중인 소송사건 관련 우발부채 152억 6,3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③장기예수보증금 △290억 100만원, ④재개발임대주택 매입관련 장기미지급금 △20억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3〉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4,943,552	4,719,771	223,781	4.7
퇴 직 급 여 총 당 부 채	76,425	70,115	6,309	9.0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867,127	4,649,655	217,471	4.7
③ 장 기 예 수 보 증 금	40,099	69,109	△29,010	△42.0
④ 장 기 미 지 급 금	5,830	7,830	△2,000	△25.5
① 임 대 보 증 금	4,430,404	4,194,470	235,933	5.6
장 기 미 지 급 이 자	165,493	168,208	△2,715	△1.6
② 우 발 부 채	225,299	210,036	15,263	7.3

-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부채가 △6.6%, 1조 2,710억 2,400만원 감소되어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제출함

〈표 3-134〉 총자산 대비 총부채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자 산 (a)	152,514,807	152,170,872	149,366,845
부 채 (b)	18,089,181	19,360,205	18,793,544
비 율 (b/a)	11.8	12.7	12.6

- 아울러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감소된 바, 지표상으로는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동원력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여전히 커 유동비율의 증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3-135〉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유 동 자 산 (a)	8,084,693	10,505,677	11,085,140
유 동 부 채 (b)	3,423,926	4,879,528	5,018,086
유 동 비 율 (b/a)	42.3	46.4	45.3

(3)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2%, 1조 6,149억 5,900만원 증가한 134조 4,256억 2,600만원임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는 바,
 -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4.4%, 113조 4,396억 2,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10조 3,638억 8,300만원)보다 2.8%, 3조 757억 4,200만원 증가하였고,
 -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4.8%, 6조 4,464억 7,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8조 5,761억 2,700만원)보다 △24.8%, △2조 1,296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0.8%, 14조 5,395억 2,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조 8,706억 5,500만원)보다 4.8%, 6,688억 7,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6〉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 자 산 총 계	134,425,626	100.0	132,810,666	100.0	1,614,959	1.2
고정순자산	113,439,626	84.4	110,363,883	83.1	3,075,742	2.8
특정순자산	6,446,473	4.8	8,576,127	6.5	△2,129,654	△24.8
일반순자산	14,539,527	10.8	13,870,655	10.4	668,870	4.8

나.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항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로 작성됨
-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이고, **총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82억 7,200만원 흑자로 검토됨

〈표 3-137〉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륜
재 정 운 영 결 과 (A - B)		(98,272)	(1,021,753)	△923,481	△90.4
비 용	(A)	37,231,834	39,621,406	△2,389,572	△6.0
수 익	(B)	37,330,106	40,643,160	△3,313,054	△8.2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1) 성질별 재정운영표

-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른 2023회계연도 **총비용**은 37조 2,318억 3,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9조 6,214억 600만원)대비 △6.0%, △2조 3,895억 7,200만원 감소하였고, **총수익**은 37조 3,301억 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40조 6,431억 6,000만원) 대비 △8.2%, △3조 3,130억 5,400만원 감소하였음

〈표 3-138〉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률
			금 액	구 성 비		
재정운영결과(A-B)	(98,272)		(1,021,753)		△923,481	△90.4
비 용 (A)	37,231,834	100.0	39,621,406	100.0	△2,389,572	△6.0
인건비 ^{주1)}	2,204,969	5.9	2,153,165	5.4	51,804	2.4
운영비 ^{주2)}	7,921,455	21.3	7,661,588	19.2	259,866	3.4
정부간이전비용 ^{주3)}	20,266,324	54.4	22,270,149	58.9	△2,003,824	△9.0
민간등이전비용 ^{주4)}	4,649,803	12.5	5,370,114	13.5	△720,311	△13.4
기타비용 ^{주5)}	2,189,281	5.9	2,166,388	3.1	22,893	1.1
수 익 (B)	37,330,106	100.0	40,643,160	100.0	△3,313,054	△8.2
자체조달수익 ^{주6)}	28,024,666	75.1	30,270,397	72.7	△2,245,730	△7.4
정부간이전수익 ^{주7)}	8,746,024	23.4	9,986,029	25.8	△1,240,005	△12.4
기타수익 ^{주8)}	559,415	1.5	386,733	1.5	172,682	44.7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주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주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주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주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주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주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대세외수익 등

주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주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54.4%(20조 2,663억 2,4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21.3%(7조 9,214억 5,5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이 12.5%(4조 6,498억 300만원), **인건비**가 5.9%(2조 2,049억 6,900만원), **기타비용**이 전체의 5.9%(2조 1,892억 8,100만원)으로 확인됨

- 비용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급여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440억원), 기간제근로자 등 기타인건비(79억원) 등의 증가로 518억 400만원 증가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위탁대행사업비, 연료비 등이 증가하여 2,598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부이전비용**의 경우, 재정규모 감소 및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자치구조정교부금이 감소하여 △2조 38억 2,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민간 등 이전비용**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매입 전출금비용(△4,293억원), 민간복지시설 등의 민간보조금(△3,016억원) 등이 감소하여 △7,203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비용**의 경우,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1,577억원)는 감소하였으나, 대손상각비(1,967억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451억원) 등의 증가로 228억 9,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39A〉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비용총계	37,231,834	39,621,406	△ 2,419,354
인건비	2,204,969	2,153,165	51,804
1. 급여	1,484,322	1,483,320	1,002
2. 복리후생비	450,447	406,435	44,012
3. 기타인건비	251,648	243,737	7,910
4. 퇴직급여	18,550	19,672	△ 1,121
운영비	7,921,455	7,661,588	259,866
1. 도서구입 및 인쇄비	14,456	14,948	△ 492
2. 소모품비	122,076	107,622	14,453
3. 홍보 및 광고비	45,549	40,507	5,041
4. 지급수수료	383,896	311,749	72,146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53,827	46,189	7,638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65,652	314,193	51,459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482,348	1,457,711	24,636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93,750	83,517	10,233
9. 교육훈련비	28,115	18,598	9,517
10. 제세공과금	76,804	160,344	△ 83,539
11. 보험료및공제료	17,591	17,750	△ 159
12. 임차료	74,693	81,791	△ 7,098
13. 출장비	12,245	9,678	2,566
14. 연구개발비	23,276	18,893	4,383
15. 이자비용	186,094	273,332	△ 87,238
16. 업무추진비	11,368	10,929	439
17. 행사비	85,122	49,830	35,292
18. 의회비	10,564	9,826	738
19. 위탁대행사업비	3,906,100	3,711,511	194,589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882	2,776	105
21. 징수교부금	594,922	648,710	△ 53,788
22. 연료비	139,471	15,469	124,002
23. 원·정수구입비	54,146	53,835	311
24. 공립대학운영비	63,982	87,533	△ 23,750
25. 기타운영비	72,713	114,335	△ 41,622

〈표 3-139B〉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정부간이전비용	20,266,324	22,270,149	△2,003,824
1. 시도비보조금	10,350,010	11,318,427	△ 968,417
2. 자치구조정교부금	5,853,842	6,476,386	△ 622,543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39,282	4,850	34,432
4. 국가에대한부담금	97	38,873	△38,776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756,030	4,141,904	△385,874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67,060	289,706	△22,645
민간 등 이전비용	4,649,803	5,370,114	△720,311
1. 민간보조금	2,904,074	3,205,750	△ 301,675
2. 민간장학금	235	247	△11
3. 이차보전금	198,402	216,260	△17,857
4. 출연금	878,498	771,307	107,191
5. 전출금비용	519,995	949,376	△ 429,380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28,526	37,627	△9,100
7 기타이전비용	120,068	189,545	△69,476
기타비용	2,189,281	2,166,388	22,893
1. 자산처분손실	3,416	8,363	△4,946
2. 자산손상차손	704,023	793,653	△89,630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96,366	151,204	45,162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319,199	476,952	△ 157,753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39,854	613,635	26,219
6. 무형자산상각비	24,266	24,466	△200
7. 대손상각비	292,749	96,026	196,723
8. 기타비용	9,405	2,086	7,319

○ 수익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수익총계의 75.0%, 28조 246억 6,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23.4%, 8조 7,460억 2,400만원, 교육청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이 1.5%, 5,594억 1,500만원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수익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소득세(△8,099억원), 취득세(△7,020억원) 감소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2조 2,457억 3,000만원 감소하였고, 국고 매청사업 감소로 국고보조금수입(△6,144억원) 감소에 따른 자치구 교부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정부간이전수익**도 △1조 2,400억 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0〉 재정운영표(성질별) 수익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수익총계	37,330,106	40,643,160	△ 3,313,054
자체조달수익	28,024,666	30,270,397	△ 2,245,730
1. 지방세수익	24,186,209	26,387,286	△ 2,201,077
2. 경상세외수익	2,740,294	2,531,899	208,394
3. 임시세외수익	1,098,163	1,351,211	△ 253,047
정부간이전수익	8,746,024	9,986,029	△ 1,240,005
1. 지방교부세수익	202,010	269,223	△ 67,212
2. 국고보조금수익	8,248,149	8,862,581	△ 614,432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227,859	405,235	△ 177,376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68,004	448,989	△ 380,984
기타수익	559,415	386,733	172,682
1. 전입금수익	462,502	343,477	119,025
2. 기부금수익	5,746	10,597	△ 4,851
3. 대손충당금환입	3,131	373	2,757
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0	0	0
5. 기타수익	88,035	32,285	55,750

(2) 기능별 재정운영표

-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는 바,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에는 1조 217억 5,300만원 흑자였고, 20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982억 7,200만원 흑자로 제출됨

〈표 3-141〉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 감 액
재 정 운 영 결 과	(A-B)	(98,272)	(1,021,753)	923,481
재 정 운 영 순 원 가 (① + ② + ③ - ④)	(A)	25,105,156	27,110,377	△ 2,005,221
사 업 순 원 가	①	22,635,776	24,729,809	△ 2,094,033
관 리 운 영 비	②	2,202,987	2,234,373	△ 31,386
비 배 분 비 용	③	1,521,926	1,680,818	△ 158,891
비 배 분 수 익	④	1,255,533	1,534,623	△ 279,089
일 반 수 익	(B)	25,203,428	28,132,131	△ 2,928,703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재정운영순원가**는 직전회계연도(27조 1,103억 7,700만원)보다 △2조 52억 2,100만원 감소한 25조 1,051억 5,600만원으로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4조 7,298억 900만원)보다 △2조 940억 3,300만원 감소한 22조 6,357억원 7,600만원이며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을 합산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343억 7,300만원)보다 △313억 8,600만원 감소한 2조 2,029억 8,700만원이고,
 - **비배분비용**은 직전회계연도(1조 6,808억 1,800만원)보다 △1,588억 9,100만원 감소한 1조 5,219억 2,600만원이고
 - **비배분수익**은 1조 2,555억 3,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5,346억 2,300만원)보다 △2,790억 8,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수익**은 직전회계연도(28조 1,321억 3,100만원)보다 2조9,287억 300만원 감소한 25조 2,034억 2,800만원으로 제출됨

다.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2023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는 1조 8,084억 7,500만원이고, 순자산의 감소는 2,917억 8,700만원으로 순증액은 1조 5,166억 8,700만원으로 검토됨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조직개편 및 부서이관 등 자산이동에 따른 증가액 117억 700만원, ②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증가액 등 1조 3,396억 6,000만원, ③기타 순자산의 증가액 4,571억 7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재산이관·관리전환에 따른 자산 감소액 △117억 700만원, ⑤주택재개발 등의 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감소액 △32억 7,300만원, ⑥토지분할 감소 및 합병말소등의 기타 순자산의 감소액 △2,768억 6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32조 8,106억 6,600만원에서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982억 7,200만원과 순자산의 순증액 1조 5,166억 8,700만원을 더한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 지난 '22회계연도(132조 8,106억 6,600만원)보다 1.2%, 1조 6,149억 5,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42〉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회계연도		순자산 변동 사유
		금 액	구성비	
기 초 순 자 산 (A)		132,810,666		
재 정 운 영 결 과 (B)		(98,272)		
순 자 산 의 증 가 (C)		1,808,475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회 계 기 준 변 경 으 로 생 긴 누 적 이 익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①	11,707	0.6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증 가 ②	1,339,660	74.1	·도시개발 관련 및 민간투자시설 귀속분 증가
	기타 순자산의 증가 ③	457,107	25.3	·토지 분할증가 및 합병증가 등
순 자 산 의 감 소 (D)		△291,787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회 계 기 준 변 경 으 로 생 긴 누 적 손 실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④	△11,707	4.0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 긴 자 산 감 소 ⑤	△3,273	1.1	·주택재개발 사업 등 시유재산 무상양여 감소
	기타 순자산의 감소 ⑥	△276,806	94.9	·토지 분할감소 및 합병말소 등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34,425,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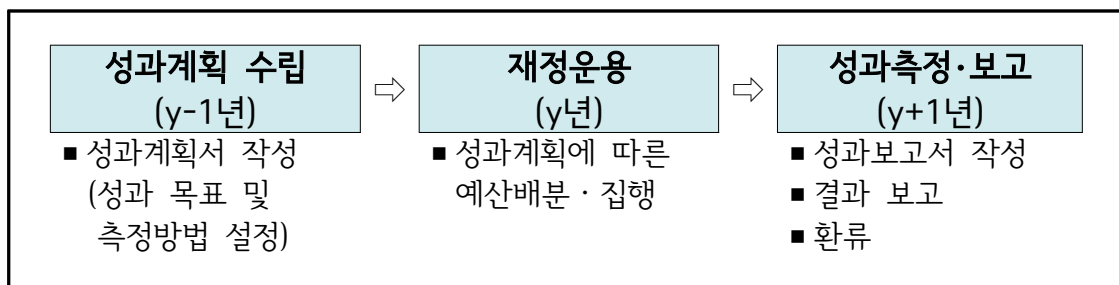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6.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가. 성과보고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규칙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43〉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서울시는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39개 실·본부·국에 대해 39개 전략목표수, 225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0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 '23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9개 실·본부·국에 대한 39개 전략목표수와 227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3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함

〈표 3-144〉 회계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성 과 계 획 서			성 과 보 고 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전 략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정 책 사 업 목 표 지 표
2023	39	225	430	39	227	433
2022	41	222	420	38	248	439
2021	42	215	412	41	225	426

○ 서울시는 '23년 도중, 관련 법령을 수 회 개정하여 기존(6실 4본부 11국 15관·단 3합의제)의 조직에서 6실 5본부 10국 15관·단 3합의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이체가 총 191건, 4,429억 9,100만원 발생한 바,

- '24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변경된 조직 및 '2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도록 개선 요구한 사례가 있음

- '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23년도에는 명시적으로 4회의 조직개편을 하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성과계획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는 통일된 지침없이 '23회계연도가 종료된 '24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이 되어서야 성과 지표, 목표치 등을 부서의 판단하에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관련 법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타 관련 법령에도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 관련 법령도 「국가재정법」과 동일하게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재차 개선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33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74개 지표(17.1%)는 **초과달성**, ②262개 지표(60.5%)는 **달성**, ③97개 지표(22.4%)는 **미달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3-145〉 '23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

실·본부·국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9	227	433 (100.0)	74 (17.1)	262 (60.5)	97 (22.4)
대 변 인	1	1	2	0	2	0
홍 보 기 획 관	1	6	13	2	10	1
약자와의동행추진단	1	2	3	1	2	0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	7	13	2	9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9	12	1	9	2
비 상 기 획 관	1	1	2	0	1	1
디 지 털 정 책 관	1	8	15	6	9	0
민 생 사 법 경 찰 단	1	1	3	0	3	0
미 래 청 년 기 획 단	1	1	2	0	2	0
기 획 조 정 실	1	10	18	2	14	2
소 방 재 난 본 부	1	9	23	2	13	8
경 제 정 책 실	1	11	22	4	16	2
복 지 정 책 실	1	7	13	1	8	4
도 시 교 통 실	1	10	19	2	13	4
기 후 환 경 본 부	1	9	14	0	10	4
문 화 본 부	1	10	13	1	7	5
관 광 체 육 국	1	5	9	2	3	4
평 생 교 육 국	1	6	9	4	4	1
시 민 건 강 국	1	13	31	3	16	12
행 정 국	1	9	14	3	9	2
재 무 국	1	6	12	3	6	3
미 래 공 간 기 획 관	1	3	6	1	3	2
디 자 인 정 책 관	1	3	5	3	2	0
기 술 심 사 담 당 관	1	2	4	0	3	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1	11	15	4	10	1
주 택 정 책 실	1	12	24	5	11	8
도 시 계 획 국	1	6	6	2	3	1
균 형 발 전 본 부	1	10	17	0	13	4
푸 른 도 시 여 가 국	1	13	18	2	14	2
물 순 환 안 전 국	1	3	5	0	4	1
인 재 개 발 원	1	1	3	0	1	2
도 시기반시설본부	1	5	10	0	3	7
미 래 한 강 본 부	1	2	6	0	4	2
서 울 역 사 박 물 관	1	1	3	1	2	0
시 립 미 술 관	1	1	6	2	2	2
의 회 사 무 처	1	3	24	7	12	5
감 사 위 원 회	1	6	11	3	7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2	0	0
자 치 경 찰 위 원 회	1	3	6	3	2	1

- 성과지표별로 검토하면, 시민건강국의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은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안정성 검사 및 DNA 검사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로 '23회계연도에 39,098건을 목표로 하여 112.6%, 44,006건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46〉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건,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건)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	39,098	39,788
		실적	44,006	40,044
		달성률	112.6	100.6

- 그러나 동 성과지표는 직전회계연도에 이미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 40,044건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23회계연도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푸른도시여가국의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는 녹색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23회계연도에 520만명을 목표로 하여 107.5%, 약 559만 2,000명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되나,

- 동 성과지표는 직전회계연도에 달성한 성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23년도 5월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발표에 따라 외부활동 활성화가 예상됨에도 '23회계연도 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표 3-147〉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 성과지표 관련

(단위 : 천명,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천명)	공원 녹색여가 프로그램 참여인원	목표	5,200	5,200
		실적	5,592	5,272
		달성률	107.5	101.4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설정이 부적정한 사유로 특별한 사유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추세치와의 비교를 통해 자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재난안전관리실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관련 법령 안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횟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23회계연도에 36회를 목표로 하여 100% 달성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48〉 산업안전보건 교육 성과지표 관련

(단위 : 회,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산업안전보건 교육(회)	교육 횟수	목표	36	36
		실적	36	30
		달성률	100	83.3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목표는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관리 및 수준향상'으로 '교육 횟수'라는 **성과지표**는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사업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로 사료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본부의 **친환경차 보급실적**은 친환경차량 보급대수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3회계연도 성과 달성률이 42.6%인 것으로 확인됨

〈표 3-149〉 친환경차 보급 실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대,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친환경차 보급 실적(대)	전기차, 수소차 보급대수	목표	35,000	27,000
		실적	14,924	23,821
		달성률	42.6	88.2

- 해당 지표는 '22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 후 계산하여 달성률을 88.2%로 제출한 사례로 시정 권고된 바 있음에도 '23회계연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합산한 수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측정하는 산식을 정할 때 단순합산하여 결과치를 계산하는 측정방식은 지양하고, 중요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시민건강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23회계연도에 흡연율 27.3%를 목표로 하였으나 성과 달성률이 0%인 것으로 확인됨

〈표 3-150〉 성인 남성 흡연율 성과지표 관련

(단위 :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성인 남성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 흡연자의 수 /조사대상 응답자수 ×100	목표	27.3	27.6
		실적	0	28.1
		달성률	0	101.8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하도록 한 바, 성과 미달성 사유로 지역사회 건강조사(질병관리청) 당해연도 실적 미발표로 인한 실적 산출 불가로 기재('24년 4월 발표 예정)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에는 성과보고서 작성일정상 작성 및 제출기한을 2월말로 정하고 있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평가결과가 3~4월에 공개되면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성과지표 실적치로 활용하는 것은 성과를 계획·평가하여 재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성인 남성 흡연율 측정을 위한 방법과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관광체육국의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등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3회계연도의 경우, 만족도 90점을 목표로 하여 실제 80.3점이 되어 달성률은 89.2%인 것으로 확인됨

〈표 3-151〉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 성과지표 관련

(단위 : 점,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시립 복합체육문화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5개 차원, 차원별 2~5개 설문 실시로 종합만족도 측정	목표	90	89.7
		실적	80.3	83.8
		달성률	89.2	93.4

-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스포츠 행사 확대 등으로 편의시설 증설 및 개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편의시설 미확충 등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사항은 일절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실의 **회의 운영 횟수**는 부서간 협업·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주요회의 운영 횟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23년도에는 회의 운영 횟수 170회를 목표로 하여 170회, 달성률 100%로 제출됨

〈표 3-152〉 시정 주요회의 운영 성과지표 관련

(단위 : 회, %)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시정 주요회의 운영(회)	회의 운영 횟수	목표	170	170
		실적	170	186
		달성률	100	109.4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며 지표개발 용이성만을 고려하여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 목표는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로 '회의 운영 횟수'라는 성과지표는 '회의 빈도' 등과 같은 지엽적 지표로 사료되어 정책사업목표를 통합적 시각에서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성인지결산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인지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한 '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293개로, 23년도 예산안 제출 시(294개)에 비해 △1개 감소하였으며 성인지 대상 사업 예산현액 4조 549억 2,100만원 중 96.6%, 3조 9,190억 6,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3-153〉 2023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93	4,054,921	3,919,068	96.6
일 반 회 계	일 반 회 계	285	3,700,492	3,584,249	96.8
	기타특별회계	266	353,202	333,704	94.4
	기 금	22	1,227	1,114	90.8

- '23회계연도는 총 388개의 성과목표 중 240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61.9%로 확인되며 이는 지난 '22회계연도(62.4%) '21회계연도(65.2%)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154〉 연도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 추이('23~'21)

(단위 : 개, %)

구분	2023	2022	2021
성과목표수	388	431	431
달성 수	240	269	281
달성률	61.9	62.4	65.2

- '23회계연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23년도에는 명시적으로 4회의 조직개편을 하여 성인지 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법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는 지난 '21년도에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성인지결산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필요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7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 의회의 심의를 거쳐 '23년도 예산이 수정의결되었고, '23년 6월,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도 수정의결된 바 있어 「2023~2027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예산의 수정내역과 연동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55〉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23년도 예산안) (A)	' 2 3 년 도 본 예 산 (의 회 의 결)	' 2 3 년 도 제 1 회 추 경 (의 회 의 결) (B)	증 감 (B - A)
총 계		47,205,227	47,190,512	50,279,162	3,073,935
	일 반 회 계	33,524,517	33,466,084	36,169,531	2,645,014
	특 별 회 계	13,680,710	13,724,427	14,109,631	428,921

- '23년도의 경우, 본예산(47조 1,905억 1,200만원)과 최종예산(50조 3,759억 8,200만원)이 6.8%, 3조 1,854억 7,000만원 차이가 있고, 지난해 7월 의결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50조 2,791억 6,200만원)의 경우에도 기정예산 대비 6.5%, 3조 886억 5,000만원 증액된 바,
- 추경예산의 경우, 당초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전망 중 2024년도에 목표한 재정규모(48조 4,476억원)를 초과한 금액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표 3-156〉 '23~27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2 (최종)	계획기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
총 계	522,233	472,052	484,476	504,386	521,403	541,190	2,523,507
일반 회 계	379,879	335,245	342,722	358,800	373,407	389,113	1,799,287
특별 회 계	142,354	136,807	141,754	145,586	147,997	152,077	724,221

- 다만, 현재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의 관련 기준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서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나,
-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가 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동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 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을 재차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승인 (2024. 6.24)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1897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일반회계

- | | |
|----------|--------------------|
| - 세입 결산액 | 36조 2,152억 6,900만원 |
| - 세출 결산액 | 34조 9,284억 7,300만원 |
| - 잉여금 | 1조 2,867억 9,600만이며 |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23억 4,600만원 및 사고이월액 2,138억 5,9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979억 1,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26억 7,700만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2조 448억 8,600만원
- 세출 결산액 1조 6,464억 1,300만원
- 잉여금 3,984억 7,3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건설개량이월액) 329억 200만원 및 사고이월액 1,502억 1,2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억 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51억 5,600만원임.

(3) 기타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10개 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12조 4,984억원
- 세출 결산액 10조 8,855억 7,000만원
- 잉여금 1조 6,128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5,988억 5,300만원(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558억 7,500만원은 제외) 및 사고이월액 4,965억 1,0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93억 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81억 5,800만원임.

나. 기금결산

2023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조 6,622억 8,0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7조 2,080억 8,100만원에 비하여 4,54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17개 기금의 종류 및 연도말 조성액 내역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조 9,389억 1,800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2,661억 7,200만원

- 식품진흥기금	510억 7,200만원
- 기후대응기금	791억 1,600만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327억 5,400만원
- 성평등기금	240억 9,400만원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05억 9,400만원
- 사회복지기금	692억 100만원
- 체육진흥기금	584억 2,400만원
- 재난관리기금	9,298억 900만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329억 9,500만원
- 대외협력기금	50억 4,500만원
- 도시재생기금	796억 8,700만원
- 관광진흥기금	66억 9,700만원
-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1억 7,200만원
- 하수도사업회전기금	732억 3,100만원
- 고향사랑기금	2억 9,800만원임.

다. 재무제표

(1) 2023회계연도 말 재무제표상 총자산은 152조 5,148억 8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152조 1,708억 7,300만원에 비하여 3,439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유 동 자 산	8조 846억 9,300만원
- 투 자 자 산	18조 5,661억 9,400만원
- 유 형 자 산	124조 7,179억 1,100만원
- 기타비유동자산	1조 1,460억 1,000만원임.

(2) 2023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18조 891억 8,2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19조 3,602억 600만원에 비하여 1조 2,710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 | |
|-----------|----------------------|
| - 유동부채 | 3조 4,239억 2,600만원 |
| - 장기차입부채 | 9조 7,217억 300만원 |
| - 기타비유동부채 | 4조 9,435억 5,200만원 임. |

(3) 20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34조 4,256억 2,600만원으로 2022회계연도 말 132조 8,106억 6,700만원에 비하여 1조 6,14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고정순자산 113조 4,396억 2,600만 원
- 특정순자산 6조 4,464억 7,400만 원
- 일반순자산 14조 5,395억 2,600만 원임.

(4)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982억 7,200만원 흑자로 2022회계연도 1조 217억 5,400만원(흑자)에 비하여 9,234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결산내용은

- | | | |
|----------|---|--------------------|
| - 수 | 익 | 37조 3,301억 600만원 |
| - 비 | 용 | 37조 2,318억 3,400만원 |
| - 재정운영결과 | | 982억 7,200만원 흑자임. |

라. 성과보고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227개 정책사업목표의 433개 지표에 대하여 초과달성은 74건, 달성은 262건, 미달성은 97건임.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의원
 -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은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